

2017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2017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는 「치매관리법」에 의거 광역치매센터 및 각 지역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과, 서울특별시 사업운영 방향에 맞춰 각 부문별 관련 법령을 발췌한 것임

의료비 지원(치매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비)의 주요 지급 기준 및 근거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의 세부 규정을 따름 (단, 2017년 지침시달 전까지는 최근연도의 지급기준을 따름)

목 차

■ 2017년도 주요 변경 사항	6
-------------------	---

I. 치매관리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14
2. 단계(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16
3. 추진 체계	16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7
5.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협의체)	23

II. 치매관리사업 업무 안내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28
2. 치매 조기검진 사업	35
3. 치매 예방등록관리 사업	41
4.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57
5.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66
6. 치매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69
7.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72

III. 치매관리사업 인사·복무와 예산·회계 지침

1. 인사·복무 지침	82
2. 예산·회계 지침	86
3. 행정 서식	103

IV. 부 록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현황	136
2.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현황	160

V.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업무 관련 자료	176
2. 기타 관련 자료	252

2017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2017년도 주요 변경사항



2017년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 고
치매관리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평균 월평균 소득 100%이하 (2015년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평균 중위소득 120%이하 	15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98호, 2015.5.14. 개정) - 2016년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95호, 2016.7.14. 개정)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광역치매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17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 운영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 총 9~10명 - 센터장 자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센터장 자격기준 - 사무국장 자격 : 간호사 - 팀장 자격 : 간호사 - 직원 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 운영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 총 8~9명 - 센터장 자격 추가 :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사무국장 자격 : 법 제16조의 2의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관련 보건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팀장 자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팀원 자격 : 팀원 1급은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팀원 2급은 팀원 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자 	18~19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운영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격 : 간호사 - 직원 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행정요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운영 기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팀원 자격 : 팀원 1급은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팀원 2급은 팀원 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자 - 역 할 : 치매관리사업 실무담당,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련 전문자격 소유자나 교육 과정 이수자, 치매나 노인조호 유경험자 우선 선발) 	22~23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횟수 : 연 5회 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2회 가능) ◆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자문위원회 	23	수정

.....

구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고
	-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	-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주요사업으로 분리하여 정리	28	추가
		◆ 세부 내용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양성, 관리로 정리	28~29	추가
	◆ '경로당 어르신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그램 「시니어 기억친구」	◆ 사업 종료		삭제
		◆ 교육프로그램으로 내용 재정리 - 치매이해 및 치매예방 운동법 교육 - 치매관련 시설종사자 및 치매환자 가족 교육 - 치매관리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성과 평가대회 및 워크숍	29~30	수정
		◆ 홍보프로그램으로 내용 재정리 - 오프라인 홍보, 언론 홍보, 인터넷 홍보, 옥외홍보	31~33	수정
		◆ 치매극복 행사 -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극복수기공모, 치매극복주간행사, 치매극복걷기대회	33~34	수정
치매 조기검진 사업	◆ 정밀검진 대상자 - 선별검진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임상증상 있는 자 (선별검진 대상자의 15~20% 추계)	◆ 정밀검진 대상자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고위험군 정기검진 자, 치매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37	수정
	◆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2년마다 선별검진 실시, ~)	◆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1~2년마다 선별검진 실시, ~)	38	수정
치매예방 등록 관리사업	◆ 사업 내용 - 기초상담 개요 본격적인 등록관리 절차에 앞서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 접촉한 모든 노인(또는 관련보호자) ~	◆ 사업 내용 - 기초상담 개요 치매문제와 관련하여 ~ 모든 시민(또는 관련보호자) ~ - 세부내용 ⑤ 상담절차 추가 등록관리 혹은 조기검진이 불필요한 경우 → 관련 정보 제공 후 종결	42	수정 및 추가

.....

구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고
치매예방 등록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환자군 관리 -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대상 문제 ~ ㉡ 합병증 및 사고발생 시 ~ ㉢ 방문간호사 또는 ~ ㉣ 방문기록은 ~ ㉤ 부가적인 관리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등록 관리 -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대상 문제 ~ ㉡ 2016년 ㉠항 내용 동일함 ㉢ 2016년 ㉠항 내용 동일함 ㉣ 필요시 의료기관 등 자원연계 	44	삭제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대상 : 전국소득평균 100% 이하 - 조호물품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호기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 - 제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기간 : ~ ㉡ 대여방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대상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 조호물품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호기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유도) - 제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소모품 :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조호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기간 : ~ ·대여방법 : ~ 	47	수정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치매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 - 목표 : 120명 발굴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 추진 흐름도 : 대상자모집→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자치구치매지원센터 배치~ ※ 2016년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치매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 - 목표 : 150명 발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 추진 흐름도 : 대상자 모집→활동교육 →자치구치매지원센터배치 ~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48	수정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건강센터 운영 - 목적 : 치매약화방지, 치료 및 재활을 위한 ~ -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 ㉡ 경도·중등도 치매환자를 ~ ㉢ 지역 내 유관시설 종사자에게 ~ - 대상별 세부 운영내용 :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건강센터 운영 - 목적 : 치매예방, 치매약화방지, 치료 및 재활을 위한 ~ -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 노인 대상으로 치매예방· 기억증진 활동 프로그램 시행 ㉡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 ㉢ 경도·중등도 치매환자를 ~ ㉣ 지역 내 유관시설 종사자에게 ~ - 대상별 세부 운영내용 :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53~56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 자원 : 2011년 중구 자체자원, 2013년 서대문구 ~ 민간자원투입, 2015년 4개소 ~ 서울시예산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 자원 : 민간자원 투입 	56	변경

구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고
치매치료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15년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1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비용 지급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15년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1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비용 지급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통장예금주와 치매환자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등본 첨부)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이 적용된 금액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 가구 : 7,641) 	57~60, 63	변경 및 추가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체계 광역 :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평가 지역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운영전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치매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치매교육을 제공하여 치매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①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치매센터 :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평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 ~ ③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봉사단체 1개, 봉사인원 ~ · 모집인원 및 활동시간 ~ · 자원봉사자 신청서, 출석부, 활동 ~ ④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기본교육 : 봉사단 활동영역 ~ · 교육 시행 시기 : 3월 ~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체계 광역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및 단체 활동내역 평가 지역 : 치매전문자원봉사자와 단체 모집 및 교육, 운영전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확대를 통한 치매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①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치매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및 단체 활동내역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과 단체 모집 ~ ③ 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 · 치매극복봉사모임 : 동아리(동호회) 등의 ~ · 치매극복단체 : 지정신청서를 ~ · 치매극복선도학교 : 지정신청서를 ~ 	66~67	변경 및 추가

.....

구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방법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매뉴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인원 및 활동 시간 내용 입력 : ~ ※ 구비서류 : 봉사모임신청서, 봉사활동 ~ ④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교육 ·치매 기본교육(치매전문자원봉사모임) : ~ ·치매극복단체 및 치매극복선도학교 : ~ ·교육 시행 시기 : 모집 시 진행 - 운영 방법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매뉴얼 및 치매극복 단체 지침 활용 		
치매 통합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운영 ③ DB 주요 내용 ※ DB자료 입력 및 수정요청은 월별 마감 ·수정은 익월 5일까지 요청 가능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접수하여 분기별 일부 수정가능 (1분기 4월 5일, 2분기 7월 5일, 3분기 ~) *합당한 사유 : 사망 통보 지연, 치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지급 지연 등 업무 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추진체계 : 홈페이지 운영 ·천만시민 기억친구 등록 및 현황 ·가족지지도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e-희망교실' ◆ 사업내용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운영 ③ DB 주요 내용 ※ DB자료 입력 및 수정요청은 월별 마감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접수하여 수정가능 *합당한 사유 : 월말이 공휴일인 경우, 사망 통보 지연, 치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지급 지연 등 업무 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69~71	추가 및 수정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평가지표 	79	수정
인사복무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2) 인사 기록 다) 상·하반기 직원근무평가표 작성·보관 (시기 6월, 12월 / 행정서식5) ◆ 복무 2) 종사자 정년 가) 직영의 경우 ~ 나) 민간위탁의 경우 : 수탁기관의 정년 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2) 인사 기록 다) 직원 근무 평가표 필요시 작성·보관 (행정서식 5) ◆ 복무 2) 종사자 정년 가)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나) 정년 상한은 만 60세임 다) 정년에 이른 날(종사자 출생일 기준)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함 	82~83	수정 및 변경
예산·회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 지침 2) 예산 편성 다) 세출예산 과목 구분(안) : 과목(관, 항, 목),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 지침 2) 예산 편성 다) 세출예산 과목 구분(안) 단위(회계)·세부사업, 2017년 예산 과목(편성목) 및 내역, 금액(천원) 	87	양식 및 용어 수정

구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고
예산·회계 지침	<p>2) 예산의 변경 및 적용 가) 예산의 변경 ② 변경절차 : 기관장의 내부방침과 서울시(자치구) 보고·승인 후 변경사용 가능 ③ 전용절차 : 항간 이상 전용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자치구)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지침 가) 인건비 ① 기본급 · 센터장 : 주2일 근무기준 월 2,136,000원을 지급 (단, 자치구 협약 및 여건에 따름) ※ 지원의사의 경우 그 센터장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센터의 의사관련 인건비는 월 최대 2,2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센터 직원 : 종사자별 기준에 의해 기본급 지급 · 근무 연수(호봉) 산정 - 센터의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정기 승급 적용일 입사 익월 1일) - 직종 전환 시 기준 지급 ~ - 경력 인정 범위와 방법 A. 경력 인정 세부내용 ⑤ 10할 인정 : 치매지원센터 근무경력, 군 의무 복무 기간 (군인사법 제7조, 병역법 제2조 및 제3조) ⑥ 8할 인정 : 치매와 직접 관련된 기관 근무경력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치매 주·단기시설) ⑦ 6할 인정 : 면허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근무 경력) ※ 단, 10호봉까지는 6할 인정, 초과경력에 대하여 5할 인정으로 계산함 B. 경력기간 계산방법 ① 여러 기관 ~ 각각 계산 ※ 단, 10호봉까지는 6할 인정, 초과경력에 대하여 5할 인정으로 계산함</p>	<p>2) 예산의 변경 및 적용 가) 예산의 변경 ② 변경절차 : 기관장의 내부방침과 각 소관부서에 보고·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 ③ 전용절차 : 항간 이상 전용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소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지침 가) 인건비 ① 기본급 · 센터장 : 주2일 근무기준 월 2,116,000원을 지급 (단, 자치구 협약 및 여건에 따름) ※ 지원의사의 경우 그 센터장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센터의 의사관련 인건비는 월 최대 2,116,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외 종사자 인건비 세부 지급기준 -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17년 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기본급, 표 1-1, 1-2>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인력에게만 지급함 -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7년 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지원센터의 ~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산후대체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근무 연수(호봉) 산정 - 센터의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 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근무경력 인정범위 A. 근무경력 인정범위 ⑤ 10할 인정 : 중앙치매센터, 타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치매상담(지원)센터,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 제외) ⑥ 8할 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요양·복지시설 근무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⑦ 6할 인정 : 면허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보건소,</p>	89~90	수정 및 변경

.....

구 분	2016년 안내서	2017년 안내서	page	비 고
예산·회계 지침	<p>② 수 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책수당 : ~ - 위험수당 : ~ - 복지수당 : ~ - 가족수당 : ~ - 명절수당 : ~ - 초과근무수당 : ~ 	<p>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 팀원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지원센터) 근무로 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격자로 재임용 가능,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 인정 B. 경력기간 계산방법 ◎ 여러 기관 ~ 각각 계산 ② 수 당 - 가족수당(배우자 40천원 / 기타 20천원) : 상근 전 직원 ~ - 특수근무수당(사무국장 70천원, 팀장 60천원, 팀원 50천원)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 ~ -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 초과 근무를 한 종사자 · 시간외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사전·사후관리 철저)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지급 시기 : 익월 10일 이내 활동시간 산정하여 지급 · 휴일근무수당 : 대체휴무 제공 ⑤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⑥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다) 사업비 ①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 활동기본법' 및 각 자치구 해당 조례를 따름. 비용 지급은 불가하나 자원봉사기간 중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라) 결산보고 ① 센터장은 2018. 1. 15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각 소관부서로 제출</p>	90~95, 97	수정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서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서식 수정문서 - 개인 근무 상황부 - 출장복명서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안문서 -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 - 출장비 지급내역서 - 외부강사료 지급 기안문서 - 강의확인서 - 비품관리카드 - 비품(장비 등 물품 취득) 대장 ~ - 소모품 수불대장 	108, 116, 125~126, 128~129, 131~133	수정 및 추가

.....

I 치매관리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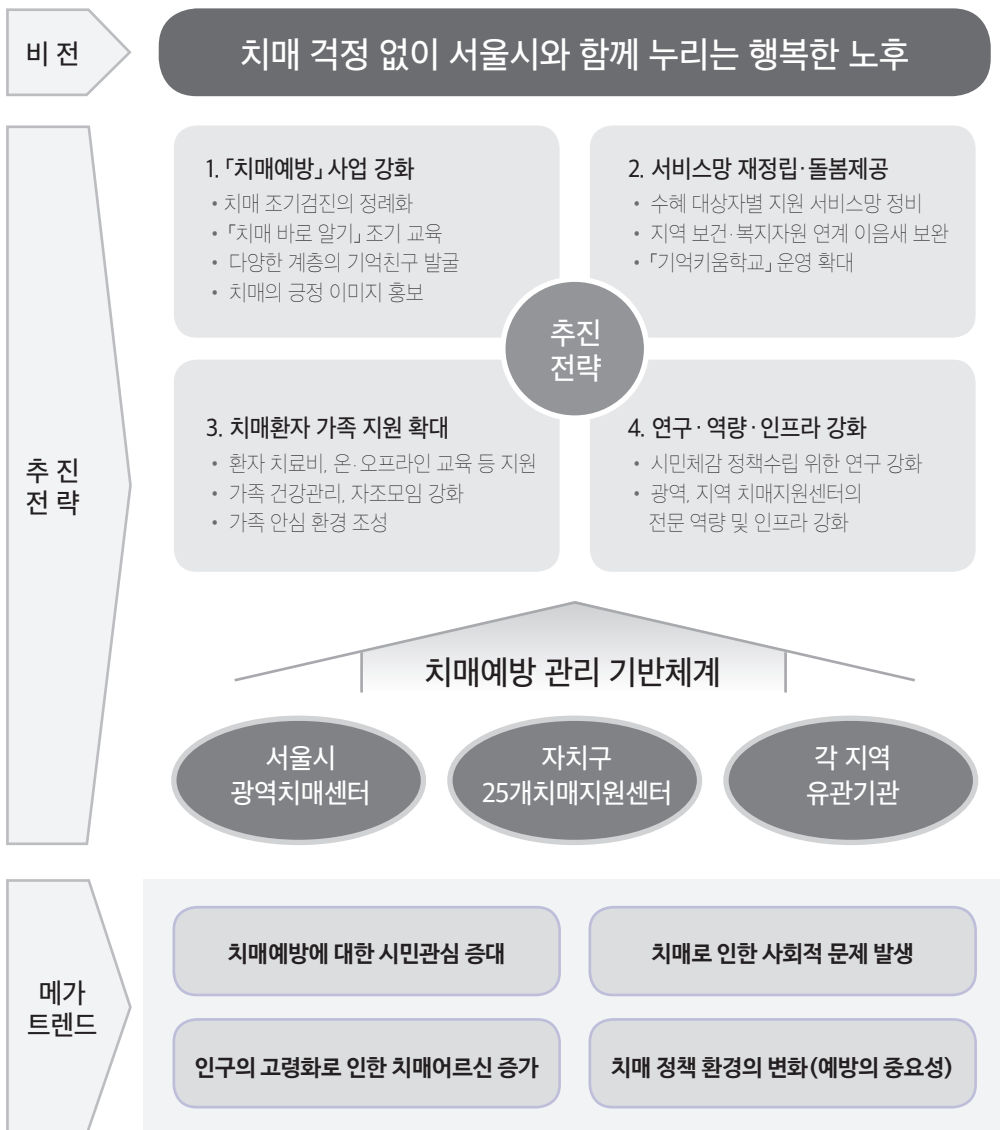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2. 단계(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3. 추진 체계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5.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협의체)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와 재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비전 · 추진 전략



다. 사업 내용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가) 치매관리법 제5조(치매극복의 날)에 의거 치매극복의 날 등 행사 개최
- 나) 전 사회계층 대상 인식개선 활동(‘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시행, 치매예방 홍보 등)

2) 치매조기검진 사업

- 가) 대 상 : 만 60세 이상 중심
- 나) 검진절차 : 상담 → 선별검진 → 정밀1차 검진 → 정밀2차 검진 실시 후 치매 진단

3) 치매예방등록관리 사업

- 가)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 정상군 : 정기선별검진,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등
 - 고위험군 : 정밀재검진(6개월), 치매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
 - 치매군 : 인지건강프로그램, 저소득층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 자원 연계
 - 가족 : 가족모임, 온·오프라인 교육, 건강관리(스트레스 해소, 만성질환 등)
- 나)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작업, 원예, 운동, 미술, 음악요법 등), 지역유관기관 보급
 - 치매, 고위험군(경도 인지장애)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건강프로그램 제공
 -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 지역사회에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보급

4)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가) 원인확진비 :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으로 1인당 8만원 이내 지원
- 나) 치매치료비 :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으로 월3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연 36만원이내) ≒ 전국평균 중위소득 120%이하

5) 치매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 가) 전문 자원봉사자 및 치매극복 단체 양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 나) 치매관련 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및 관리자, 복지기관 종사자) 교육

6) 기억키움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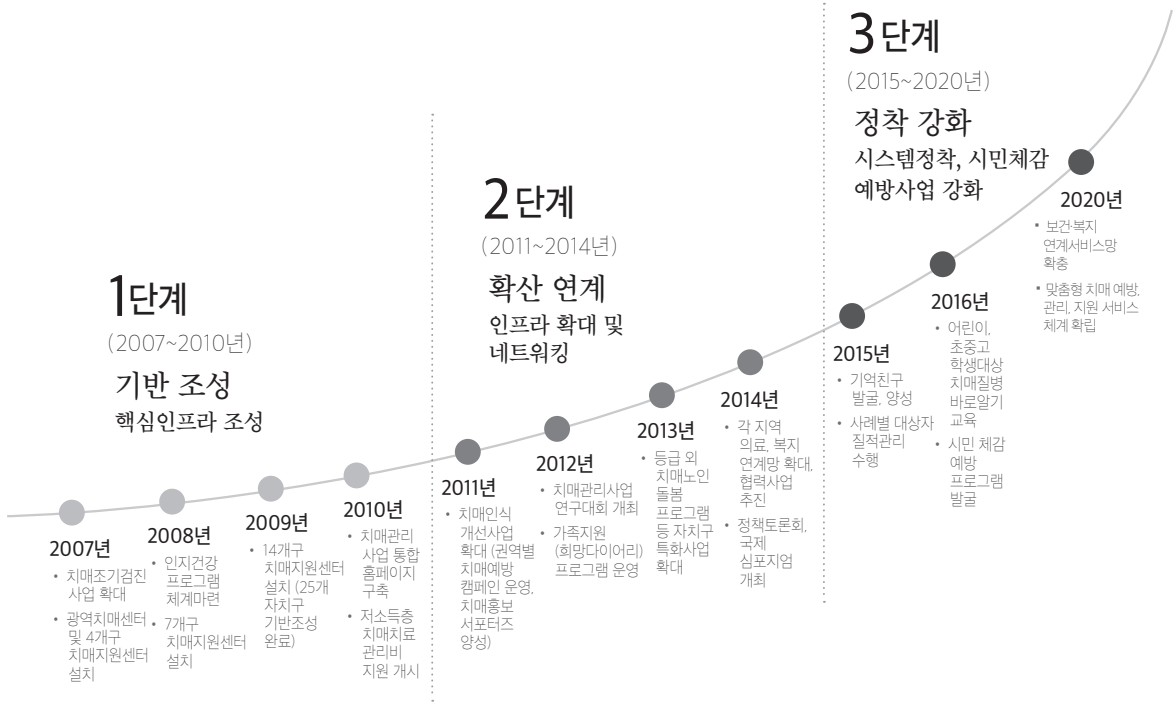
- 가) 대 상 : 등급 외 경증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우선(10~20명/일 이용)
- 나) 내 용 : 치매지원센터 내 설치운영, 인지건강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 제공

7) 치매정책 연구 및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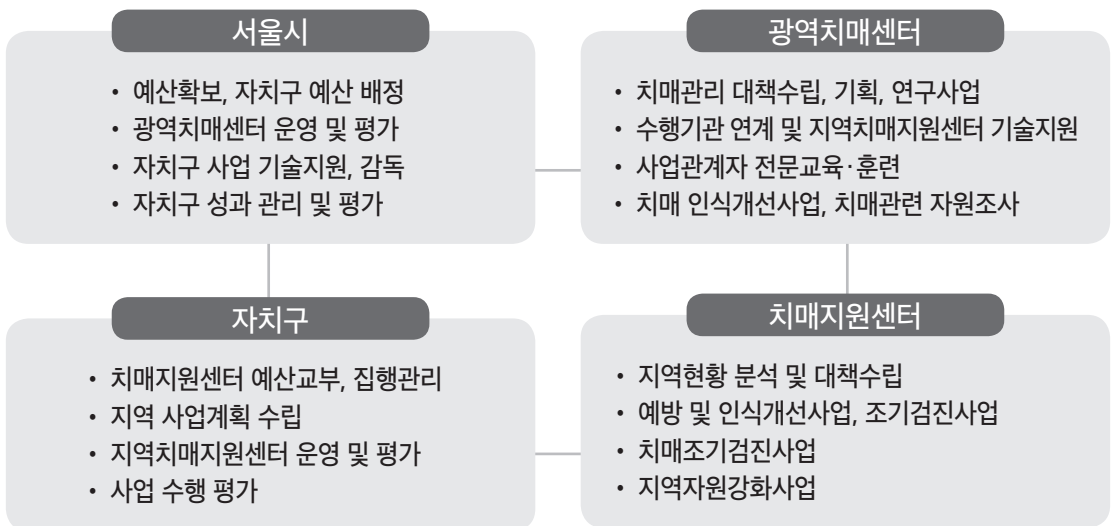
- 가) 치매 정책 연구사업
- 나) DB 통합관리(25개구 치매관리사업의 실적관리 및 연계, 정보공유)

.....

2. 단계(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3. 추진체계



4.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1) 목적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치매 문제의 해결이라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총괄 기획 및 평가, 사업지침 개발, 표준 프로그램 및 도구 개발, 사업인력교육 및 기술지원, 정보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근거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95호, 2016.7.14 개정)

다)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광역치매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3) 역할

가) 치매관리사업의 대책 수립 및 운영, 평가

- 치매사업 기획 및 대책 수립, 지침서 개발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지표개발
- 사업운영 및 성과 평가, 예산집행

나) 치매 연구사업

- 치매치료, 조호 관련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치매관리사업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방향, 치매사업 효과 등 연구

다) 서울시 및 자치구치매지원센터 기술 자문 및 업무 지원

- 치매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DB관리, 정보, 통계 및 수집 분석 및 제공
- 치매관련 전문 인력 역량강화교육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세미나·학술대회 기획 및 주관

라) 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 추진

- 치매예방에 대한 올바른 치매 인식개선사업 추진
- 인식개선 대시민 홍보활동 등

.....

4) 설치·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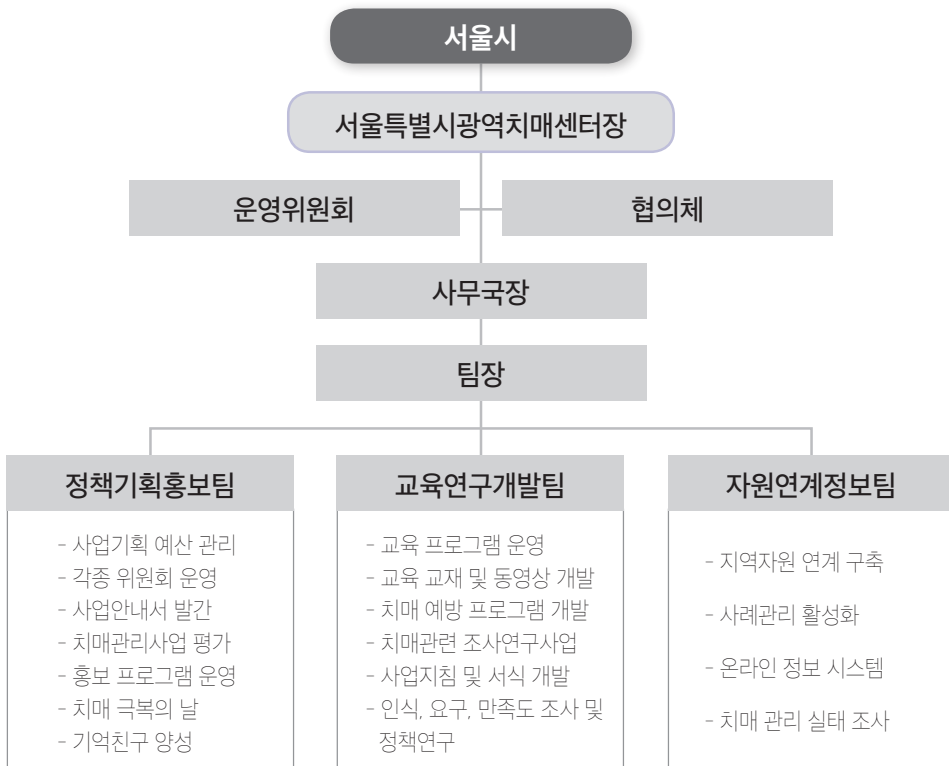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2013. 7월 지정, 보건복지부)

나)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 시설규모 : 310.77㎡(사무실 1, 회의실 1, 교육실 1)

다) 인력현황 :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 팀장 1인, 팀원 5인 이상

라) 조직도



*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 책임

* 운영위원회 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필요시 위원회 추가 설치 가능

5) 운영 기본지침

가) 조직 구성

- 운영인력 : 총 8~9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5인 이상)

※ 필요시(사업 규모 변동 등)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구성원
 - ① 센터장(비상근, 필수) : 1명
 - 자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센터장 자격기준, 주2일(16시간이상) 근무(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역할 : 센터 운영 전반 책임자
 - ② 사무국장(상근, 필수) : 1명
 - 자격 : 법 제16조의 2의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역할 : 센터 업무 전반 사무 총괄
 - ③ 팀장(상근, 필수) : 1명
 - 자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역할 : 정책기획 업무 및 센터 운영 실무 총괄
(각종 회의 운영, 자치구 센터 업무총괄, 직원 지도·감독 등)
 - ④ 팀원(상근, 필수) : 5명 이상
 - 자격
 -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역할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기획, 사업표준 개발, 홍보, 인력 교육 및 교재 개발, DB 관리, 연구사업 수행

나.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1) 목적

서울시의 치매관리사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및 원인확진비 지원, 지역유관 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 가)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나)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항제5호
- 다) 각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3) 역할

가) 해당 지역 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평가

나) 지역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 추진

대상자별(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신규 발굴 및 치매정도별 등록·평가, 추후관리

다) 치매 가족 지원 및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라)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및 원인 확진비 지원

마) 지역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관련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등

4) 설치·운영 기준

가) 명 칭 : 「000 구 치매지원센터」라고 칭함

나) 운영

- 운영주체 : 해당 자치구 보건소(직영 또는 위탁운영)
- 수탁 기관의 자격기준 및 역할
 - 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치구 내 또는 서울시 내에 있는 의료 기관
 - ②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③ 해당 자치구의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설치 기준

- 시설 연면적 : 430.0㎡ 이상
- 센터의 위치설정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를 고려
- 시설구조 및 설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 시설 건물 기준 : 일반건물 매입 또는 임대, 공공부지 신축, 증축 등

[시설공간 가이드라인]

	구 분	실 수	비 고
치매지원센터	사무실	1	
	상담실	1	
	작업실	2	
	화장실 1	1	
	거실(휴게실) 1	1	
	검진실 1	1	
	검진실 2	1	

.....

인지건강센터	거실(휴게실) 2	1	
	치매재활 프로그램실 1	1	
	치매재활 프로그램실 2	1	
	치매재활 프로그램실 3	1	
	처치실	1	
	욕실	1	
	화장실 2	1	
기억키움학교	별도 전용공간	1	대상자 10인 기준 20평(66.11㎡)이상 /1인 2평 이상
계		16	

[예시) ○○○구 치매지원센터]

구 분		실 수	면 적 (㎡)
1층	화장실	1	30.8
	사무실	1	16.2
	상담실	1	8.9
	검진실	3	44.3
	거실 및 휴게실	1	27.5
	센터장실	1	8.9
	엘리베이터	1	29.1
2층	화장실	1	30.8
	샤워실 및 탈의실	1	16.2
	처치실	1	17.8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실	3	59.6
	기억키움학교	1	66.11
	거실 및 휴게실	1	26
	엘리베이터	1	29.1
3층	화장실	1	30.8
	거실 및 휴게실(회상치료실)	1	16.2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실	2	45.3
계			503.61

※ 예시는 공간구성의 참고사항, 해당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라) 구비 장비

- 사무기기 및 가구류 : 사무실 집기,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 가구류 등
- 전자제품 : TV,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등
- 의료용 장비 : 활력징후 측정 장비, 휠체어, 안전장비, 검진 및 처치실용 침대, 기본 처치 기구 세트 등
- 차량 및 기타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관련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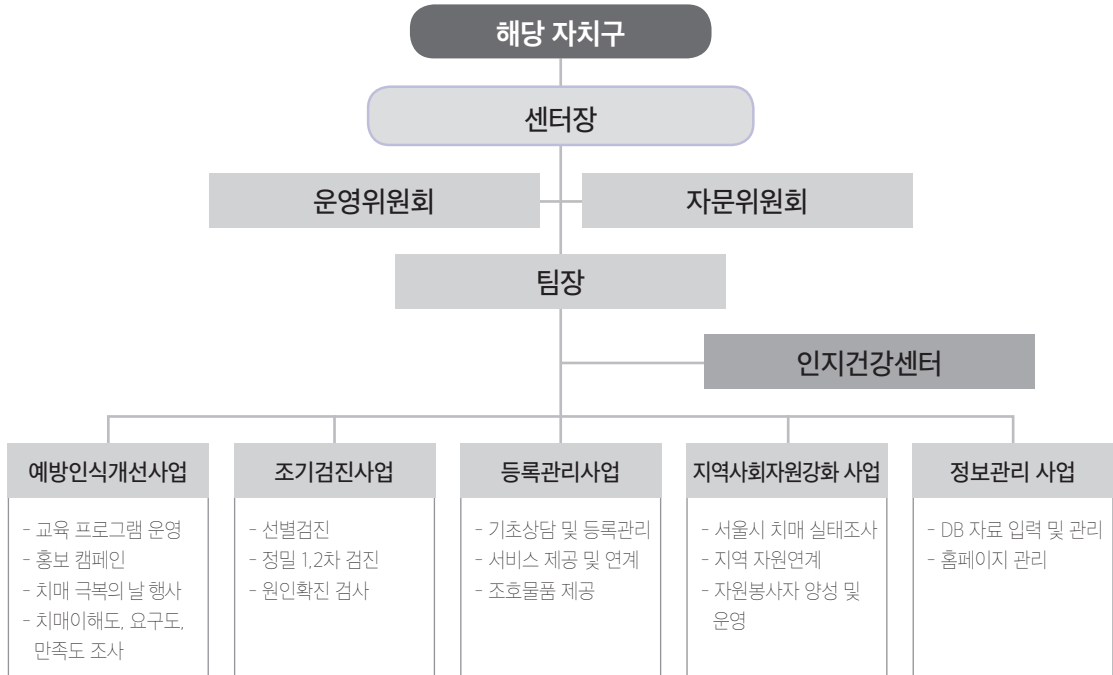
.....

5) 운영 기본지침

가) 조직구성

- 운영인력 : 총 12명 내외(필수인력 7명,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조정 가능)
(필수인력 7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2급 5명)

[조직도(안)]



• 구성원

① 센터장(비상근, 필수) : 1명

- 자격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센터장 자격기준 준용, 주2일(16시간) 근무(단, 자치구 협약 및 여건에 따름)

- 역할 : 센터 업무전반 총괄 권한 및 책임자, 정밀검진(임상평가) 시행

② 팀장(상근, 필수) : 1명

- 자격 : 간호사 국가면허 소지자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역할 : 센터 업무전반 사무총괄

③ 팀원(상근, 필수)

- 자격

팀원1급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등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보건복지분야 국가면허·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팀원2급 : 팀원1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역할 : 치매관리사업 실무담당,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 ※ 치매관련 전문자격 소유자나 교육과정 이수자, 치매나 노인조호
유경험자 우선 선발

5.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협의체)

가. 운영위원회

1)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가) 기능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기본방향 결정과 현안 논의, 운영실무 자문
- 나) 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다)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
-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센터장(당연직)
 - ② 관계공무원(당연직)
- 마)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이용자)의 환경 및 고충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2)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가) 기능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센터 운영, 사업 대상자의 권익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실무 자문, 현안 논의
- 나) 구성원 : 위원장인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다)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
-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센터장(당연직)
 - ② 관계공무원(당연직)

.....

마)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등

- ①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나.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1)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가) 목적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 및 기관 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구성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자치구보건소장, 공립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노인회, 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생활체육회, 치매환자가족, 데이케어센터시설장, 치매학회·협회, 학계 관계자 등

다) 운영횟수 : 연 4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라) 위원선정 : 구성원 중에서 위촉함

마)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평가 등

- 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
- ③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분야별 기술적 자문
- ④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중장기 대책에 대한 자문
-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2)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가) 기능 : 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나) 구성원 : 위원장인 보건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다) 운영횟수 : 연 2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라) 위원선정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함

- ① 보건소장(당연직)
- ② 센터장(당연직)
- ③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 ④ 치매 및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관계공무원(당연직)
- ⑥ 이용자의(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마)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평가 등

- ①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③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
- ④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
-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II 치매관리사업 업무 안내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2. 치매 조기검진 사업
3. 치매 예방등록관리 사업
4.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5.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6. 치매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7.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가.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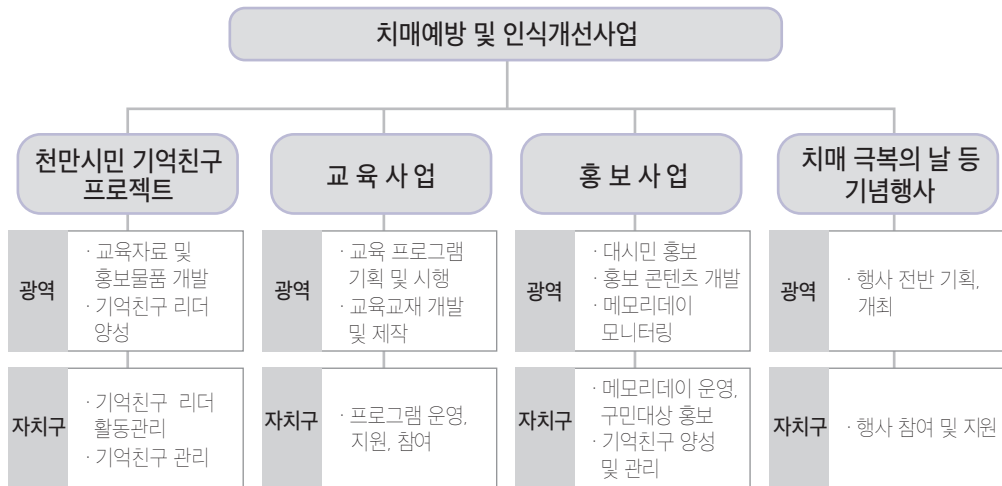
1) 목적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치매도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서울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다) 「치매극복의 날」,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 기념 행사 개최
- 라) 시민(지역 구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 마) 사업 기초 자료활용을 위한 조사 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3) 추진 체계



나. 세부 내용

1)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가) 사업 개요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고 누구나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치매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에서 환자나 가족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

나)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 ① 대 상 :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시민
- ② 내 용 : 천만시민 기억친구(일반시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사업기획 및 총괄, 교육 자료 개발, 기억친구리더 모집 및 양성교육,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모니터링, 양성된 기억친구리더 자치구 연결, 기억친구 직접 양성(제한적 시행)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치구 내 기억친구 모집 및 양성교육
- ④ 추진방법
 - 기억친구리더 양성(광역)→기억친구리더 연결→기억친구 양성(자치구)

다)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관리

- ① 대 상 : 양성된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 ② 내 용 : 양성된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관리, 프로젝트 홍보
-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전체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현황 및 활동 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홍보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치구 기억친구 및 자치구 활동 기억친구리더 관리
- ④ 추진방법
 - 온라인 홍보 : 기억친구 홈페이지 관리, 치매관리사업 새소식 및 기억친구 활동내용 소식 전달
 - 홍보물품 배포 : 기억친구 밴드(팔찌), 리플렛 배포
 - 기억친구 관리 : 자치구별 기억친구 DB 관리

2) 교육 프로그램

가) 치매이해 및 치매예방 운동법 교육

- ① 대 상 :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시민
- ② 내 용 : 치매의 이해, 치매예방 운동법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자료 개발, 자원 모니터링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교육 운영 및 평가(교육 사진 및 대상자 명부 첨부 등)

④ 추진방법 : 대상에 따른 방문 및 내방 혹은 교육방법 선택(동영상 교육자료 배포 등)

나) 치매관련 시설종사자 및 치매환자가족 교육

① 대 상 :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서울특별시 거주 치매환자 가족

② 내 용 : 치매의 이해, 치매환자의 간호,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기술, 치매예방 운동법 등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교육계획 수립, 교육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등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교육계획 수립, 교육 진행 및 평가

④ 추진방법 : 방문교육, 내방교육, 동영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대상에 따른 교육방법 선택

다) 치매관리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① 대 상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및 보건소 관계자 등

② 내 용 : 보건소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센터 팀장 역량강화 교육, 센터 신규직원 기초 교육 및 실무자 역량강화 등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④ 추진방법 : 기획→일정 안내→신청자 모집→진행 및 평가

라)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성과 평가대회 및 워크숍

① 대 상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② 내 용 : 치매관리사업 총평,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사업발표회, 우수한 기관 및 직원 표창 등

③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④ 추진방법 : 기획→일정 안내→신청자 모집→진행 및 평가

3) 홍보 프로그램

가) 오프라인 홍보

① 권역별 메모리 데이 캠페인

- 내 용 : 5권역 메모리 데이 행사 운영
- 일 시 : 6, 10월 셋째 주 수요일 15:00~17:00(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메모리 데이 캠페인 모니터링 시행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메모리 데이 캠페인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광역 콘텐츠 개발→일정 안내→계획서 제출(자치구)→메모리 데이 운영→모니터링(광역)→메모리 데이 실적 및 결과보고 제출(자치구)→통합 결과보고 작성(광역)→메모리 데이 결과 통보(광역)

② 캠페인 진행

- 내 용 : 자치구 메모리 데이, 타 기관과 연합하여 홍보부스 운영 포함
-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캠페인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홍보물 배포와 함께 검진 1개 또는 체험활동 1개 이상 진행하는 것만 인정
 - 예) * 치매조기검진 1개, 팔찌 만들기 체험활동 1개, 홍보물 전달
 - * 팔찌 만들기 체험활동 2개, 홍보물 전달
 - * 퍼즐 맞추기 체험활동 1개, 가두행진, 홍보물 전달

③ 외부기관 등 방문홍보

- 내 용 : 외부 기관 방문하여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안내
-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방문홍보 주관하여 진행
- 추진방법 : 리플렛 전달, 포스터 부착 등

※ 교육목적으로 타 기관 방문하여 홍보물까지 전달했다고, 교육과 방문홍보 이중실적으로 DB입력 안됨

나) 언론 홍보

- ① 내 용 : 언론매체를 통한 기관 홍보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언론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언론홍보계획 수립, 언론홍보 진행

③ 추진방법

-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및 사업소개 (언론동향 보고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에 제출)
- 보도기사 배포를 통한 신문기사 게재
- 잡지, 생활정보지 관련 기관의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

④ 기타사항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언론 홍보는 매체에 홍보 된 내용만 실적으로 인정(직원 혹은 기관 홈페이지, SNS, 블로그, 1365 자원봉사 사이트, VMS 등의 사업내용 보고는 언론매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인터넷 홍보

① 내 용 : 인터넷을 통한 기관 홍보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인터넷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인터넷홍보계획 수립, 인터넷홍보 진행

③ 추진방법

- 기관 홈페이지 관리 : 게시물 관리(공지사항, 센터활동보고, 사진첩 게시판)
- 타 사이트 연계를 통한 홍보 : 배너 혹은 사이트 주소 링크, 사업안내 예) 복지관, 병원, 협회, 주민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등
- 기관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홍보 : 사업소식, 보도자료 링크 등

라) 옥외 홍보

① 내 용 : 설치물을 사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여 진행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옥외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옥외홍보계획 수립, 옥외홍보 진행

③ 추진방법

- 전광판 혹은 버스승강장을 활용하여 홍보
- 버스, 택시, 지하철 내 외부 대중교통 광고
- IPTV 줄 광고
- 배너, 포스터 홍보 등

.....

마) 기타 홍보

- ① 내 용 : 기타방법으로 기관 홍보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기타방법 홍보계획 수립, 평가 등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기타방법 홍보계획 수립, 기타홍보 진행
- ③ 추진방법
 - 소책자 발간
 - 기관안내 리플렛 및 치매예방수칙 3·3·3 등 인쇄물 홍보
 - 홍보물품 제작

4) 치매 극복 행사

가)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

- ① 목 적 : 치매가족의 치매극복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및 공유의 장 마련
- ② 대 상 : 서울특별시 전체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치매가족, 실무자 등
- ③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중, 장소 추후 통보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의 날 총괄 기획, 행사 주관하여 시행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치매환자 및 가족 행사참여유도 등
- ⑤ 추진방법
 - 치매관련 정보제공, 자치구별 업무유공자 표창, 세부행사(주제선정) 진행 등

나) 치매 극복수기 공모

- ① 목 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사회적인 따뜻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치매극복수기와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이용 수기 공모
- ② 대 상 : 치매극복 경험이 있는 치매 환자나 그 가족
- ③ 일 정 : 6월~8월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수기 공모, 우수작품 선정 및 시상
- ⑤ 추진방법 : 6월~8월 접수→한국문인협회 심사 의뢰→9월 중 시상식 진행

다) 치매 극복주간 홍보 행사

- ① 목 적 :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함

.....

- ② 대 상 : 서울 시민
- ③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중, 서울시청 시민청
- ④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기획, 행사 주관하여 시행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치매극복주간 행사 참여, 세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⑤ 추진방법 : 치매예방 정보 제공, 치매극복 프로그램 소개, 치매선별검사, 센터 예방 활동 어르신 작품 전시 등

라) 치매 극복 걷기대회

- ① 목 적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 ② 대 상 : 서울시 전체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등
- ③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0일 (토), 뚝섬유원지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④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 전달, 사업평가
 - 광역치매센터 : 장소 섭외, 프로그램 및 코스 구성, 보험 가입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치구별 부스 운영, 행사 참석자 모집
- ⑤ 추진방법
 - 등록 및 참가물품 배부→개회식 진행(개회사, 행사 개요 및 코스 안내 등)
 - 이벤트 및 준비 체조 시행→코스 따라 걷기→폐회식

※ 치매극복 걷기대회 중앙치매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실시

5) 치매 인식도·만족도 조사

- 가) 대 상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이용자
- 나) 조사 내용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 다) 조사 도구 : 서식 3-① 치매인식도 조사, 서식3-② 치매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참조하여 진행
- 라) 조사 방법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가 정한 시기에 설문조사 실시 후 DB 입력

2. 치매 조기검진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적

지역사회 거주노인 전체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화 방지에 기여함

2) 근거

가) 치매관리법 제11조

나)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대상자)

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치매 검진방법 등)

라)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치매검진사업)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약 10~15%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나) 완치가 어렵고 만성적이고 진행성의 경과를 보이는 치매의 경우에도, 최근 치료약물의 개발로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단계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지연 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다)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거나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 자신과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라) 아울러 치매 고위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내 지속적인 예방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경우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치매 발병을 2년 정도 지연 시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을 약 30%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

4) 사업 추진체계

가) 광역치매센터

- 조기검진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관리, 서울시 검진 통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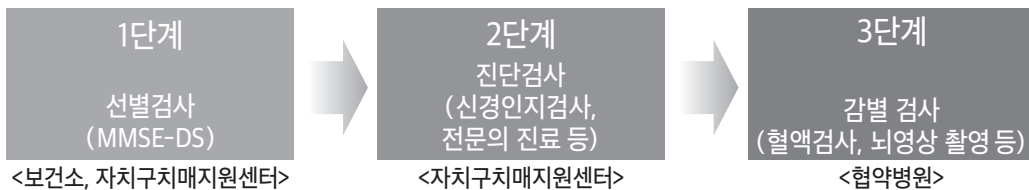
나)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입력, 지역 검진 통계 확보

나. 사업 내용

1) 사업(검진) 대상자 : 지역사회 거주 만 60세 이상인 자

-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모든 사업대상자 중 저소득 주민 우선 검진)



가) 선별검사

- ① 검진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② 검진 장소
 - 내원검진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내원검진을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되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 ③ 검진 예약
 - 센터 내소 또는 전화 예약
 - ‘치매선별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②) 작성 및 활용하여 예약 관리
 - 등록번호 부여 방법 : 부록 등록번호 부여체계 ‘자치구 부여번호’(표 11-⑤) 참고
- ④ 검진 도구 및 내용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 작성

- 치매선별검사지 MMSE-DS(서식 1-③)
(2016 노인복지보건사업안내 2-9 치매상담센터 운영 근거)

⑤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MMSE 점수에 대한 정상 노인 기준 값을 기준으로 결과 해석

* MMSE 점수 < 평균 - 1.5 표준편차 : '인지저하' 로 분류
⇒ 정밀검진 의뢰

* MMSE 점수 ≥ 평균 - 1.5 표준편차 : '정상' 으로 분류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2년마다 선별검진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예방 프로그램 연계)

- 선별검진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서식 1-④)의 선별검진 부분 작성

⑥ 검진 결과 통보

* '인지저하' 로 분류된 경우 :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인지저하)'
(서식 1-⑥) 양식 활용하되, 전화 또는 직접 설명을 통해 결과 통보

*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정상)'
(서식 1-⑤) 양식 활용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검진 결과 통보

나) 정밀검진

- ① 검진 대상자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고위험군 정기검진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② 검진 장소

- 내원검진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내원검진을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되 방문검진 시 주변의 방해가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 ③ 검진 예약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정밀 1단계 및 2단계 동시 예약
- '치매정밀검진 1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⑦),
'치매정밀검진 2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⑧) 작성 및 활용

- ④ 검진 방법

- 1단계 : 치매신경심리평가 < CERAD-K(N) 또는 SNSB 도구 사용 >
- 시행자 :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시행

.....

- 2단계 : 치매 임상평가
 - 시행자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
 - 임상평가 시행 후 다음 항목에 대한 결과 도출

※ 진단 분류군 : ㉗ 치매 ㉘ 치매 고위험 ㉙ 정상

- ㉗ 치매 : DSM-V 치매 기준에 근거
- ㉘ 치매 고위험 :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전문의 진찰결과 치매 진행 예방 또는 인지기능저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 장애 (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
- ㉙ 정상 : 상기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 (경미한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됨)

※ Clinical Dementia Rating (CDR(서식 1-㉔))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㉗ 치매 : 전체점수 0.5~5
- ㉘ 치매 고위험 : 0.5
- ㉙ 정상 : 0

※ 정밀 검진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서식 1-㉕)의 정밀검진 부분 작성

⑤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 로 진단 분류된 경우
 - ⇒ 치매 원인확진 검사 연계 ⇒ 원인확진 후 예방등록 관리사업 연계·등록
 - ⇒ 지속관리
- ‘치매 고위험’ 으로 진단 분류된 경우
 -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연 1회 정밀검진 실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예방 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 제공)
- ‘정상’ 으로 분류된 경우
 -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1~2년마다 선별검진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예방 프로그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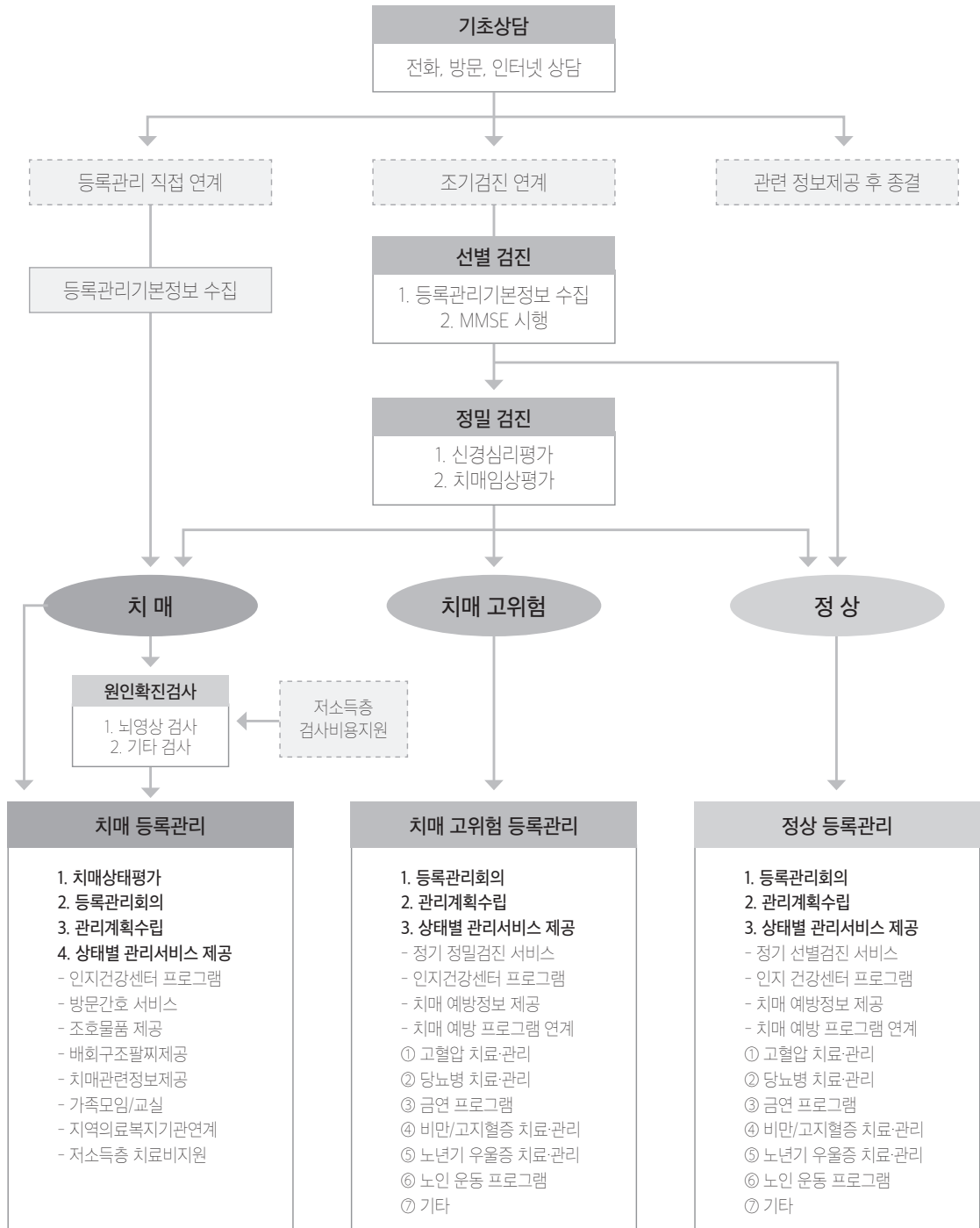
⑥ 검진 결과 통보

- 최종적인 검진 결과를 2단계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함 (정밀 검진 1단계 및 2단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대면 또는 전화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설명함

다) 치매 원인 확진 검사 연계

- ① 대상자 : 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 분류된 자(정밀검진 대상자의 약 20~25% 추계)
- ② 주요 내용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수탁병원(또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연계를 통한 뇌 영상 검사 및 기타 진단 의학적 검사 시행
 -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치매 원인 확진
 - 치매 원인확진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서식 1-④) 치매 원인확진 부분 작성
- ③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예방등록 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시행
- ④ 검진자료 관리
 - 자료 보관
 - 개인별로 작성된 서식들은 개인별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⑩)에 철하여 보관(예방등록 관리사업 참고)
 - 각 단계 별 ‘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서식 1-②, 서식 1-⑦, 서식 1-⑧) 기록 보관
 - DB 입력 : ‘치매 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 해당 부분 입력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흐름도]



3. 치매 예방등록관리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적

- 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관련 건강상태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삶의 질 증진
- 나) 정상 또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발생을 감소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노인 자신과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 부담을 줄임
- 다) 치매로 발견된 노인에게는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며, 치매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로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켜 시설입소를 지연시킴

2) 근거

- 가)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 나)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가) 치매는 만성적이고 진행성 경과를 보이는 뇌 정신 질환이며, 진행 단계에 따라 적합한 조호의 유형이나 관련 시설이 다름
- 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케어의 핵심이 되면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 홈, 치매 클리닉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가정 중심 케어’가 효과적이며,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치매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 중심 케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따라서 치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케어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된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치매 서비스 망(Dementia Service Network : DSN)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자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음
- 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이고도 연속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등록 관리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

4) 주요내용

- 가) 치매·고위험·정상군별 등록관리
- 나)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다)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 DB 입력 및 통계 자료 확보

나.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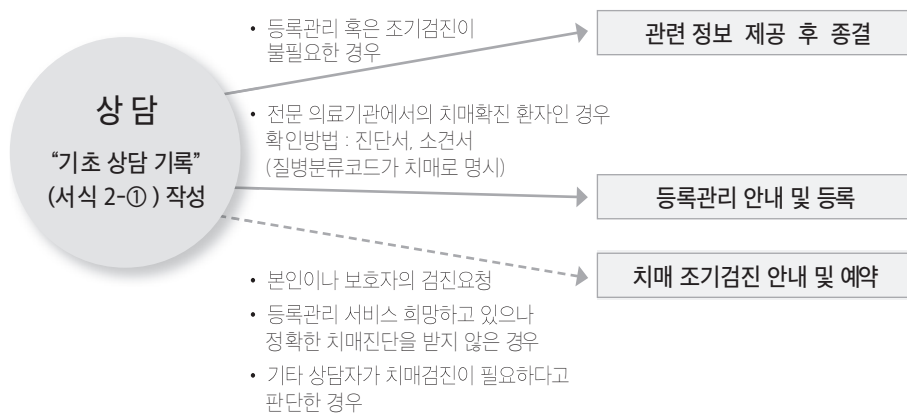
1) 기초 상담

가) 개요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치구치매지원센터에 접촉한 모든 시민(또는 관련보호자)을 일차적으로 상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매조기검진 또는 본격적 등록 관리로 연계하는 절차

나) 세부내용

- ① 장 소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②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③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 노인(만 60세 미만 치매환자도 이용 가능)
- ④ 방 법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
- ⑤ 상담 절차



※ 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매 조기검진 연계

2) 등록 관리

가) 개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중 한가지로 판정을 받았거나,

전문 의료 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대상자별 적정관리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

나) 등록 평가 및 서식 작성

- ①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② 시행 절차
 -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 작성
(조기검진 사업에서 기 작성한 경우는 작성된 서식 그대로 사용)
 -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서식 2-③) 작성
 -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별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⑩)에 첩하여 보관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다) 관리 계획 수립

- ① ‘등록관리 회의’에서 대상자 개인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 및 세부관리 계획 수립
 - 대상자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관리계획 수정
 - ※ 등록관리 회의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등록평가 시행자, 기타 센터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개인별 문제 사정 및 관리계획 수립
(회의 주기 및 시간은 등록 대상자 수에 따라 조정)
- ② 작성서식
 - 치매 : ‘치매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④) 작성
 - 치매 고위험 :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⑤) 작성
 - 정상 : ‘정상 등록관리 계획지’(서식 2-⑥) 작성

라) 치매, 고위험, 정상 등록관리

① 치매 등록 관리

• 방문 간호 서비스

- 목 적 :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가 치매환자 상태와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대상
 - ㉠ 중등도, 중증 재가 치매 환자 또는 신체적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간호 관리가 필요한 치매 환자
 - ㉡ 신체적 제한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및 치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 ㉢ 재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경우

- 시행자 : 간호사

- 서비스 내용

- ㉠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제공
- ㉡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능훈련방법 지도
- ㉢ 욕창 등 신체적 손상에 대한 처치, 투약중 환자 투약관리
- ㉣ 가족 상담을 통한 문제 파악과 정서적 지지
-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이용방법 및 서비스 안내

- 지참물품 : 혈압계, 혈당측정기, 구급약품, 휴대폰, 건강사정도구, 응급상황 시 비상 연락처 등을 기본적으로 지참

- 수행방법

- ㉠ 간호 대상 문제 심각성 및 재가 보호자의 취약성에 따라 정기 방문주기 결정
- ㉡ 방문기록은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주호소 및 간호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간호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하고, 다음 방문 시 수행 결과를 평가
- ㉢ 부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등록관리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 ㉣ 필요시 의료기관 등 자원연계

- 작성서식

- ㉠ ‘방문간호 계획표’(서식 2-⑦)
- ㉡ ‘방문간호 기록지’(서식 2-⑧) * 환자 상태 관찰, 주호소 및 간호문제 중심으로 기록

• **치매 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A. 치매환자 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희망다이어리’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 가족들 간의 정기 모임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상호 간 경험의 공유 및 상호 지지의 기회를 가지고, 치매에 대한 정보나 조호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환자 조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돕고자 함

.....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치매 가족들에게 인지 재구조화, 점진적 근육이완 요법, 운동요법, 사회적 지지 등으로 구성
 - ㉡ 치매 관련 전문 지식 교육 및 상담
 - ㉢ 치매환자의 안전 관리 및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
- 운영 방법
 - ㉠ 5명 이상 인원의 자치구치매지원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
 - ㉡ ‘희망다이어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기(10회기) 내용 준수하여 진행
 - ㉢ ‘희망다이어리’ 운영 후 자조모임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B. 치매가족을 위한 ‘e-희망교실’ 운영(온라인)

- 목 적 :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지지하고자 함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 치매 환자 안전, 정신행동증상, 기억력 저하에 대응하는 방법
 - ㉡ 치매 환자 돌봄 기술 및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도움 정보 등
- 운영 방법
 - ㉠ 온라인 1:1 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
 - ㉢ 방문간호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교육 콘텐츠 활용
- 기타 활용 : 시민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와 치매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 콘텐츠로 활용

C. 방문형 치매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희망메신저’ 운영

- 목 적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치매환자 돌봄 경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방문을 통해 제공하여 가족의 미충족 요구 및 우울감,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함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주요 내용
 - ㉠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중재로 질병 교육, 안전, 가족의 신체적 건강과

.....

정서적 안녕, 사회적 지지와 치매환자의 행동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영역에 대한 심리교육 및 대처기술 훈련으로 구성

- ⑤ 희망노트북, 행동처방, 가족건강증진 구조화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중재
- 운영 방법
 - ④ 중재자와 대상자 1:1로 진행되는 개별 프로그램
 - ⑥ 정해진 주제에 따라 주 1회 총 12주간 실시되며 직접 방문 9회, 전화 상담 3회로 구성(매회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
 - ⑦ 사전평가(기초조사 및 위험평가 : 가족 위험평가, 치매환자 위험평가, 외양평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가정환경 평가) → 중재 1단계(기초조사 및 위험평가결과를 가족과 함께 검토하고 중재 목표 및 계획세우기, 치매정보 및 희망노트북 제공 등) → 중재 2단계(안전 및 신체적 건강 영역 중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족 지지모임 참여 독려 등) → 중재 3단계(가족의 건강증진 영역 중재, 목표 행동 처방 중재 등) → 사후평가 → 종결

• **치매 환자 사례관리**

- 목 적 :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치매환자에게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동시에 자원개발과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서비스에 동의한 치매환자
- 시행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필요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조력)
- 사례관리 절차



- 추진주체
 - ④ 광역치매센터 : DB 구축·보급, 지침 전달, 사업평가
 - ⑥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시행
- 사례관리대상자 DB 입력 및 관리
 - ④ 기존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내 사례관리 서식 전산화 구축
 - ⑥ DB를 통한 사례관리 사업 평가 진행

• 조호 물품 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대 상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대상자 심의 적용 시점은 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에게 조호물품 제공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조호물품 종류
 - ㉠ 위생소모품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에 한함
 - ㉡ 조호기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유도)
- 제공방법
 - ㉠ 위생소모품 :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 조호기구
 - 대여기간 :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
 - 대여방법 : 재가 치매환자에 한하여 무상공급 원칙
- 내 용
 - ㉠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평가를 통해 파악된 환자 상태와 문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케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결정
 - ㉡ 위생소모품 공급 시 개인별 '위생소모품 제공대장'(서식 2-㉠) 에 물품의 종류, 환자 성명,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가 직접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함
 - ㉢ 조호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2-㉢) 및 '조호기구 대여 대장'(서식 2-㉣) 을 작성하도록 함
 - ㉣ 신청서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뒤 보호자의 서명 확인 및 기구사용법과 기사용한 대여물품은 깨끗이 정리·정돈 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도록 보호자에게 교육
 - ㉤ 신청서는 환자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에 첩하여 보관

•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배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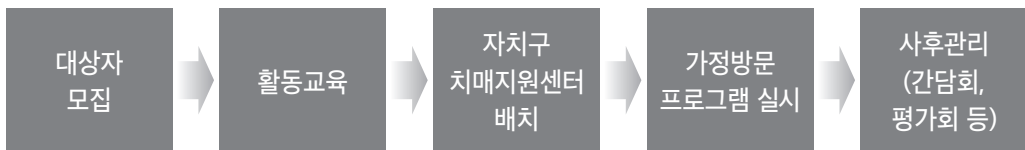
- 목 적 :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수단인 인식표를 무상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배회 증상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배회에 대비
- 대 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와 60세 이상 어르신인 보호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

- 배부기간 : 연중, 월 2회 발급
- 배부기관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비 용 : 무료
- 인식표 배부방법
 보급희망자가 시·군·구 보건소·치매지원센터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 2-⑫),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⑭) 활용> 제출
 ⇒ 자치구치매지원센터(DB 입력) ⇒ 중앙치매센터(고유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 ⇒ 해당 자치구치매지원센터로 인식표 일괄 발송 ⇒ 보급 희망자 배부

• **재가 치매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

- 목 적 : 건강한 노인에게는 치매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 및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에게는 정서적 지지 및 기억증진활동을 도와주기 위함
- 대 상 : 재가 치매노인
- 목 표 : 「가가호호 기억친구」 150명 발굴(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 운영체계→2인 1개조, 월 30시간(주 2~3회, 1일 3시간) 활동
- 추진주체
 ④ 광역치매센터 : 사업 기획 및 총괄, 대상자 교육, 모니터링 등
 ⑤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대상자 모집 및 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내용 : 소양교육 및 활동교육, 가정방문 및 정서지지 요령 등
- 추진 흐름도



※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 **치매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관련 정보를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제공, 홈페이지, 가족모임 및 교실·강연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제공하여 치매 환자가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 및 조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

- 정보 제공 범위

- ㉠ 의료 서비스 정보 : 외래진료, 입원치료, 방문간호, 인지재활, 치매예방 프로그램
- ㉡ 복지 서비스 정보 : 간병보조, 가사보조,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 보호, 간병용품, 목욕 서비스, 환자 이송 서비스, 주택 개조 서비스, 가족모임, 가족교육,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
- ㉢ 의학 정보 : 질병(치매)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후, 유전, 예방 등과 관련정보
- ㉣ 조호기술 정보 : 일상생활 동작(식사, 의복착용, 이동, 배설 등) 조호, 문제 행동(난폭행동, 수면장애, 배회, 의심, 환각, 수면 장애, 기이한 행동 등)관리, 신체증상(욕창, 전도, 경직, 발열) 관리, 작업 요법 등에 관한 정보

• **치매관련 지역자원 연계**

- 목적 : 등록관리 치매환자들이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체 제공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또는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복지기관,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의뢰하고, 의뢰대상 기관과 상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받기 위함

- 주요내용

- ㉠ 다양한 치매 관련 민간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한 민간 자원 유입의 활성화
- ㉡ 시설 및 기관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가족 및 시설 종사자에게 적절한 의료 정보와 복지 자원을 제공
- ㉢ 시설 및 기관을 활용하여 케어 관련 인력에 대한 케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실시
- ㉣ 가정과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케어 기술이나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 ㉤ 다양한 치매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관리

- 연계 방법

- ㉠ 의료기관 연계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수탁병원, 기타 관련 병의원, 보건소 등으로 의뢰하여

.....

- 원인 확진검사, 동반질환 치료, 장기요양병원 입원 진료 등 연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상태에 따른 등록 관리 서비스 실시

⑥ 복지기관 연계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노인복지관련 기관 등으로 연결하여 적정 서비스 이용하도록 연계
- 관련 복지기관에 이용하거나 관리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상태에 따른 등록 관리 서비스 실시
- 시설 및 기관을 활용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실시

⑦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 지역 자활후견기관, 지역노인회, 경찰서, 소방서, 새마을부녀회, 여성교실, 복지센터 등

②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 정기 정밀검진

- 목 적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정밀 검진’(1단계 및 2단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치매 이행시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자 함
- 대 상 : 치매 고위험 노인
- 방 법 : 1년에 1회 시행 원칙, 대상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또는 그 가족)이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등) 제공, 홈페이지 안내,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대 상 : 치매 고위험 노인
- 주요내용
 - ④ 일반적 치매 예방 관련 지식 정보
 - ⑤ 대상 노인 개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기 작성된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 내용 참고)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 목 적 : 치매 고위험군 노인(또는 그 가족)의 치매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

- 대 상 :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연계
- 연계종류 : 당뇨병 고혈압 치료·관리, 금연, 대사관리, 노년기 우울증 치료·관리, 노인 운동(또는 체조) 프로그램 등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치매예방 교실**

- 목 적 : 치매 고위험군 노인(또는 가족)의 치매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자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 판단된 치매 고위험군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의 경우 보조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종류
 -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 비만, 고지혈증 환자 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 우울증 예방교실 프로그램, 노인 운동(또는 체조) 프로그램 등
- 시행 방법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기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시행

• **고위험군 사례관리**

- 목 적 :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치매 고위험군을 전문가가 상담하고, 동시에 자원개발과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고위험군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필요시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조력)
- 사례관리 절차 : 치매환자 사례관리와 동일함

• **재가 치매 고위험 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가가호호 기억친구’**

※ 치매 환자군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

.....

③ 정상 등록관리

• 정기 선별검진

- 목적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선별 검진' 단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치매 이행 시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리
- 대상 : 정상 노인
- 방법 : 2년에 1회 검진 원칙, 대상자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목적 : 정상 노인이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 인쇄물(소책자, 리플렛 등) 제공, 홈페이지 안내, 강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정보 제공 범위
 - ㉔ 일반적 치매 예방 관련 지식 정보
 - ㉕ 대상 노인 개인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기 작성된 '등록관리 기본정보지'(서식 2-②) 내용 참고)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 목적 : 치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정상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연계 하기 위함
 - ※ 정상노인,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

• 치매예방 교실

- 목적 : 정상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체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대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 판단된 정상군
- 시행자 :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지원센터 직원
 - ※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치료사의 경우 보조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종류
 - 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㉕ 비만, 고지혈증 환자대상 예방교실 프로그램

- 우울증 예방교실 프로그램, 노인 운동(또는 체조) 프로그램 등
- 시행 방법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기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시행

④ 등록관리 정보 보관

- 작성 서식 보관 : 개인별로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서식 1-⑩)에 철하여 보관
- DB 입력 : '치매 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 해당 부분 입력

마) 인지건강센터 운영

① 개요

- 목 적 : 치매 예방, 치매 악화 방지,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약물적 활동프로그램을 시행,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통합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함
- 기능 및 역할
 - 기 능 : 비약물적 활동 프로그램 시행 및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부설의 기능적 단위
 - 역 할
 - ㉠ 정상 노인 대상으로 치매 예방·기억증진 활동 프로그램 시행
 - ㉡ 치매 고위험 노인에 대한 치매 예방·기억증진 활동 프로그램 시행
 - ㉢ 경도·중등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시행
 - ㉣ 지역 내 유관 시설 종사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교육 지원(센터장, 팀장 승인 시)
- 운영 원칙
 - 비약물적 활동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훈련된 센터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 연간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단순 주간보호기능을 지양하고, 외래 방문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 적용
 - 주간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대학 등 지역 내 타 노인관련 시설들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운영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30~17: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

- 운영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지원센터의 상황에 맞게 시행
 - 인지건강센터 운영 담당자가(예: 작업치료사,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등) 프로그램 운영
 - ※ 외부강사 초청 강의는 가급적 제한, 필요한 경우는 센터장·팀장 심의 후 결정하여 시행
 - 개인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기 제한(1인당 연 72회 이내)
 - 예) 기본과정48회(주 4회일 경우 3개월, 주 3회 4개월), 추가 과정 24회(주 1회 6개월)
 - 개인 치료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집단 치료프로그램이나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하거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함
 - 다만, 환자의 상태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제공 횟수 조정 가능

② 대상별 세부 운영내용

- 치매 환자
 - 목 적 : 경도(또는 중등도) 치매환자의 인지재활 및 악화방지,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부설 인지건강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도(또는 중등도) 치매 환자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적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등
 - 프로그램 종류
 - ㉓ 치료 형태 : 개인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가정 방문 프로그램
 - ㉔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안정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등

작업 치료

- 정의 :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
- 프로그램 종류 : 컴퓨터 인지재활, 회상치료, 신체기능 증진활동, 기억력 및 현실인식 훈련

원예 치료

- 정의 :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회복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
- 프로그램 종류 : 모종심기, 누름꽃 공예, 수경식물 재배 등

음악 치료

- 정의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사 활동을 통해 언어능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 우울을 감소시켜 사회적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창작 가사 쓰기 등

미술 치료

- 정의 :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공간지각 및 감퇴된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종이접기, 점토공예, 수채화 그리기 등

심리안정치료(스노즐렌)

- 정의 : 오감을 통해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드는 조명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은은한 향기를 맡고, 맛보고 만져보며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경험을 제공 받음으로써 치매의 정신행동증상(불안, 초조, 배회 등)의 감소 및 이완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휴식의 효과
- 프로그램 종류 : 다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 자극 및 이완

운동 치료

- 정의 :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근력과 균형능력 향상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낙상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
- 프로그램 종류 : 실버요가, 단전호흡 및 치유운동

• 치매 고위험군

- 목 적 : 치매 고위험 노인의 치매 이행 예방, 인지기능 향상, 정서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치매 고위험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 프로그램 종류 및 시행방법
 - ㉠ 치료 형태 :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 ㉡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 ㉢ 시행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지원센터의 실정에 맞게 시행

• 정상군

- 목 적 : 선별검진 상 정상으로 판정 받은 노인의 치매 이행 예방, 인지기능 향상, 정서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 대 상 : 등록관리 회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정상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 및 기타 비약물 분야(원예, 음악, 미술 등) 치료사
- 프로그램 종류 및 시행방법
 - ㉠ 치료 형태 :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 ㉡ 치료 종류 : 작업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 비약물적 치료
 - ㉢ 시행 방법 : 프로그램별 시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치매지원센터의 실정에 맞게 시행

바)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 ① 목 적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건강프로그램 제공 등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하기 위함
- ②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및 평가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억키움학교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③ 사업운영 개요
 - 대상 : 각 자치구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 1일 20인 내외
 - 재원 : 민간재원 투입
 - 운영방법
 - 대상자 모집 :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이용자 상태 사정
 - 운영방식 : 오전, 오후 각 10인 내외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독립된 공간 마련 : 이용자 10명 기준 20평(66.11㎡) 이상 공간 확보
 - 제공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비고
기본서비스	인지건강프로그램, 정서활동 등	자치구치매지원센터 내 전문 인력 활용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혈압, 혈당 체크 등	
프로그램 제공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가족모임 등	

4.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적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근거

가)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치매검진 방법 등)

라)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치매 문제로 인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조호비용은 향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가정이 독립적으로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간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나)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조기치료의 지연을 예방하여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따라서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추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나. 사업 내용

1) 치매치료비 지원

가) 사업 개요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나) 대상자 선정 기준(※다음 기준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질병’(표 11-⑦)의 상병 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nticholinesterase)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를 성분으로하는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의 약 또는 항혈소판 제제 등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⑨)의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2017. 2. 16일 기준 적용)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120%)	1,624	2,766	3,579	4,391	5,203	6,016	6,8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 7,641천원)
-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 ※ '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 자(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자 또한 매년 새롭게 산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후 지원유지

다) 대상자 선정 방법

① 선정 방법

- 보건소(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55.12.31 이전 출생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 반드시 보건소(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 (통계청<kostat.go.kr> → (최상단)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 약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매 치료약 목록’ (표 11-⑧),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 (표 11-⑨)으로 확인하되, 약품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드럭인포 (www.druginfo.co.kr)’ 통합검색 활용을 통해 ‘성분명’을 재확인하여 활용하도록 함
- 소득기준

㉔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1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61,029 (65,026)	104,130 (110,951)	143,052 (152,422)	165,762 (176,619)	197,177 (210,092)	226,065 (240,872)	258,317 (275,237)	295,815 (315,191)	337,035 (359,111)
지역 가입자	43,944 (46,822)	113,972 (121,437)	161,510 (172,089)	185,403 (197,547)	218,155 (232,444)	247,971 (264,213)	278,115 (296,332)	312,864 (333,357)	349,667 (372,57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예) 지원 신청을 한 치매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 원수는 5인으로 산정
- ▶ 본인납부금은 납부액(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직전 산정된 건강보험표 점수로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②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에 확인
-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 대상자선정(‘국가 유공자증’ 또는 ‘보훈 대상자확인원’을 통해 신분확인)에서 제외 처리
 -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치매치료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 ③ 선정 방법중복 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의 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정산, 단,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 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정산

라) 대상자 선정기간 및 통보

- ① 관할 보건소(치매지원센터)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 통보 방법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미선정 결과 통보서’(서식 1-14)로 하되,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e-메일 등 이용 가능
- ② 단, 신청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마) 대상자 지원 자격 관리

- ① '16년도 12월 이전에 선정된 대상자로 '17년도에 연속해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속 지원
 - 단, '16년도 3월 이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7년 1월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 처리
 -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각 보건소별 예탁금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탁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 ② 대상자 전출입 관련, 각 보건소에는 매월 5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치매대상자관리 » 치매대상자
조회)에서 전입자를 파악하여 전출지 보건소에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사본
송부 요청

- 전입지 보건소는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전입대상자를 계속 지원하며,
지원자격 확인은 **전입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전출지 보건소는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를 전입지 보건소에 송부
 - 단, 전출지 보건소에서 소득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 심사 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각 보건소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 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 ③ 사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전산으로 퇴록 처리, 보건소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명단에서 퇴록 처리함
- ④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거소 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확인되면 지원 가능
- ⑤ 배정된 예산보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10% 이내로 대기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⑥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2월 28일부로 정리하고, 3월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함

바) 지원 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
(약제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 ① 약제비용의 경우 동 처방약에 주성분이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인 치매 치료약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가 1개 이상 포함
되거나,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 받고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⑧)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표 11-⑨)의 약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②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사) 지원 수준

- ①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예) 3개월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②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단, 이 경우에도 국비지원 예산액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아) 지원 절차

① 대상자 신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치매지원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⑬)

- 의료급여증(의료수급권자의 경우) 또는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본

- 치매진단결과서(질병분류코드가 치매로 명시 된 처방전도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 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한 자(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 단,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으로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확인

- 치매처방전 사본

-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 시 진료비 영수증

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비용 지급

- 신청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원범위 내의 치매치료비 비용을 지급

- 치료비 지급 통장은 본인 명의만 가능

- (단, 사망 시 대리인(가족)이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가능(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통장예금주와 치매환자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등본 첨부)

③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선정 대상자는 신청서 외 별도 청구 절차 불필요
-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관리

2)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가) 사업 개요

치매 원인확진검사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동 사업 신청대상자 중 해당 지역주민으로 다음의 ㉠또는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다음의 ㄱ~ㄷ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ㄱ. 만 60세 이상인 자

ㄴ.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ㄷ.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인 자 (지원 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

['16년 원인확진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61,029 (65,026)	104,130 (110,951)	143,052 (152,422)	165,762 (176,619)	197,177 (210,092)	226,065 (240,872)	258,317 (275,237)	295,815 (315,191)	337,035 (359,111)
지역 가입자	43,944 (46,822)	113,972 (121,437)	161,510 (172,089)	185,403 (197,547)	218,155 (232,444)	247,971 (264,213)	278,115 (296,332)	312,864 (333,357)	349,667 (372,57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624	2,766	3,579	4,391	5,203	6,016	6,8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가구 : 7,641천원)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 만 60세 미만의 자가 ㉡의 ㉢~㉣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기준은 유지(신규는 ㉡, ㉢의 요건 충족)

②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에 확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인확진 검사비 대상자선정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확인원'을 통해 신분확인)에서 제외 처리
 -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원인확진 검사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다) 지원 범위

① 지원 검사

- 「치매조기검진 확진검사 항목」 표에 열거된 검사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치매조기 확진검사 항목」에 열거된 검사 이외의 검사가 원인확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센터장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음

②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비용

-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 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비 등 정액 지원(상한 8만원)
- 감별검사 : 치매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며, 지역사회 통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치매조기검진 확진검사 지원항목]

검 사 항 목		
○ CBC - 적혈구수(RBC) - 백혈구수(WBC) - 혈소판수(PLT) - 헤마토크리트(Hct) - 혈색소(Hb)	○ 갑상선기능검사(2종) - 갑상선자극호르몬(TSH) - 유리싸이로신(Free T4)	○ 요산 ○ 혈당정량 ○ 총 콜레스테롤 ○ 매독(VDRL) ○ VitB12 ○ Folate (엽산)
○ 신기능검사(2종) - 혈중요소질소(BUN) - 크레아티닌	○ 간기능검사(6종) - 총단백정량 - 총빌리루빈 - SGOT(AST) - SGPT(ALT) - 알부민 - 알칼리포스파타제(ALP)	○ EKG ○ CPA ○ 뇌 MRI 촬영 (뇌 CT 촬영) ○ 영상 판독료 ○ PACS 사용료 ○ 진찰료
○ 전해질 검사(5종) - 소듐(Na) - 포타슘(K) - 염소(Cl) - 인(P) - 총 칼슘(Total Ca)	○ 요검사(7종까지)	

라) 지원 절차

- ①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시행대상자 및 시행검사 결정
- ② 치매지원센터 수탁(협력) 병원에서 선 검사 시행
 - 수탁병원 이외에도 지원범위 기준 내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확진 검사 병원을 확대할 수 있음(반드시 업무협의를 문서화해야 함)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2차 병원에서 의뢰를 해야 3차병원 진료가 가능하므로, 수탁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 2차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뢰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것
 - 분기별로 수탁병원(또는 기타 확진검사 시행 병원)에서 검사비 내역서를 치매지원센터로 제출하여 비용 신청

※ 구비서류

- ㉠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서식 1-㉠)
-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영수증 사본
- ㉢ 확진검진 의뢰서
- ㉣ 검사내역 및 결과보고서
- ㉤ 비용청구서

.....

5.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가.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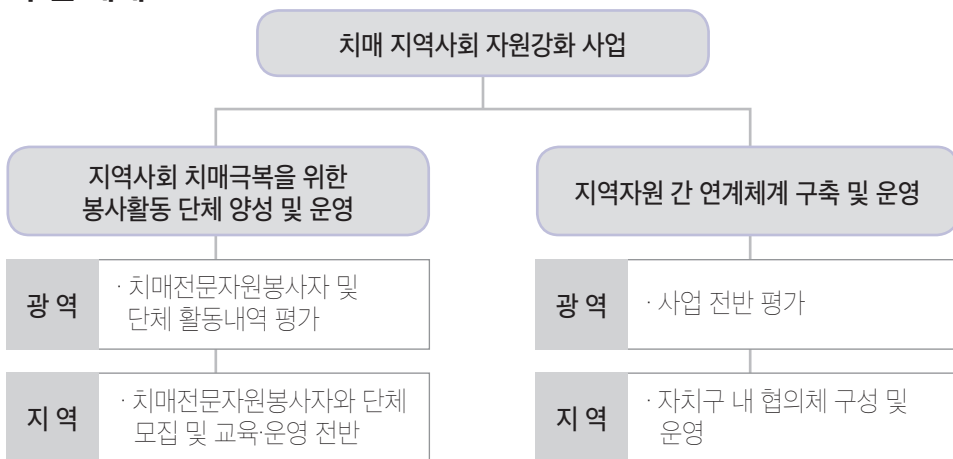
1) 목적

- 가) 치매관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나)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및 평가

2) 내용

- 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 나) 지역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3) 추진 체계



나. 사업 내용

1)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 가) 목적 :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확대를 통한 치매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 내용

①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및 단체 활동내역 평가(별도 보고서 제출)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과 단체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

.....

- ② 활동내용(치매전문자원봉사자 및 치매극복봉사모임)
 - 가정방문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동행서비스
 -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정보 제공
 - 인지건강센터 내 인지건강프로그램(비약물 프로그램) 보조
 - 가정 내 인지건강프로그램(비약물 프로그램) 진행
- ③ 치매극복 단체 운영 및 관리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20명 이상, 활동인원 30명 이상 운영 관리
 - 치매극복봉사모임 :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 ※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 치매극복단체 : 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지정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치매극복 기관, 기업, 도서관)
 - 치매극복선도학교 : 지정신청서를 제출 후 지정번호 부여받은 학교
(치매극복선도 대학·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 ※ 모집 인원 및 활동 시간 내용 입력
 -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DB) : 치매전문자원봉사자만 해당
 - ※ 구비서류 : 봉사모임신청서, 봉사활동보고서, 모임명부, 교육사진, 협약서 등
- ④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교육
 - 치매 기본교육(치매전문자원봉사모임) : 봉사단 활동영역에 필요한 필수 이론 교육 5시간 시행(치매관리사업, 치매 전문자원 봉사단과 사례관리, 자원봉사활동, 치매환자조호방법, 지역사회자원연계 각 1시간씩 교육)
 - 치매극복단체 및 치매극복선도학교 : 기억친구 교육 진행
 - 교육 시행 시기 : 모집 시 진행
 - 교육 시행 입력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시행→행사명 ‘치매전문 자원 봉사단 치매 기본교육’으로 내용 입력
 - 치매 기본 교육 후 보수 교육 혹은 간담회, 평가회 등은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실시

다) 운영 방법 :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매뉴얼 및 치매극복 단체 지침 활용

2)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가) 지원 대상 : 지역 내 치매관련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나) 지원 내용 : 인지건강센터에서 시행 중인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지원 방법 : 지역 내 유관 시설 종사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교육 지원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승인 시

3) 정보교류, 치매환자 연계(온·오프라인을 통한 자원연계)

가) 온·오프라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자원 연계 및 정보 업데이트 지원

①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② 치매 유관 시설 : 해당 시설 정보 업데이트 지원

나) 연계 내용 및 방법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및 온라인 DB 활용

① 각 자치구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유관 시설 종사자의 홈페이지 및 DB 활용

② 서울시 내 치매 유관 자원 정보(시설 정보, 인력 정보, 서비스 정보 등)

6. 치매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가. 사업 개요

1) 목적

온라인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 참여자·시설 종사자·치매환자가족 및 일반 시민들에게 치매관련 지식, 시설정보, 인력 및 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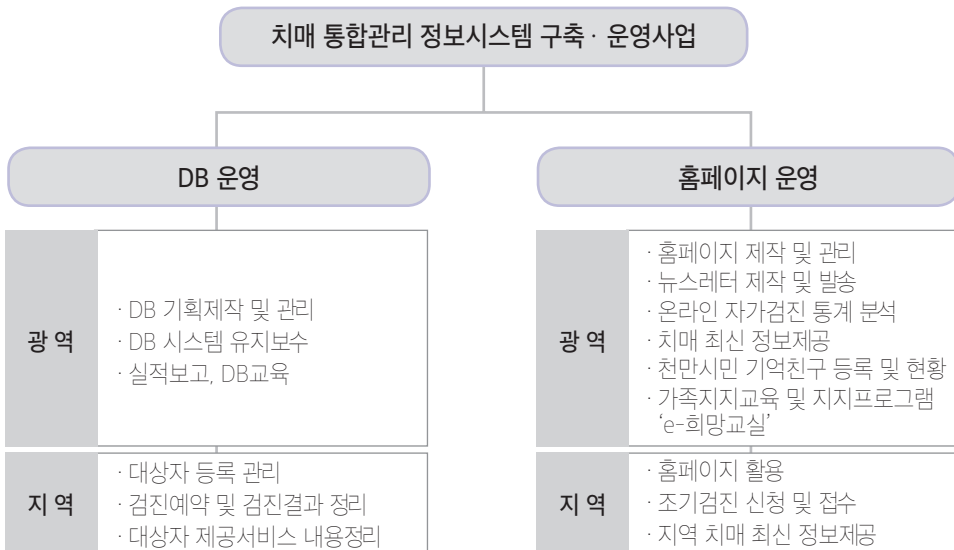
2) 내용

가) 치매통합관리 홈페이지 운영

서울특별시치매센터 홈페이지(www.seouldementia.or.kr, www.seouldementia.kr)와 25개 자치구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동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온라인 DB시스템 운영

3) 추진 체계



.....

나. 사업 내용

1)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목적

서울특별시치매센터와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의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홍보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단위 및 관련 자원 간 연계 강화 및 대시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② 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홈페이지 기획·제작 및 유지 관리
- 다양한 치매관련 콘텐츠 구축 및 정기적 자료 업데이트
 - ㉠ 뉴스레터 발송 및 소식지, 소책자 및 연구자료, 동영상 등 게시
 - ㉡ 천만시민 기억친구 웹 페이지 신설, 치매관련시설 Mapping
 - ㉢ 웹기반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웹 페이지 구축
 - ㉣ 사례관리 및 기억키움학교 DB 운영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치매 자가검진 이용자 통계 분석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사업 안내 및 홍보
- 공지사항 및 일정, 치매관련뉴스 등 광역치매센터와 연동 자동 업데이트
- 조기검진 신청 접수 및 시행

③ 홈페이지 활용 및 기대효과

- 치매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
- 치매관련 온라인 상담(치매종합상담센터) 기능
- 치매환자가족 상호교류의 장 및 치매관련 최신 자료 및 지식 정보제공
- 서울특별시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간의 상호 정보전달 기능
- 온라인 자가검진 활성화로 치매 조기검진 관심 유도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운영

① 목 적

서울시 치매 조기검진사업 및 등록 관리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DB화하여 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평가,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함

② 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DB 기획, 입력양식 제작 및 관리
- DB 사용법 교육, 서울시 전체 자료 평가 및 분석
- DB 유지보수 및 실시간 운영 관리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 DB 자료 입력(조기검진, 예방 등록관리, 지역자원강화 사업 내용)
- 해당 자치구 자료평가, 분석, 보고

③ DB 주요 내용

- 검진(등록) 대상자 기본 입력사항(인적사항, 치매위험요인, 질병력 등)
- 검진 단계별 예약 및 결과, 향후 등록일정 등 진행 상황
- 원인확진 비용지원 및 치료비 지원 내역
- 예방등록관리 서비스 세부 내용(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포함)
- 자치구별 등록 현황, 실적 및 통계 자료, 대상자이관
- 배회인식표 신청 및 결과조회, 사례관리 및 기억키움학교 운영 관련

※ DB 자료 입력 및 수정요청은 월별 마감

- 수정은 익월 5일까지 요청 가능
-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접수하여 수정가능
- * 합당한 사유: 월말이 공휴일인 경우, 사망 통보 지연, 치료비 및 검사비, 약제비 지급 지연 등 업무상 사유가 명확한 경우

④ DB 활용 기대효과

-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진 및 등록관리 수행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 평가 및 실적 보고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의 치매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자 통계 데이터 확보와 효율적인 사례관리

.....

7.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가. 사업별 실적보고

1) 시기별 보고 종류

가) 년 1회 보고 : 예산 정산(2018년 1월 31일 이내에 제출)

교부액				집행액				잔액			
계	인건비	복지수당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계	인건비	복지수당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계	인건비	복지수당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 등)

운영비: 시비50%, 구비50%, 복지수당: 시비100%, ※ 시비만 기재, 엑셀파일로 보고

나) 반기 보고 : 인력현황(2017년 7월 10일 이내, 2018년 1월 10일 이내 제출)

직종	성명	상근/비상근	업무내용*	치매관련 전문교육 이수	전문교육 과정명**
					자격증
의사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간호사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간호사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사회복지사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작업치료사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기타 ()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기타 ()		상근/비상근		예/아니오	

다) 분기 보고 : 실적 총괄

사업구분		사업실적		비고
		건(횟수)	명(인원)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교육 프로그램 시행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물 관리 실적			
	캠페인(메모리 데이) 진행 횟수			
	설치물을 이용한 옥외홍보 횟수			
	언론 홍보 횟수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모집현황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치매인식도 조사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단계별 검진			
	치매환자 발견 수			
치매 예방 등록 관리 사업	등록관리 서비스			
	치매가족모임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치매 지역 자원 강화 사업	자원봉사자 관리			
	치매극복 봉사모임			
	치매극복 단체 양성(기관, 기업, 도서관 등)			
	사례관리 건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건수			

2) 사업별 세부 실적보고 예시

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① 교육 프로그램 시행(강연회 등)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지역사회 주민 대상						
시설종사자 대상						
치매가족 대상						
합 계						

※ 교육실적 기준 : 교육시간 50분이상, 교육인원 5명이상, 교육 결과보고서(참여자 서명, 사진 포함) 있는 경우

.....

②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물 관리 실적

구분	공지사항	센터활동보고	사진첩
건 수			
합 계			

③ 캠페인 진행 횟수(메모리 데이)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메모리 데이						

④ 옥외홍보 횟수

구분	홍보 횟수
전 광 판	
배너(현수막)	
버스, 택시 등	
기타 (IPTV 줄광고, 포스터 게시 등)	
합 계	

⑤ 언론홍보 횟수

번호	매체명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목
1	중앙언론			
2	인터넷 신문			
3	그 외 지역 언론 등			
합 계		위 보도 방법에 대한 보도 건수를 모두 기재		

※ 중앙언론은 MBC, KBS,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 그 외 지역 언론은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잡지 등

⑥ 천만시민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모집현황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명 (인원)	명 (인원)	명 (인원)
기억친구			
기억친구 리더			

⑦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및 치매환자 실태 조사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명 (인원)	명 (인원)	명 (인원)
이용만족도 조사			
치매환자 실태 조사			

.....

나) 치매 조기 검진 사업

① 단계별 검진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선별검진(비정기검진 제외)						
정밀검진 1단계						
정밀검진 2단계						
원인확진						

② 치매환자 발견 수

선별검진을 통한 등록 (명)	기치매 (명)	외부진단 (명)

다) 치매 예방 등록 관리 사업

① 등록관리 서비스

사업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건 (횟수)	명 (인원)	건 (횟수)	명 (인원)	
상담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치매환자 인식표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연계					

② 치매가족모임

번호	일시	주제	참석인원 (명)	장소

③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건(횟수)													
명(인원)													

.....

④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구분		목표			실적		
대상	구분	횟수(회)	연인원(명)	실인원(명)	횟수(회)	연인원(명)	실인원(명)
치매	작업						
	원예						
	미술						
	음악						
	인정요법						
	기타(구체적기록)						
고위험	작업						
	원예						
	미술						
	음악						
	기타(구체적기록)						
정상	작업						
	원예						
	미술						
	음악						
	기타(구체적기록)						

라)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①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

구분	목표(건)	실적(건)	달성률(%)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신규등록인원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치매극복 봉사모임 수 (5인 이상 6회 이상 활동 모임)			
치매극복 선도단체 수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 등)			
치매극복선도학교 수			

② 사례관리

구분	목표(건)	달성(건)
치매환자 사례관리 건수		

.....

③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구분	목표(명)	달성(건)
가가호호 기억친구		

④ 특화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기억키움학교			
자치구 특화사업			

마) 직원의 교육 참여

교육 주최		교육명	교육횟수(건)	참여인원(명)	교육시간(분)	비고
외부 교육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예)	간호사직군 교육(예)	1	3	50	
	복지부(예)	경력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예)	1	2	60	
내부 교육	000구 치매지원센터(예)	행정 및 회계 교육(예)				

※ 외부교육 : 외부에서 치매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

(포함 : 세미나, 학회, 포럼, 심포지엄 등)

(제외 : 간담회, 평가회, 워크숍, 신규직원 교육, 치매전문인력 교육 중 신규자 과정)

※ 내부교육 : 자치구치매지원센터에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교육시간 50분이상, 교육인원 5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고란에 강사를 반드시 입력)

나. 사업별 성과평가

1) 평가 목표

- 가) 자치구 치매관리사업의 사업성과 분석
- 나)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

2) 평가 시기

- 가) 2017년 사업성과 평가(정량평가) : 2017. 11월 중
- 나) 치매관리사업 연 평가(정성평가) : 2018. 1월 중

3) 평가 내용

- 가)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의 적절성
- 나) 세부사업별 달성도 등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4) 평가 방법

정성적·정량적 기준에 의거한 성과평가지표 활용

5) 2017년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평가지표(2016. 11. 1. ~ 2017. 10. 31.)

항목	분야	성과지표 내용	성과목표	배점
사업 수행 체계구축	사업계획서	지역특성 진단, 사업계획 및 목표수립, 사업내용, 예산분배, 인력배치 적절성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미흡시 1건당 1점 감점)	5
	사업실행 인프라 구축	직원 전문성 증진 교육 횟수	내부교육 3회 (미시행 1회당 1점 감점)	3
			외부교육 6회 (미시행 1회당 1점 감점)	3
		회의 및 간담회 참여	센터장 간담회 2회 (미참석 1회당 1점 감점)	2
			팀장 간담회 4회 (미참석 1회당 1점 감점)	4
사업 DB 입력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DB 입력 충실도	3	5	
사업 수행 실적	인식개선 사업	대상자별 교육 참여자 수	일반/학생/주민교육 3,8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치매가족교육 15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시설종사자교육 15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캠페인, 옥외 및 언론홍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억친구 및 리더 모집 실적	캠페인(메모리 데이) 2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3
			언론홍보 6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3
			홈페이지 게시물 6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3
			기억친구리더가 양성한 기억친구 수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기억친구 및 리더 모집 1,0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3		
	조기검진 사업	선별 검진, 정밀검진	선별 검진 4,5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5
			치매고위험 재검진자 정밀검진 26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5
	예방등록 사업	상담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 5,0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5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2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치매가족모임 운영	희망다이어리 또는 헤아림 2회기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희망메신저 3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e-희망교실 수료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치매상태 평가지		치매가족 프로그램 운영 충실도	3	
		치매상태 평가지 입력 50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3	
인지건강센터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연인원 11,00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6		
자원강화 사업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실제 봉사 활동자, 치매극복 봉사 모임 수 (1모임 : 5인 이상 6회 이상 활동)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2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실제 봉사활동 신규 및 누적 30명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치매극복 봉사모임 신규 및 누적 2모임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치매극복 단체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 치매극복 선도학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치매극복 단체 1개 이상 (미달성 0.5점 감점)	2	
		치매극복 선도학교 1개 이상 (미달성 0.5점 감점)	2	
	가자호호 기억친구, 기억키움학교, 자치구 특화사업(자율적 운영)	특화사업 운영 2개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2	
	치매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사례관리 20건 이상 (미달성 1점 감점)	5	
총 점				100

※ 성과평가 결과 차기년도 예산지원 시 반영

.....

6) 자치구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

2017년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구 치매지원센터

I.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1. 사업실행계획의 타당성

- 1)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 지역특성 및 배경
 - (2) 사업계획 및 목표
- 2) 사업내용, 대상자, 목표량, 기대효과
- 3) 예산정산 및 인력현황
- 4) 지역사회 사업연계 및 자원 활용 계획

2. 사업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도

- 1) 직원 전문성 증진 : 내·외부 교육, 센터장 /팀장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 참여
- 2) 사업 DB 입력 : 제출 내용 없음(DB에서 확인)

II. 사업수행 실적

1.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1) 교육 : 대상별 교육 (일반/학생/주민, 치매가족, 시설종사자, 기억친구 리더 등), 치매 예방 교육 실적(치매예방운동법 포함)
- 2) 홍보 : 캠페인(메모리 데이) 횟수, 설치물 이용 홍보건수, 언론홍보 횟수, 홈페이지 게시물 실적,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 리더 모집 현황, 치매예방수칙 3·3·3 간행물 및 소책자 발간 현황(인쇄물 사진 및 영수증)

2. 치매 조기검진 사업 : 제출 내용 없음(DB에서 확인)

3. 치매 예방등록관리 사업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및 교육실적, 치매가족모임 운영 결과보고서, 특화사업 운영 보고서 (예 : 기억키움학교,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선도학교 등)

4. 치매 지역자원강화 사업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외부기관 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치매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양성 및 운영

III. 사업수행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Ⅲ 치매관리사업 인사·복무와 예산·회계 지침

1. 인사·복무 지침
2. 예산·회계 지침
3. 행정 서식

1. 인사·복무 지침

가. 근거

- 1) 근로기준법(인사관리 전반)
-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초과 근무 등 근무형태)

나. 인사

1) 채용 등 인사관리

가) 공개 채용 원칙

- ① 센터 홈페이지·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7일 이상 공고
- ② 채용 구비서류
 - 이력서, 각 해당 면허 및 자격증 확인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 단, 원본 발급이 불가능할 때에는(이전 근무지의 폐업) 건강보험 가입 이력증명서 등 대체서류 가능

나) 인사위원회 운영

- ① 채용 및 직원의 계약위반 행위 등(불성실 등 해고사유) 문제 발생 시 위원장 포함 3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인사 기록 : 개인별 인사 기록카드 작성·보관

- 가) 경력 해당 원본서류, 해당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종 수당 근거 서류 등 첨부
- 나) 인사기록 정리 및 변경(가족관계 변경 등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반영 및 정리)
- 다) 직원 근무 평가표 필요시 작성·보관(행정서식 5)

3) 기타 제반사항

- 가)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각 해당 자치구)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나) 수탁기관 변경 등을 포함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 다)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개최 및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라) 센터의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야 함
- 마) 센터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직원 등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징계 사유될 수 있음)

다. 복 무

1)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근무기간 중 치매센터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2) 종사자 정년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나) 정년 상한은 만 60세임

다) 정년에 이른 날(종사자 출생일 기준)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함

3) 근무 상황관리

가) 개인별 근무 상황부 반드시 작성

① 대체휴무 및 반일휴가 사용시에도 휴무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

- 기재 종류 : 연차휴가, 반일휴가, 조퇴, 외출, 공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 연 60일 범위에서 사용

② 지문인식기 사용 원칙

- 원본 데이터 출력물에 오류 관련사항 기재 가능하나 별도의 엑셀자료로 다운받아 수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금지

나) 출장 관리

① 출장 인정시간은 근무시간내만 인정, 출장 복명서는 실 근무자가 개별 작성 보고 함 단, 캠페인 행사 등 여러 명이 출장 시는 사업담당자가 일괄 작성보고

② 업무 시간에 외부 기관의 개인 강의, 수당 지급되는 심사 등의 출장은 금지

- 개인 연차휴가, 반일휴가, 외출 등 활용

.....

다)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초과) 근무로 인정, 최대 월 20시간이내
- ② 시간외 근무는 1시간을 초과할때부터 인정, 1일 시간외 최대 4시간 인정, 월 합산 시간으로 수당 지급

라) 휴가 등 주요사항

- ①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기준에 따름
- ② 출산 휴가 : 2개월 유급출산 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 가능)
- ③ 육아 휴직
 - 근 거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조
 - 센터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

[휴가 등 규정]

A. 연차휴가

-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 ㉢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제 ㉠항의 규정에서 휴직, 대기 및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 ㉨ 제 ㉧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재 통보한다.

- ① 제 ⑥항, 제 ①항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휴가일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B. 병가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이유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병가를 준다. 병가일수는 년 통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타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할 때
- ②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C. 특별휴가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② 제 ①항의 휴가를 실시하는 데에 여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원격지일 경우)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③ 제 ①항의 특별휴가는 년 통산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D.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가를 줄 수 있다.

구분	기간	비고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증빙 서류 첨부
일기, 전염병 등으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당국이 지시하거나 증명한 기간	
예비군, 민방위 기타 병무 소집된 때	그 소집된 기간	
여직원의 산전후 휴가	90일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해당 일	
직무와 관련된 교육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가 인정하였을 때	그 인정한 기간	

- ※ 휴가규정 기준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병가, 특별휴가, 공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산·회계 지침

가. 운영비 지원

1) 근거

가) 비용의 지원

- ①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나) 민간위탁 사무의 위임

-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
- ②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예산 편성

가) 예산 구성(편성 비율)

- 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사업비(국비 50%, 시비 50%) ※법정 재원 분담율 국고 70% : 시비 30%
 - 복지수당(시비 100%)
- ②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사업비(시비 50%, 구비 50%)
 - 복지수당(시비 100%)

※ 2017년 예산 배정 기준(단, 센터운영비 중 사업비만 해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 전년도 예산 반납액에 따라 차등지원

나) 편성 기준

- ①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② 주요내용
 - 사업예산서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소요예산을 기준단가에 의거 세부 산출 작성
 - 인건비·사업비·운영비·복지수당 등으로 편성, 소요 예산별로 재원 명기
 - 예산 분담비율은 각 재원 분담율로 하되, 추가 소요될 예산은 자치구의 구비 확보 편성 권장
 - 인건비와 연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예산범위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당초 계획 인력과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집행이 제한되어야 함)

다) 세출예산 과목 구분(안)

단위(회계)·세부사업	2017년 예산과목(편성목) 및 내역	금액(천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운영 정책사업	천원	
정책기획사업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강사료 - 교육사업 소모품 제작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 교육사업 소모품 제작비 ○ 보수 - 기본급 - 수당 - 퇴직적립금 - 4대보험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사무용 종이류 - 임차료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류비 여비 ○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 예산 집행

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나) 책임 : 직영 → 시, 구청장 / 위탁 → 수탁기관장(수탁기관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다) 관리감독 : 시와 자치구의 해당 소관부서

라) 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지하며 세출예산 과목 중 타당성 없는 예비비 편성 불가함
- ② 월별 사업 잔액은 다음 월로 이행하여 지출하되, 당해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함
- ③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의거 집행함

A. 회계 부문

㉠ 회계연도 : 1.1~12.31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

㉡ 회계관리

- 시스템 : 서울시보조금관리 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 회계업무 담당자는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장, 팀장,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예산집행

- 모든 예산집행은 내부결재 또는 지출품의 후 집행함
- 지출문서(물품구매) 철하는 순서

㉠ 품의서 → ㉡ 산출기초조사서 → ㉢ 견적서 2부이상(타견적서 포함)
㉣ 결의서 → ㉤ 영수증 → ㉥ 물품검수조사서(10만원이상 물품구매시)

- 집행건별 지출원인행위서(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체 확인증 및 영수증 첨부. 이때 서명란에는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명을 정자체로 서명하고,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전표 붙임 자료 하단에 사용자명을 자필로 기재함
- 각종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견적서 포함) 첨부함
- 사업 재원별 1계좌 개설하고 지출 이행시기(납입일)가 도래 되거나 대금청구시 채주에게 계좌이체하거나 고지서 납부함
- ※ 열감지 영수증은 복사하여 원본과 같이 첨부

㉣ 집행금지 항목

- 타 복지시설, 협력기관 이외에 해당 서울시(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경조사 및 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화분이나 화환 보내는 관행은 일체 금지함
- 물품 구매시 분할 발주 금지
- 개인 교육, 출장(외부강의, 심의 등) 시 출장비 지급 불가 → 개인 연가 활용

B. 물품 관리 부문

- ㉔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서울시장(관할 구청장)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 있음
- ㉕ 업무에 필요한 물품은 예산 범위 안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연 1회 서울시(관할 자치구)에 재물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㉖ 센터장은 모든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를 하여야 하며, 품명·수량·구매단가·구매처·구매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㉗ 1품목 당 300만 원 이상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시 또는 자치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함 (연초 편성된 자산취득비 외 자산취득비로 전용불가)
- ㉘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및 자치구 기준에 준함

4) 예산의 변경 및 전용

가) 예산의 변경

- ① 변경범위 : 동일 세부 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 변경사용
- ② 변경절차 : 기관장의 내부 방침과 각 소관부서에 보고·승인 후 변경사용 가능

나) 예산의 전용

- ① 전용범위 : 단위사업간 편성 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 전용가능 예) 사업비, 기타 운영비 등 예산 편성목 간 전용가능
- ②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하거나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 복지수당은 전용 불가
- ③ 전용절차 : 항간 이상 전용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각 소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지침

가) 인건비

① 기본급

- 센터장 : 주 2일 근무기준 월 2,116,000원을 지급
※ 지원의사의 경우 그 센터장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센터의 의사관련 인건비는 월 최대 2,116,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센터 직원 : 종사자별 기준에 의해 기본급 지급

.....

- 그 외 종사자 인건비 세부 지급기준
 -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17년 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1,1-2>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 인력에게만 지급함
 -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7년 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표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산후대체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근무 년수(호봉) 산정
 - 센터의 근무 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
 - 근무경력 인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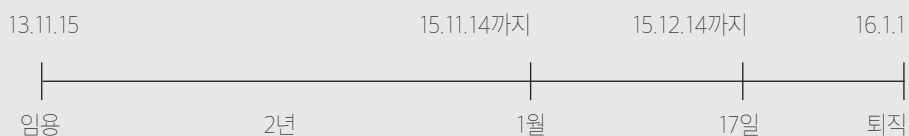
A. 근무경력 인정범위

- ㉠ 10할 인정 : 중앙치매센터, 타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치매상담(지원)센터,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 제외)
- ㉡ 8할 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요양·복지시설 근무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 6할 인정 : 면허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 팀원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지원센터) 근무로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격자로 재임용 가능,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인정

B. 경력기간 계산방법

-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단, 경력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
-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 여러 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각 경력을 기관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C. 경력 산정 예시



- 2월 8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8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8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8일 이전의 직종전환 및 호봉상승 : 변동된 계급·호봉 월봉금액
- 2월 8일 이후의 직종전환 및 호봉상승 : 변동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금액

-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 초과 근무를 한 종사자
 - 시간외 근무시 센터장의 사전승인 필요(사전·사후관리 철저)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지급 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활동시간 산정하여 지급
- **휴일근무수당 : 대체휴무 제공**

③ 보수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급여와 수당의 산정은 월액 산정, 1개월에서 부족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정

④ 기타 제반 사항

-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함

A. 종사자 보험

- ① 사업자 등록을 한 치매지원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 ②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B. 퇴직금의 적립

- ①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 ③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4항에 의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적립함
- ④ 산전후 휴가 시 퇴직적립금 기준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C. 퇴직금의 지급

- ①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포함시켜 집행
- ② 퇴직적립금을 치매지원센터 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 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요청에 의거 지급)
- ③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

⑤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 천원 / 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33	1,828	1,766	1,705
2호봉	2,024	1,886	1,828	1,771
3호봉	2,120	2,007	1,914	1,820
4호봉	2,218	2,159	2,004	1,850
5호봉	2,320	2,256	2,098	1,941
6호봉	2,425	2,360	2,196	2,032
7호봉	2,532	2,465	2,296	2,217
8호봉	2,640	2,579	2,398	2,220
9호봉	2,750	2,683	2,496	2,308
10호봉	2,856	2,785	2,590	2,396
11호봉	2,959	2,886	2,683	2,480
12호봉	3,042	2,965	2,757	2,549
13호봉	3,119	3,042	2,828	2,615
14호봉	3,192	3,113	2,895	2,678
15호봉	3,263	3,184	2,960	2,737
16호봉	3,329	3,245	3,020	2,795
17호봉	3,393	3,309	3,080	2,850
18호봉	3,453	3,368	3,135	2,903
19호봉	3,508	3,422	3,188	2,954
20호봉 이상	3,562	3,475	3,238	3,001

※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

⑥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 천원 / 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비고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40 기타 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 아래 설명 참조	
(3) 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팀장 팀원	정액 70 정액 60 정액 50		
(4)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시간당 통상임금* x1.5	연장 근로 다음달 10일 이내 활동시간 산정하여 지급	
(5)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 (보건소의 승인 후 대체휴무 활용)

* 시간당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표 II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단,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휴일근무 보상은 대체휴무로 하며, 보건소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가족수당 지급 기준

1. 센터 사업수행인력(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함
2.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사무국장, 팀장, 팀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참조

나) 운영비

① 여비

• 국내 여비

- 관내출장 : 4시간 이상 1일/20,000원 산정(월 10일 이내로 지급을 제한함)

※ 관용차량 사용시는 4시간이상 1일/10,000원 산정

- 관외출장 : 여비(1일 20,000원), 교통비(실비), 숙박비(1야당 40,000원),
식비(1식 7,000원)

※ 서울시 외 출장해당 / 단, 숙박 및 식사 제공 받을시는 여비, 교통비만 지급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수수료, 등기료 등

③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다) 사업비

①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 활동기본법’ 및 각 자치구 해당 조례를 따름.

비용 지급은 불가하나 자원봉사기간 중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② 자문위원 및 지도강사 수당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③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분	내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 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영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④ 전문 강사료 등 지급기준

A. 기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	대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비고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일반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000 이내	1,000,000 이내	

③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㉔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 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㉕ 여비 산정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⑤ 행사운영비 등 기준

- 간식비
- 비정기적인 행사시 : 1인 3,000원 이하
-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시 : 1인 1,000원이하
- 간담회 등 업무추진 시 식사비 1인 7,000원 산정

라) 결산 보고

- ① 센터장은 2018. 1. 15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각 소관 부서로 제출
- ② 자치구 보건소는 2018. 1. 31까지 서울시에 제출

나. 기타 운영 지침

1) 화재보험 가입 의무,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가)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나) 내용

- ① 소방시설법에 의거 각 센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② 각 센터는 소방시설법 제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별표2 제9호 노유자 시설 중 가목의 노인관련 비슷한 시설)로 각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자치구)로 제출하여야 함

.....

2) 문서 관리

가)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기록물 관리 조례,
그 외 제반사항은 직영(또는 위탁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름

나) 내용 : 각 센터는 사업추진,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와 장부는 전자문서나 종이
문서로 비치·보존하여야 함

구분	주요 기록물	보관·비치기간	비고
보고서철 및 수발문서	· 년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 각 세부사업별 계획서 및 평가서 등 ·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 문서철	3년	
인사 관리 기록	·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 직원 채용관련 서류 등 직원기록 일체	준영구	
센터 운영 관리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5년	
	· 센터 운영일지 및 관계서류	3년	
예산 및 물품관련 서류	· 각종 지출 및 회계서류 일체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단, 회계문서는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됨 (영수증 등)
센터 등록 대상자 관리	· 의료비 지원 관련철	5년	DB입력 철저
	· 대상자 개별 기록물 (생활상태, 생활·작업훈련내용에 관한 서류 등)	3년	
	· 선별기록검사지 / 정밀검사 기록지	3년 / 10년	

3) 지도 점검

가) 근거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②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내용

- ① 각 해당 자치구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
- ②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는 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기 지도점검 시행,
그 결과를 서울시로 보고해야 함
(상반기 7월 10일 이내 / 하반기 익년도 1월 10일 이내 제출)

다) 점검서식 ※ 2017년 민간위탁사업 실무지침의 지도·점검(안)/서울시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예시)」

1.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통장 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②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6. 재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② 재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보고 및 허락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7.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8. 기 타		

.....

□ 고 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서류 확인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지수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근로자 인터뷰		

.....

□ 전문기술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안전사고 유무 및 처리현황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기타		

.....

2. 운영성과 분야(성과 점검)

□ 투입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인력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자원	① 사업과정 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미흡사유:

□ 과정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준수성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법규, 규정, 안전수칙 및 지침 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노력성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④ 이용자 서비스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미흡사유:

□ 산출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사업성과 달성	①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위의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함.

2017. . .

점검자	소속	과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확인자	소속	센터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

3. 행정 서식 [표준안]

서식 5-①

○○○ 치매지원센터 조직도(안)

사진	사무	주요이력
	입사	
사진	사무	주요이력
	입사	

정책기획, 행정 ☎ 000-0000	교육·홍보 ☎ 000-0000	자원연계 및 정보화 ☎ 000-0000	연구개발 ☎ 000-0000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무	사무	사무	사무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주요 이력	주요 이력	주요 이력	주요 이력
	사진	사진	사진
	사무	사무	사무
	입사	입사	입사
	주요 이력	주요 이력	주요 이력

.....

업무분장표

(업무분장 기준일 : 00. 00. 00.)

연번	구분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상세하게 기재)	대직자	비고
1	센터장	○○○ (00.00.00)			
2	팀장				
3	직원1				
4	직원2				
5	직원3				
6	직원4				
7					
8					
9					
10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응시자용)

○○○치매지원센터는 직원채용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병역사항 등
-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생년월일 같은 고유 식별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병역 사항 등의 민감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서울특별시 ○○○ 치매지원센터장 귀하

표준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구 치매지원센터 기관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연장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서 대체휴무 사용
5.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 기관장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6. 임 금 : 2017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지급일에 따름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 은행명)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주”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업주) ○○○ 대학병원(서울특별시 ○○○구 치매지원센터장) ○○○ (서명)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직원명부

소속		최초근무일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		전화	자택 :
				휴대전화 :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격면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일		퇴직사유		
기타				

개인근무상황부('17. 〇월)

연번	일 자	성 명	구 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결 재		
					담당	팀장	센터장
1	2017.00.00	〇〇〇			〇〇〇	전 결	代 〇〇〇
2							
3							
4							
5							
		이	하	여	백		

직원 근무 평가표

1.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담당 업무	입 사 일	직 군
예) 서울시광역치매센터	0 0 0	예) 조기검진	00년 0월 0일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2. 근무실적 평가(60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v표시

근무 실적 (본인이 기록)				
작성 내용의 사실 정도	사실 <input type="checkbox"/>	일부과장 <input type="checkbox"/>	일부허위 <input type="checkbox"/>	※ 평가자가 해당란에 V 표시

평가 요소	업무난이도(20점)					완성도(20점)					적시성(20점)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1차 평가자(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 A(20) : 매우 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 미흡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v표시

평가 요소	정 의	등급	A	B	C	D	E
기획력(5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전문지식(5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추진력(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책임감(5점)	· 담당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 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성실성(20점)	· 무단조퇴, 무단결근, 센터직원 단합저해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 A(5) : 매우 우수, B(4) : 우수, C(3) : 보통, D(2) : 미흡, E(1) : 매우 미흡

※ A(20) : 매우 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 미흡

.....

4.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종합

※ 근무자 서열은 상대평가 : 평가자가 서열 부여

등급(분포율)	수(2할) (81~100점)	우(2할) (61~80점)	미(2할) (41~60점)	양(2할) (21~40점)	가(2할) (0~20점)
① 종합평가 점수	예) 85점				
② 근무자 서열	예) 1/9, 몇 번째 / 전체직원				

※ 종합평가 점수는 제2부 근무실적 및 제3부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 점수의 합계를 기입한다.
 다만, 서열은 전체 직원 중의 몇 번째인지 점수 분포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근무성적 평가 결과 '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분포비율은 '양' 등급의 분포 비율에 가산한다.

5. 직무수행 가능 여부 평가

등급 구분	가능	불가능	평가자 의견
1차 평가자 (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차 평가자 (사무국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센터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평가는 제4부의 평가 등급이 '양'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및 의견 기술)

6. 종합평가

종합평가 의견	
1차 평가자 (팀장)	
2차 평가자 (사무국장)	
확인자 (센터장)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입사일	서명
1차 평가자	예)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예) 팀장	000	00년 0월 0일	
2차 평가자	예)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예) 사무국장	000	00년 0월 0일	
확인자	예)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예) 센터장	000	00년 0월 0일	

직원 근무 평가표

1.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담당 업무	입 사 일	직 군
예) 000구치매지원센터	000	예) 조기검진	00년 0월 0일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2. 근무실적 평가(60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v표시

근무 실적 (본인이 기록)	
작성 내용의 사실 정도	사실 <input type="checkbox"/> 일부과장 <input type="checkbox"/> 일부허위 <input type="checkbox"/> ※ 평가자가 해당란에 v표시

평가 요소	업무난이도(20점)					완성도(20점)					적시성(20점)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등급															
평가자															
확인자															

※ A(20) : 매우 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 미흡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v표시

평가 요소	정 의	등급	A	B	C	D	E
기획력(5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평가자					
		확인자					
전문지식(5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평가자					
		확인자					
추진력(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평가자					
		확인자					
책임감(5점)	· 담당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 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평가자					
		확인자					
성실성(20점)	· 무단조퇴, 무단결근, 센터직원 단합저해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평가자					
		확인자					

※ A(5) : 매우 우수, B(4) : 우수, C(3) : 보통, D(2) : 미흡, E(1) : 매우 미흡
 ※ A(20) : 매우 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 미흡

.....

4.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종합

※ 근무자 서열은 상대평가 : 평가자가 서열 부여

등급(분포율)	수(2할) (81~100점)	우(2할) (61~80점)	미(2할) (41~60점)	양(2할) (21~40점)	가(2할) (0~20점)
① 종합평가 점수	예) 85점				
② 근무자 서열	예) 1/9, 몇 번째 / 전체직원				

※ 종합평가 점수는 제2부 근무실적 및 제3부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 점수의 합계를 기입한다.

다만, 서열은 전체 직원 중의 몇 번째인지 점수 분포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근무성적 평가 결과 '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분포비율은 '양' 등급의 분포 비율에 가산한다.

5. 직무수행 가능 여부 평가

등급 구분	가능	불가능	평가자 의견
평가자 (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센터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평가는 제4부의 평가 등급이 '양'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가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및 의견 기술)

6. 종합평가

종합평가 의견	
평가자 (팀장)	
확인자 (센터장)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입사일	서명
평가자	예) 000구 치매지원센터	예) 팀장	000	00년 0월 0일	
확인자	예) 000 구치매지원센터	예) 센터장	000	00년 0월 0일	

.....

초과근무 사전 명령대장

일자: 20_____

결	담당	팀장	센터장
재			

연번	성명	초과근무사항		비고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 (구체적으로)	
1	홍길동	07:30 부터 20:00 까지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

초과근무 확인대장

일 자 : 20 _____

결 재	담 당	팀 장	센 터 장

연번	성명	초과근무사항			비고
		근무시간	한일(구체적으로)	확인	
1	홍길동	07:30부터 20:00까지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 지문인식기 원본 데이터 결과 활용 가능

.....

출장명령부

일자: 20_____

결 재	담당	팀장	센터장

연번	출장자	출장사항					비고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사유	차량 이용	확인	
1	홍길동	07:30부터 20:00 까지			사용, 미사용	자필 서명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

출장복명서

결 재	담당	팀장	센터장

○○○치매 17-0000(2017.00.00)호와 관련, 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성명: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00. 00. 13:00~17:00
장 소	○○○, ○○○
출장자	○○○ 외 명(○○○,○○○,○○○,○○○,○○○)
내 용	
비 고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신청서(2017. 00. 00.)

다음과 같이 연가[공가, 병가, 특별휴가]를 신청합니다.

가. 신청자 : ○○○

나. 연가일자[공가, 병가, 특별휴가] : 2017. 00. 00. 09:00~18:00

다. 연가일수[공가, 병가, 특별휴가] : ○일

라. 연가사유[공가, 병가, 특별휴가] : 자녀육아[건강검진, 보수교육, 질병치료, 결혼 등]

마. 연락처 : 010-0000-0000

. 끝.

※ 공가일 경우 증빙서류(건강검진 확인서 등) 별첨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00-0000(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연 가 대 장

(2017. 0월 기준)

연번	성명	입사일	연가 발생 일수	연가사용일수(일)												잔여 일수	비고	확인 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	홍길동	2014.00.00	15	1	0.5												13.5		
2																			
3																			
4																			
5																			
6																			
7																			
8																			
9																			
10																			
11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 물품 제작 계획(지출품의서, 지출 계획서)

1. ○○○치매 17-0000(2017.00.00)호 「2017년 ○○○○사업 계획」과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을 제작 구매하고자 합니다.

가. 제작 건 : _ _ _ _ _

나. 제작물품 : _ _ _ _ _

다. 제작수량 : _ _ _ _ _

라. 산출금액 : 금 원(금 원정)

마. 제작업체 :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등

바. 예산과목 : _ _ _ _ _ / _ _ _ _ _ / _ _ _ _ _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2. 견적서 각 1부(타견적서 포함).

3. 사업자 등록증, 시안 등등. 끝.

담 당

팀 장

센 터 장

협조자

시행 ○○○○ 00-0000(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산출기초조사서

(단위 : 원)

품명	규격 (mm)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A업체	B업체	C업체	단가	금액
기억친구 팔찌	10*10	개	1,000					
기억친구 휴대폰걸이	10*10	개	1,000					
			이	하	여	백		
소계								
총계								

상기내용을 작성하고 확인함

2017. 00. 00.

작성자 : _____ (인)

확인자 : _____ (인)

OOO 구 치매지원센터

.....

지출결의서

제 호	2017년도 세출회계		결	담당자	회계담당	팀장	센터장
			재	도장	도장	도장	도장
지출 과목	관		지출일				
	항						
	목						
지출금액	금 1,000,000원 (금일백만원정)						
적 요							
채 주	-주소, -상호명, -대표자 기재			지출방법	카드, 계좌이체 등 구분 ※계좌이체시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재		
<p>[물품구매시 작성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명 - 용도 - 구입일자 - 품명 : 세부기재 - 구입물품 <p>붙임 : 1.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 100만원이상 첨부, 자치구 서식 활용 3. 물품검수조서 각 1부 ← 10만원이상 첨부 4. 검수사진 첨부</p>							

.....

물 품 검 수 조 서

① 계약건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약금액			
⑤ 계약체결일			
⑥ 납품기한			
⑦ 납품 년월일			
⑧ 검수 년월일			
⑨ 검 수 장 소	○○○구 치매지원센터	물품출납 부 등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17. 00. 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검 수 자 담당자 _ _ _ _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직원 또는 팀장 _ _ _ _ (인) </div>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 출 납 원	

.....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명	규격	단위	단가(원)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기억친구 팔찌	10mm*10mm	개	900	1,000	-	1,000	-
기억친구 휴대폰걸이	10mm*10mm	개	900	1,000	-	1,000	-
		이	하	여	백		

.....

청렴이행 서약서(예시)

□ 권 명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구매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귀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귀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귀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귀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래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00. 00.

서약자 :

(서명)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2017년 ○월 초과근무 수당 지급

1. 2017년 ○월 초과근무 직원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 2017년 ○월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나. 지급일자 : 2017. 00. 00.
다. 지급금액 : 금 원(금 원정)
라. 지급대상 : ○○○ 외 명
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 붙임참조(월 최대 20시간인정)
바.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사. 예산과목 : - - - - , - - - - , - - - -

- 붙임 : 1. 초과근무 수당 산정내역서 1부.
2. 초과근무 명령, 확인대장(별첨)
3. 이체확인증 1부(별첨). 끝.

담 당 팀 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 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2017년 00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성명	봉급 기준액	시간당 지급액	초과근무 시간	지급시간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
1	○○○			23'21"	20'		000-00-000000 (00은행)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작성자 **행정** **성명** : ○ ○ ○ (인)
확인자 **팀장** **성명** : ○ ○ ○ (인)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2017년 ○월 출장비 지급

1. 2017년 ○월분 직원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월분 출장비 지급

나. 지급일자 : 2017. 00. 00.

다. 지급금액 : 금 원(금 원정)

라. 지급대상 : ○○○ 외 명

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 붙임참조

바.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사. 예산과목 : - - - - -

붙임 : 1. 출장비 산정내역서 1부.

2. 출장복명서 각 1부.

3. 이체확인증 1부(별첨). 끝.

담 당

팀 장

센 터 장

협조자

시행 ○○○○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2017년 00월 출장비 지급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성명	구분						출장 일수 (계)	여비 지급일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
		4시간 이상	차량		4시간 미만	차량					
			사용	미사용		사용	미사용				
1	○○○	12	2	10	2	0	2	14	10	200,000	000-00-000000 (00은행)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 1일 4시간 이상 20,000원(관용차량 이용시 1일/10,000원)
 1일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0,000원 (관용차량 이용시 미지급)

작성자 **행정** **성명 :** ○ ○ ○ **(인)**
확인자 **팀장** **성명 :** ○ ○ ○ **(인)**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2017년 ○월 외부강사료 지급(※결과보고 내부결재 후 시행)

1. ○○○치매 17-0000 (2017.00.00)호 「2017년 ○○○○사업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외부 강사의 ○월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월분 외부강사료 지급

나. 지급일자 : 2017. 00. 00.

다. 지급금액 : 금 원(금 원정)

라. 지급대상 : ○○○ 외 명

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 붙임참조

바.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사. 예산과목 : - - - - -

붙임 : 1. 외부강사료 지급내역서 1부.

2. 강의확인서 1부.

3. 이체확인증 1부(별첨). 끝.

담 당

팀 장

센 터 장

협조자

시행 ○○○○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2017년 00월 외부강사로 지급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성명	강의일자	프로그램명	강사료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계	소득세	주민세	
1	○○○	2017 .00.00 (1시간)		100,000	-	-	-	100,000
2								
3								
			이	하	여	백		
합계								

작성 자 행정 성명 : ○ ○ ○ (인)

확인 자 팀장 성명 : ○ ○ ○ (인)

강 의 확 인 서(예시)

- 강 의 명 : 『치매에 대한 이해』
- 일 시 : 2017. 00. 00. 14:00 ~ 16:00 ← 일회성 교육시
(기 간 : 2017. 00. 00 ~ 00. 00
↳ 정기 교육시 기간으로 명시하고, 서식 5-24의 지급내역서를 첨부할것)
- 장 소 : 000 치매지원센터 교육실
- 강 사 명 : 홍길동
 - 소속 및 지위 : 00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생년월일 : 1900.00.00
 - 연락처 : 010-0000-0000
 - 입금계좌 : 00 은행 100-200-3456789(예금주 홍길동)

위의 내용을 확인함.

2017. 00. 00.

홍길동(서명)

비품관리카드

관리번호		비품사진
물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사		
가 격		
구입일자		
내구년수		
수 량		
위치 및 보관장소		
폐 기 일		
폐기사유		
비 고		

비품(장비 등 물품 취득) 대장											물품 처분 세부내역				
대분류	품명	중분류	물품명	구입 (취득 일자)	수량	취득 단가	금액	자산 번호	보관 장소	비고 (세부 사항)	처분 일자	처분 사유	처분 방법	처분 수량	비고

.....

소모품 수불대장

연번	구매일자	물품명	수량	취득단가	금액	구매목적	구매자	결재자

IV 부 록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현황

- 가. 주요 연혁
- 나. 노인 인구 및 치매 현황
- 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통계 연보

2.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현황

- 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 나.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현황

가. 주요 연혁

□ 1995년

-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1996~2005)』 수립
 - 시·도립 53개, 군단위 14개, 총 57개의 ‘치매공립병원’ 설치
-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일부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관련 사업 시행
 - 서울시 성동구 정신보건센터, 중랑구 정신보건센터, 동작구 정신보건센터

□ 1997년

- 노인복지법 제12조 의거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치매상담요원 배치

□ 1999년

- 서울시 관악구 ‘치매관리센터’ 설치
 - 한국치매협회 및 서울대학교병원 치매클리닉의 지원을 받아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지역사회 치매실태조사 등의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사업 시행

□ 2006년

- 12월 20일, 서울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가 한국치매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 시행

□ 2007년

- 1월 2일,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업무 개시
- 6월~9월, 4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개소
 - 성북구(6월), 성동구(7월), 마포구(7월), 강동구(9월)
- 9월 21일, 제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서울광장, 5,881명)
-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시행

□ 2008년

- 2월~11월, 7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개소
 - 도봉구(2월), 송파구(3월), 동대문구(4월), 양천구(4월), 은평구(6월), 서초구(9월), 관악구(11월)
- 4월 10일, ‘서울치매관리포럼’ 개최
-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실시

.....

□ 2009년

- 3월~12월, 14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개소
 - 광진구(3월), 구로구(7월), 금천구(8월), 강북구(8월), 중구(9월), 강서구(9월), 동작구(10월), 용산구(10월), 중랑구(11월), 종로구(11월), 영등포구(12월), 노원구(12월), 서대문구(12월), 강남구(12월)
- 4월 30일, '치매예방 컨퍼런스' 시행
- 5월 12일, '서울특별시치매센터'로 명칭변경, 사무실 이전(마포구 대흥동 445번지)
- 9월 28일, '치매관리 전문가 포럼' 개최(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52명)

□ 2010년

- 4월,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작
- 5월 1일,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
- 9월 9일, 제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홍보서포터즈 발대식(건국대 새천년관, 1,200명)
- 9월 17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치매극복 한마당 개최(마로니에공원, 1,781명)
- 10월, 서울시 치매노인의 동반질환 및 생활습관 조사 보고서 발간
- 12월, 매뉴얼 및 소식지 등 제작
 - 치매가족 부양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매뉴얼 및 치매상담매뉴얼 제작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소식지 '좋아라' 창간호 발간 및 배부
 - 치매극복수기 모임집 '아픈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발간 및 배부

□ 2011년

- 5~7월, 치매가족 희망다이어리 프로그램 실시
- 8월 4일, 『치매관리법』 제정
- 9월 21일, 제 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기억 나눔 콘서트(건국대 새천년관, 1,018명)
- 12월, 연구보고서 및 우수사례보고서 등 제작
 - 청소년 대상 치매이해교육 효과 비교 연구
 -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 통합 프로그램 매뉴얼을 활용한 치매가족 희망 다이어리 프로그램
 - 서울시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 서울시 노인의 동반질환 및 건강습관 분석

□ 2012년

- 1월 5일,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서울특별시 조례 제5225호, 2012.1.5 제정)
- 4~6월, 인정요법 프로그램 실시(노원구, 도봉구, 영등포구)
- 9월 18일, 제 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보건·복지 연계를 위한 포럼(대한상공회의소, 421명)

.....

- 12월, 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부
 - 인정요법을 적용한 행복한 치매 만들기 프로그램
 - 서울 치매상태 평가집의 타당도 검증연구
 - 서울시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비교분석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 분석(3개년 만족도 비교분석)
 - 지역사회기반의 코호트에서의 치매발생 위험요인에 관한 분석

□ 2013년

- 4월 12~13일, 정신건강박람회 치매정보관 운영(코엑스)
- 7월, 서울특별시광역시치매센터 지정
- 9월 13일, 제6회 치매가족! 치매극복 한마당 개최
- 10월, 서울특별시광역시치매센터 이전(마포구-> 종로구)
- 10월~11월, 등급 외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2개구(서대문구, 성동구) 개소
- 12월, 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부
 - 치매관리사업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외래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 서울시민 치매 인식도 조사(2개년도 *2011년, 2013년 치매인식도 결과 비교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를 위한 인정요법 프로그램 효과 연구
 - 지역사회 거주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4개년 만족도 비교 분석)

□ 2014년

- 1월 24일, 정책 토론회 개최
- 5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서울특별시 조례 제5695호, 2014.5.14 개정)
- 7월~8월, 등급 외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2개구(강동구, 성북구) 개소
- 9월 13일, 제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 찾기' 개최
제1회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동행, 치매를 넘어' 개최
- 10월 16일, 치매 국제심포지엄 '치매 가족을 품다' 개최
- 12월, 연구보고서, 모음집 등 발간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 노인 관리 현황 조사
 - 치매 가족 맞춤형 통합 지지 프로그램(희망다이어리) 리뉴얼을 위한 기초조사
 - 웹 기반 치매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 '희망을 담은 우리 이야기' 4차 치매극복체험 수기 모음집 발간
 - 서울시 2014 치매노인시설 안내서 발간

□ 2015년

- 5월 15일, 제2회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동행, 치매를 넘어’ 개최
- 9월 5~8일, ‘치매, 희망을 품다’ 치매조기검진 및 어르신 작품전시회(시민청)
- 9월 17일, 제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가족 운동회 개최
- 10월~12월, 등급 외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4개구(동대문, 용산, 금천, 영등포) 개소
- 11월 1일, ‘천만시민기억친구’, 치매가족을 위한 ‘e-희망교실’ 웹페이지 오픈

□ 2016년

- 4월 30일, 제3회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동행, 치매를 넘어’ 개최
- 6월 30일, 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동영상 2편 개발
- 9월 1일, 제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수기 공모작 시상식
- 9월 1~4일, ‘행복한 기억 만들기’ 치매조기검진 및 어르신 작품전시회(시민청)
- 11월~12월, 등급 외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3개구(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개소

나. 노인 인구 및 치매 현황

1) 서울시 노인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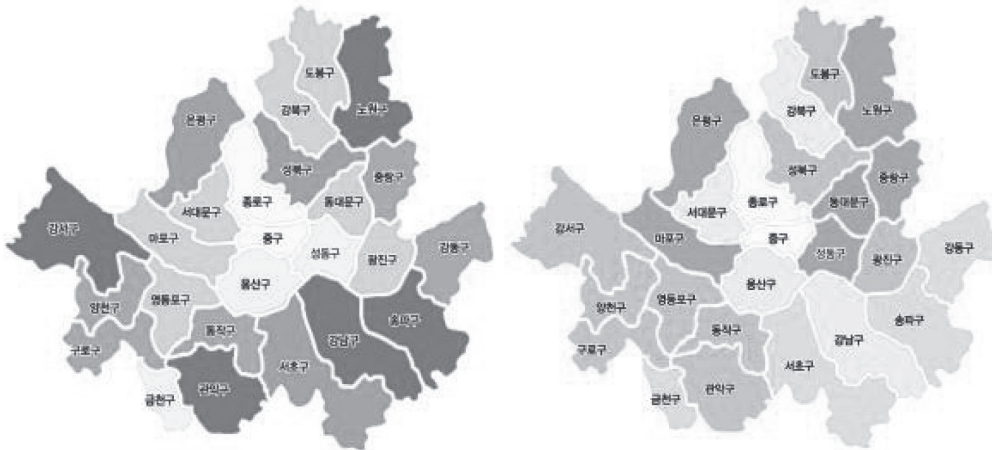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인구	노인 인구 비율(%)	노인 인구		
			계	남	여
계	9,930,616	13.05	1,295,899	570,490	725,409
종로구	152,737	16.34	24,950	10,895	14,055
중구	125,249	16.28	20,388	8,852	11,536
용산구	230,241	15.44	35,547	14,866	20,681
성동구	299,259	13.08	39,140	17,005	22,135
광진구	357,215	11.56	41,292	18,345	22,947
동대문	355,069	15.01	53,301	23,581	29,720
중랑구	411,005	13.59	55,842	24,702	31,140
성북구	450,355	14.18	63,878	27,492	36,386
강북구	327,195	16.49	53,964	23,273	30,691
도봉구	348,220	14.49	50,466	22,318	28,148
노원구	567,581	12.48	70,819	29,263	41,556
은평구	491,476	14.51	71,304	30,951	40,353
서대문구	314,194	15.06	47,303	19,954	27,349
마포구	379,892	12.65	48,060	20,136	27,924
양천구	477,739	10.88	51,957	23,011	28,946
강서구	595,485	11.90	70,889	31,137	39,752
구로구	417,551	13.21	55,159	25,369	29,790
금천구	235,386	13.58	31,976	14,540	17,436
영등포구	370,613	13.81	51,186	23,073	28,113
동작구	400,997	13.73	55,052	24,107	30,945
관악구	506,851	13.15	66,659	30,013	36,646
서초구	447,192	11.38	50,906	23,158	27,748
강남구	567,115	10.90	61,822	27,849	33,973
송파구	657,831	10.78	70,918	32,529	38,389
강동구	444,168	11.96	53,121	24,071	29,050

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2016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95,89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3.05%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임¹⁾
- 노인인구수는 송파구가 70,918명으로 가장 높고, 강서구 70,889명, 노원구 70,819명 순으로 많으며, 중구는 20,388명으로 가장 적음
-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 16.49%(53,964명)와 종로구 16.34%(24,950명), 가장 낮은 자치구는 송파구 10.78%(70,918명)로 나타나고 있음

2) 각 자치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등록 현황

- 자치구별 65세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각 치매지원센터의 치매환자 등록자수는 지역별 차등을 보이고 있음



색구분	'16년도 노인인구수	색구분	'16년도 노인인구수
(Lightest Gray)	20 ~ 30천명	(Light Gray)	50 ~ 60천명
(Medium-Light Gray)	30 ~ 40천명	(Medium Gray)	60 ~ 70천명
(Medium Gray)	40 ~ 50천명		

자료 : (2016) 통계청 행정자치구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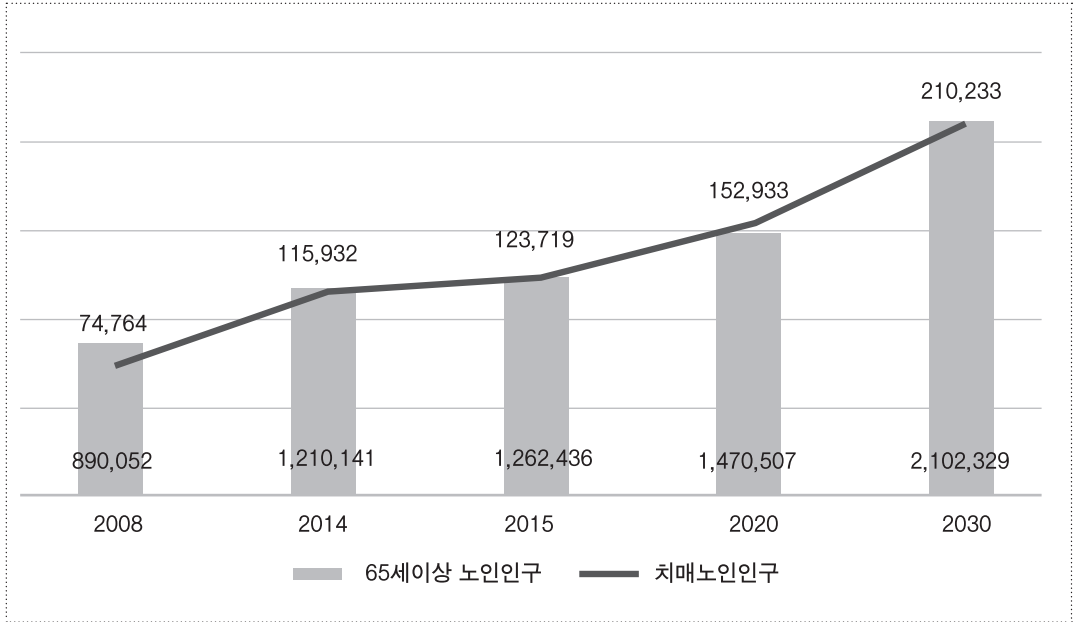
색구분	'16년 12월말기준 치매 등록자수	색구분	'16년 12월말기준 치매 등록자수
(Lightest Gray)	900~1,300명	(Light Gray)	2,101~2,500명
(Medium-Light Gray)	1,301~1,700명	(Medium Gray)	2,501~2,800명
(Medium Gray)	1,701~2,100명		

자료 : 서울시치매관리사업DB

1) UN보고서 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 20%미만
 초고령사회(post-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

3) 서울시 치매노인 증가 추이

서울시 치매추정인구는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295,899명의 9.9%²⁾인 129,460여명으로 추정되며 20년 15만명, 30년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08	2015	2016	2020	2030
서울시 전체	10,456,034	10,022,181	9,930,616	9,895,548	9,414,828
65세이상 노인인구 (시 인구대비 %)	890,052 (8.5%)	1,262,436 (12.6%)	1,295,899 (13.05%)	1,470,507 (14.9%)	2,102,329 (22.3%)
치매추정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	74,764 (8.4%)	123,719 (9.8%)	129,460 (9.9%)	152,933 (10.4%)	210,233 (10.0%)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2) 2012년 보건복지부 치매유병률 조사

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통계 연보(※ 자료출처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DB)

1)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연도별 조기검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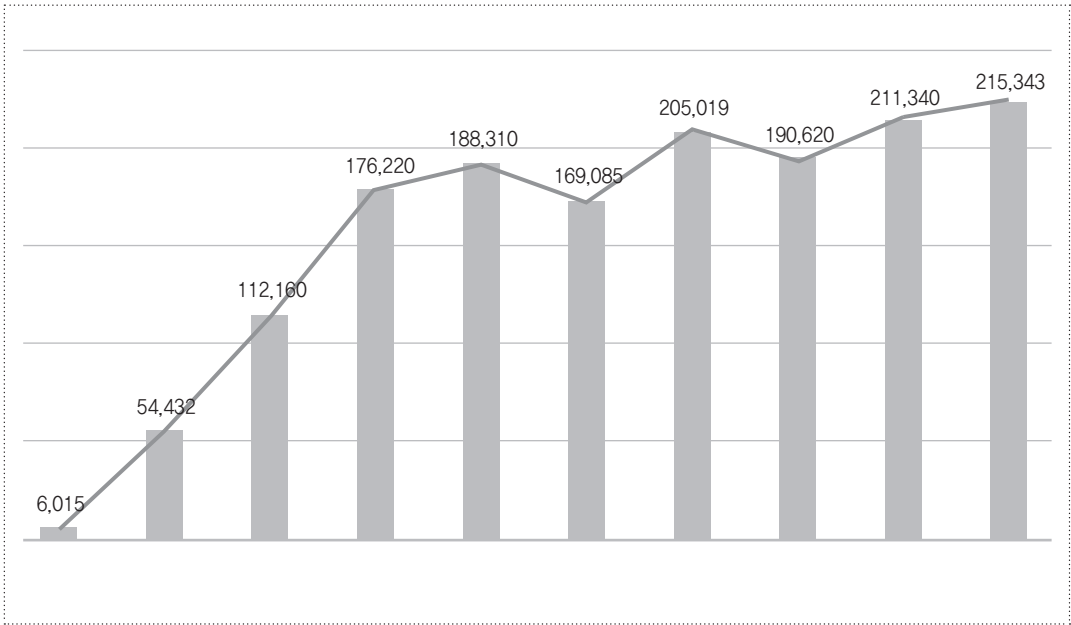
가) 단계별 검진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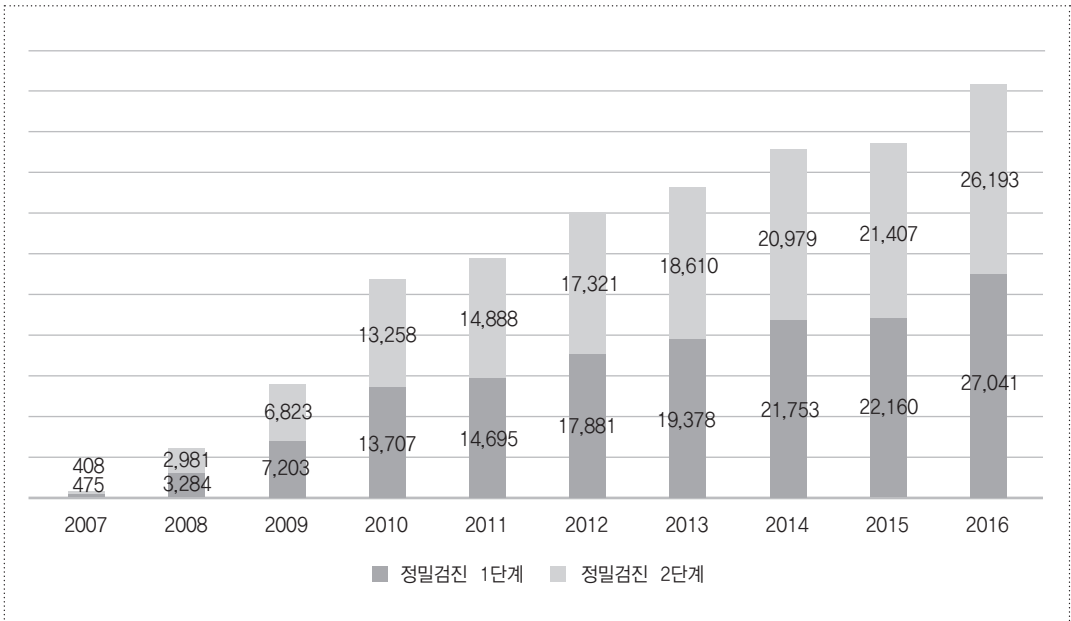
자치구명	2014			2015			2016		
	선별 검진자	정밀 검진자	원인확진 검진자	선별 검진자	정밀 검진자	원인확진 검진자	선별 검진자	정밀 검진자	원인확진 검진자
합 계	190,619	42,730	4,178	211,340	44,502	4,021	215,343	53,234	4,004
종로구	4,536	479	39	5,262	637	21	5,227	846	36
중구	6,097	1,306	115	7,439	1,251	86	8,671	1,872	90
용산구	7,187	1,969	116	8,092	2,079	80	7,972	2,336	87
성동구	6,854	1,255	159	8,091	1,502	137	8,181	2,461	115
광진구	8,147	1,506	200	8,031	1,252	232	9,760	1,865	88
동대문구	7,925	1,967	148	8,182	2,002	166	9,095	2,270	209
종랑구	6,896	2,307	211	7,790	2,246	200	7,863	2,250	219
성북구	9,341	2,672	222	10,579	2,777	221	9,609	2,802	245
강북구	7,559	1,990	208	8,761	1,843	213	10,335	2,404	160
도봉구	7,588	1,986	238	8,836	2,543	213	9,147	2,652	295
노원구	7,025	1,906	192	9,988	1,830	205	8,236	2,209	179
은평구	7,649	1,434	331	8,931	1,654	307	9,819	2,467	351
서대문구	7,171	1,247	41	7,846	1,993	80	8,542	2,303	56
마포구	7,288	1,836	167	8,924	1,789	122	9,272	2,560	173
양천구	9,112	1,505	229	8,847	1,691	221	9,171	1,853	150
강서구	8,058	1,580	224	8,434	1,693	227	8,240	2,226	235
구로구	6,835	2,207	99	8,204	2,278	86	7,919	2,288	76
금천구	8,499	1,658	68	8,369	1,768	84	7,422	1,587	90
영등포구	7,014	1,724	115	8,101	1,701	124	8,552	2,446	119
동작구	7,421	2,032	227	8,365	1,944	170	9,237	2,436	162
관악구	10,649	2,194	347	10,388	1,992	340	9,842	2,224	359
서초구	8,257	1,780	95	9,019	1,725	92	8,646	1,910	118
강남구	6,108	1,056	62	8,010	1,020	96	7,581	1,307	91
송파구	9,836	1,316	154	8,410	1,124	130	8,829	1,348	134
강동구	7,567	1,818	171	8,441	2,168	168	8,175	2,312	167

☞ 단계별 검진자 현황은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선별검진의 경우 1.8%, 정밀검진의 경우 19% 증가함

가) - 1. 연도별 선별 검진자 현황



가) - 2. 연도별 정밀 검진자 현황



나) 치매환자 발견 현황

(단위: 명)

년 도	2014			2015			2016		
	선별검진을 통한 등록	기치매 등록	외부진단 등록	선별검진을 통한 등록	기치매 등록	외부진단 등록	선별검진을 통한 등록	기치매 등록	외부진단 등록
합 계	8,164	778	1,089	7,821	732	1,076	8,163	554	698
종로구	77	16	22	135	20	29	101	21	11
중 구	223	15	11	198	12	22	147	8	12
용산구	283	8	28	253	8	24	293	3	5
성동구	355	14	19	324	19	201	334	5	3
광진구	408	6	20	284	18	17	398	25	36
동대문구	414	32	32	450	14	22	461	15	23
종랑구	466	57	103	492	69	47	409	48	34
성북구	345	53	42	335	10	60	375	3	64
강북구	244	44	73	238	46	66	238	26	31
도봉구	346	63	7	346	17	47	392	22	28
노원구	390	41	57	415	38	52	438	35	29
은평구	392	44	53	368	45	53	405	44	50
서대문구	236	23	60	341	34	32	299	23	19
마포구	397	36	38	346	27	29	415	6	17
양천구	315	23	45	312	29	38	335	27	35
강서구	333	32	52	336	30	45	476	27	58
구로구	419	52	54	317	50	73	253	39	68
금천구	324	21	26	257	26	15	216	10	11
영등포구	392	21	45	350	36	28	371	16	19
동작구	376	18	52	353	20	14	342	22	9
관악구	343	70	60	319	48	79	376	31	41
서초구	275	18	48	249	30	26	324	16	27
강남구	122	17	44	156	32	20	146	34	25
송파구	329	34	59	315	21	19	250	26	27
강동구	360	20	39	332	33	18	369	22	16

다) 치매환자 등록현황

(단위 : 명)

자치구명	2014				2015				2016			
	선별 검진자	³⁾ 인지 저하자	⁴⁾ 치매 고위험군	치매군	선별 검진자	인지 저하자	치매 고위험군	치매군	선별 검진자	인지 저하자	치매 고위험군	치매군
합계	190,619	26,629	9,765	10,022	211,340	23,480	11,373	9,629	215,343	26,137	14,230	9,415
종로구	4,536	307	136	115	5,262	298	161	184	5,227	321	287	133
중구	6,097	1,116	340	249	7,439	480	374	232	8,671	1,107	562	169
용산구	7,187	882	481	319	8,092	814	494	285	7,972	836	634	301
성동구	6,854	771	259	388	8,091	825	337	544	8,181	1,107	664	342
광진구	8,147	879	298	433	8,031	637	300	319	9,760	982	407	459
동대문구	7,925	856	414	478	8,182	735	434	486	9,095	932	546	499
종각구	6,896	1,045	447	626	7,790	839	455	608	7,863	878	510	491
성북구	9,341	1,381	616	440	10,579	1,420	649	405	9,609	1,111	579	442
강북구	7,559	1,610	360	363	8,761	1,369	412	350	10,335	1,313	299	293
도봉구	7,588	1,334	638	416	8,836	1,457	913	410	9,147	1,406	924	442
노원구	7,025	1,197	421	487	9,988	954	427	505	8,236	1,128	520	502
은평구	7,649	1,115	232	488	8,931	998	368	466	9,819	1,561	618	499
서대문구	7,171	806	355	318	7,846	1,043	624	407	8,542	1,014	812	341
마포구	7,288	780	379	470	8,924	680	440	402	9,272	1,224	771	438
양천구	9,112	853	370	383	8,847	997	488	379	9,171	1,071	509	397
강서구	8,058	974	388	416	8,434	1,098	429	411	8,240	913	496	561
구로구	6,835	1,336	426	524	8,204	981	646	440	7,919	1,143	670	360
금천구	8,499	1,214	357	371	8,369	873	453	298	7,422	770	418	237
영등포구	7,014	1,229	445	458	8,101	1,207	434	414	8,552	1,140	785	406
동작구	7,421	1,049	492	446	8,365	1,056	519	387	9,237	1,277	708	373
관악구	10,649	1,945	663	470	10,388	1,298	621	446	9,842	1,232	717	448
서초구	8,257	1,003	426	341	9,019	781	391	305	8,646	946	494	367
강남구	6,108	910	329	183	8,010	631	298	208	7,581	673	459	205
송파구	9,836	1,005	180	421	8,410	879	152	355	8,829	818	287	303
강동구	7,567	1,032	313	419	8,441	1,130	554	383	8,175	1,234	554	407

☞ 치매 발견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선별검진의 중 인지저하자가 2015년 11.11%인데 비해 2016년에는 12.13% 상승하였으나
 치매 발견율은 2015년 4.55%에서 2016년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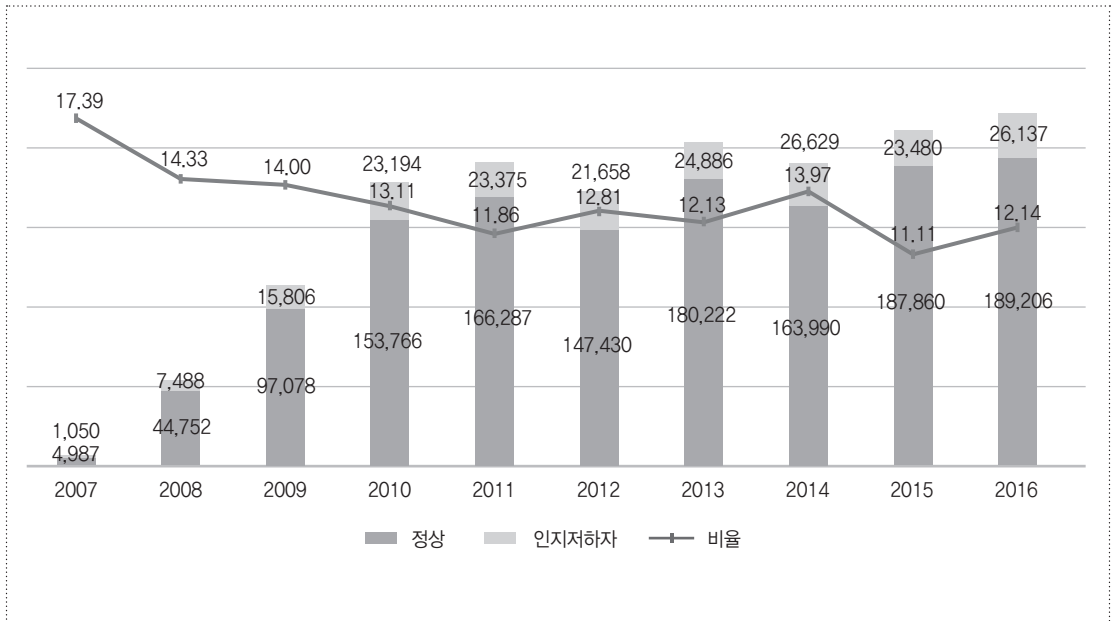
3) 인지 저하자 : 선별검진 결과 검진기준표 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

4) 치매 고위험군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자로 나온 대상자 중 신경심리평가(CERAD-K 또는 SNSB)와
 치매임상평가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이 내려진 자(경도인지장애와 같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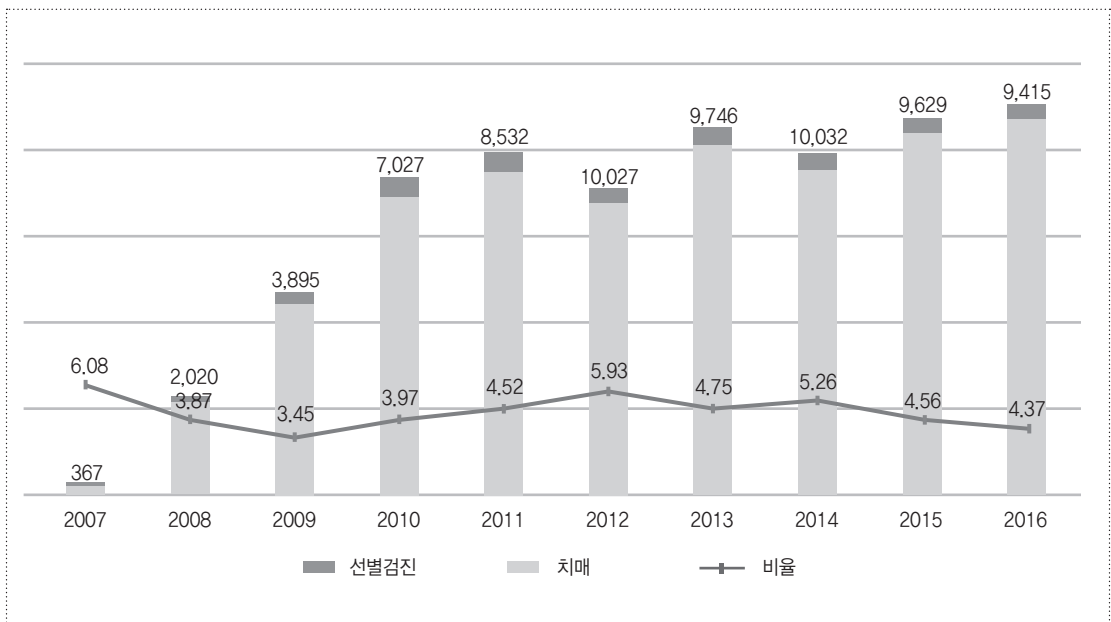
다) - 1. 연도별 선별검진 효율(인지저하 발견율)

(단위 : 명 / %)



다) - 2. 연도별 치매 발견율

(단위 : 명 / %)



.....

2)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연도별 예방등록관리 실적

① 2013년

(단위 : 명 / 건)

자치구명	2013							
	상담서비스 (건)	인지건강 프로그램 (명)	방문간호 (건)	조호물품 (건)	배회 예방 (건)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명)	자원연계 (건)	예방프로그램 연계 (건)
합 계	70,404	221,367	12,211	58,130	3,281	21,457	7,682	8,994
종로구	3,467	3,882	312	772	79	545	113	1
중구	6,666	7,385	339	1,872	110	458	263	891
용산구	1,676	8,330	623	2,848	174	1,024	269	12
성동구	1,915	12,748	554	1,024	57	1,031	406	373
광진구	1,280	9,121	786	3,038	201	1,019	524	501
동대문구	11,214	8,164	628	2,312	135	1,223	284	296
종랑구	2,507	10,925	467	2,678	98	1,006	169	76
성북구	5,594	15,517	613	1,964	132	1,062	296	339
강북구	2,446	8,038	412	2,095	105	694	362	104
도봉구	1,540	10,461	506	3,740	298	762	676	386
노원구	2,141	7,468	507	2,389	228	1,100	97	27
은평구	5,041	4,540	316	2,285	76	944	385	82
서대문구	1,729	7,051	451	1,873	107	1,299	206	260
마포구	1,998	8,304	538	1,777	139	981	278	308
양천구	4,223	8,652	350	2,519	103	702	619	321
강서구	1,184	10,156	402	3,045	100	651	293	2
구로구	532	6,304	718	2,320	115	926	423	239
금천구	2,467	10,946	336	3,272	99	1,044	274	27
영등포구	915	15,296	487	2,177	202	1,146	320	103
동작구	2,671	4,435	460	2,326	84	538	279	11
관악구	3,188	5,311	510	2,551	102	632	337	3,950
서초구	2,811	10,409	588	2,278	173	586	288	548
강남구	980	11,261	354	1,350	36	621	112	10
송파구	772	8,900	413	2,906	136	816	194	2
강동구	1,447	7,763	541	2,719	192	647	215	125

.....

② 2014년

(단위 : 명 / 건)

년도	2014							
	상담서비스 (건)	인지건강 프로그램 (명)	방문간호 (건)	조호물품 (건)	배회 예방 (건)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명)	자원연계 (건)	예방프로그램 연계 (건)
합 계	98,759	249,065	11,748	65,702	3,591	21,603	9,476	9,483
종로구	8,853	5,783	305	786	76	417	86	265
중구	8,873	6,667	398	2,713	173	787	422	314
용산구	1,871	10,432	624	2,677	123	1,157	301	248
성동구	1,584	19,013	479	959	86	721	347	139
광진구	1,680	9,378	579	3,162	236	986	597	511
동대문구	10,070	10,537	549	2,518	125	1,098	331	299
종랑구	3,772	11,319	670	4,099	175	1,263	498	960
성북구	8,899	15,972	500	1,731	72	589	235	406
강북구	2,878	11,377	244	1,943	124	800	401	125
도봉구	4,178	11,973	679	3,391	296	689	819	320
노원구	2,393	9,026	532	3,016	137	1,115	195	1,158
은평구	1,712	5,263	333	3,230	75	653	456	258
서대문구	1,992	9,460	435	2,115	114	1,813	437	143
마포구	2,176	11,445	562	1,522	150	1,038	326	606
양천구	6,484	7,664	315	2,683	96	761	509	308
강서구	2,072	9,306	277	3,963	67	473	352	53
구로구	1,019	5,800	543	2,588	153	829	560	801
금천구	3,684	13,604	425	3,232	88	949	248	101
영등포구	436	14,146	490	2,004	255	1,086	334	112
동작구	2,898	4,691	504	3,121	131	602	428	607
관악구	13,742	5,518	642	3,507	257	547	540	50
서초구	2,776	8,554	374	2,077	119	600	285	1,335
강남구	1,298	10,644	331	1,658	42	637	166	177
송파구	1,454	13,855	435	3,976	84	1,246	388	71
강동구	1,965	7,638	523	3,031	337	747	215	116

.....

③ 2015년

(단위 : 명 / 건)

년도	2015							
	상담서비스 (건)	인지건강 프로그램 (명)	방문간호 (건)	조호물품 (건)	배회 예방 (건)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명)	자원연계 (건)	예방프로그램 연계 (건)
합 계	130,704	267,813	12,125	61,978	3,941	26,023	11,723	11,042
종로구	9,493	6,330	334	661	106	500	117	340
중구	10,648	8,473	418	2,575	122	900	397	402
용산구	2,107	10,479	501	2,071	164	1,099	328	52
성동구	3,045	14,622	512	998	106	1,096	445	234
광진구	3,427	8,182	553	2,623	170	920	558	368
동대문구	20,892	13,890	517	2,286	206	1,230	655	309
종랑구	4,357	12,555	695	4,130	241	1,199	801	333
성북구	4,445	18,329	516	1,276	150	1,574	685	943
강북구	5,129	10,685	279	2,104	99	1,208	412	160
도봉구	4,283	11,711	606	4,091	291	650	895	589
노원구	3,958	13,729	529	2,911	157	1,453	213	2,586
은평구	7,803	4,592	316	2,928	115	1,087	573	304
서대문구	2,660	10,990	443	2,347	139	1,709	427	41
마포구	4,874	13,340	561	1,277	156	1,083	389	693
양천구	5,688	8,448	628	2,437	129	886	592	407
강서구	2,262	12,752	530	3,905	96	736	421	26
구로구	1,238	10,335	595	3,031	146	1,317	633	1,092
금천구	3,760	11,373	435	2,290	91	1,285	445	147
영등포구	490	13,877	335	1,914	208	1,012	404	164
동작구	3,696	4,750	513	2,393	221	683	523	770
관악구	14,876	7,388	560	4,132	220	641	592	92
서초구	3,415	9,894	443	2,113	248	839	585	562
강남구	1,664	10,020	336	1,501	39	652	180	184
송파구	1,163	11,288	430	3,218	61	745	215	25
강동구	5,331	9,781	540	2,766	260	1,519	238	219

.....

④ 2016년

(단위 : 명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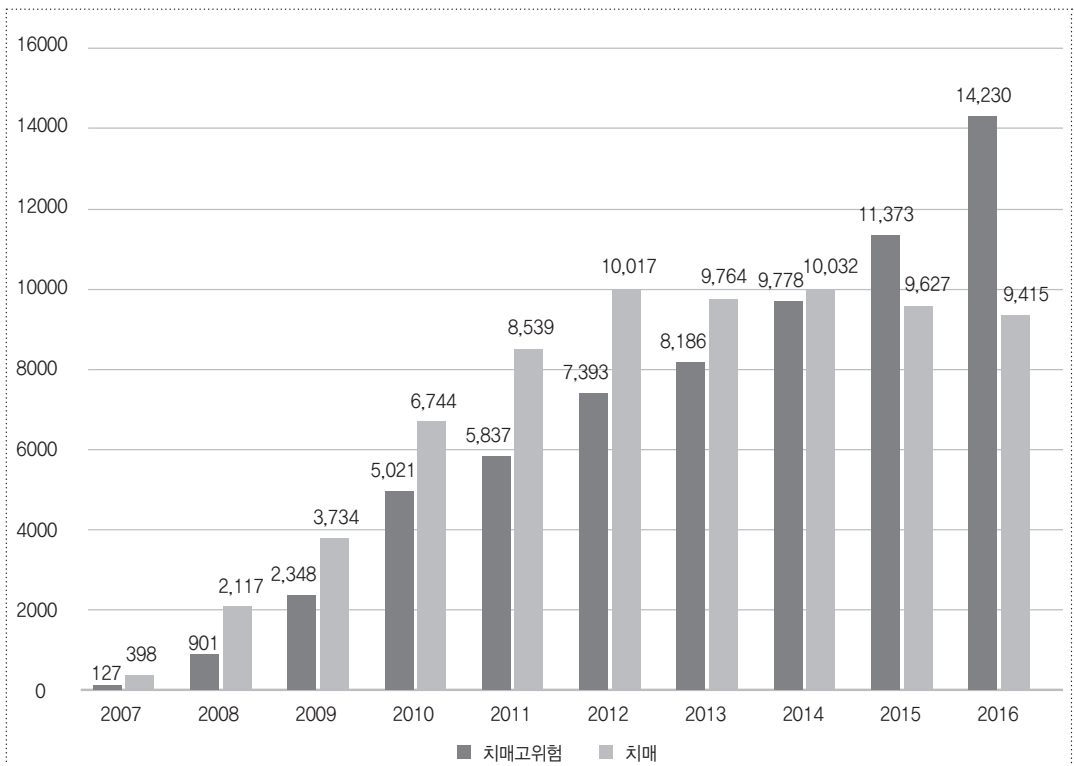
년도	2016							
	상담서비스 (건)	인지건강 프로그램 (명)	방문간호 (건)	조호물품 (건)	배회예방 (건)	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명)	자원연계 (건)	예방프로그램 연계 (건)
합 계	213,440	411,080	14,410	51,197	5,671	32,537	14,106	21,501
종로구	7,243	15,000	482	969	218	998	442	304
중 구	7,462	15,582	617	2,390	350	1,956	409	526
용산구	8,085	14,397	575	1,420	163	1,519	410	207
성동구	6,501	20,310	708	3,405	175	1,996	403	2,717
광진구	12,399	15,693	579	5,667	230	1,036	512	166
동대문구	6,709	14,144	552	1,282	227	1,450	668	415
종랑구	5,570	15,516	533	2,100	125	1,261	365	336
성북구	6,640	16,476	624	2,007	170	1,615	392	77
강북구	8,326	17,075	587	2,754	119	1,022	263	5,042
도봉구	6,812	16,515	519	2,948	351	892	1,208	1,816
노원구	24,142	15,531	602	1,864	482	1,257	1,041	351
은평구	11,025	13,690	562	2,218	312	1,184	783	1,807
서대문구	5,957	18,119	570	1,483	202	1,273	382	2,570
마포구	6,904	15,509	549	1,156	196	1,736	724	245
양천구	8,737	14,791	496	1,176	290	998	493	323
강서구	5,617	20,762	571	873	182	1,165	661	1,460
구로구	7,941	24,494	609	760	348	1,839	897	579
금천구	3,020	16,330	598	2,344	110	1,456	376	289
영등포구	13,375	14,250	586	1,745	218	834	391	351
동작구	7,665	21,446	573	1,626	206	1,187	460	225
관악구	9,810	14,689	558	2,125	342	1,245	396	136
서초구	5,808	13,022	573	2,312	188	1,377	1,006	563
강남구	11,769	12,371	592	615	145	795	336	452
송파구	11,071	19,579	593	2,091	112	1,181	518	446
강동구	4,852	15,789	602	3,867	210	1,265	570	98

.....

2) - 가. 등록실적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상	5,091	46,361	85,810	127,082	165,784	148,188	181,137	165,547	187,774	190,533
치매 고위험	127	901	2,348	5,021	5,837	7,393	8,186	9,778	11,373	14,230
치매	398	2,117	3,734	6,744	8,539	10,017	9,764	10,032	9,627	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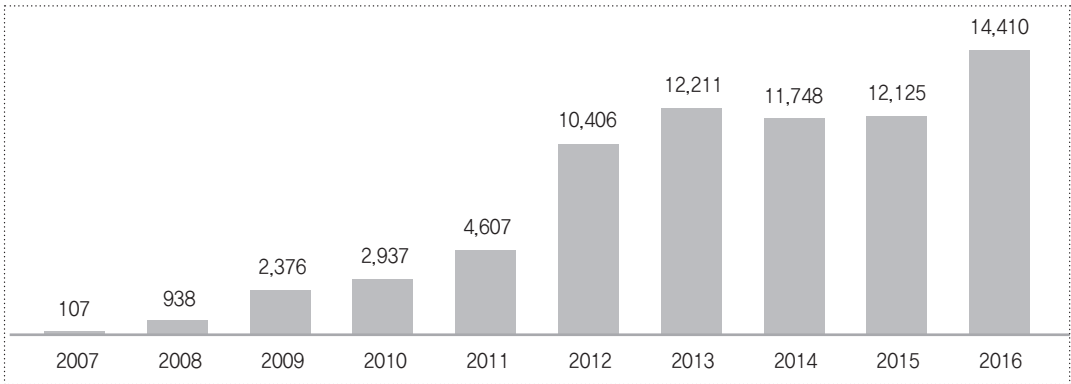


- ☞ 정상군은 2007년 5,091명에서 2016년 190,533명으로 증가
- 치매 고위험군은 2007년 127명에서 2016년 14,230명으로 증가
- 치매군은 2007년 398명에서 2016년 9,415명으로 증가

2) - 나. 방문간호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문간호	107	938	2,376	2,937	4,607	10,406	12,211	11,748	12,125	14,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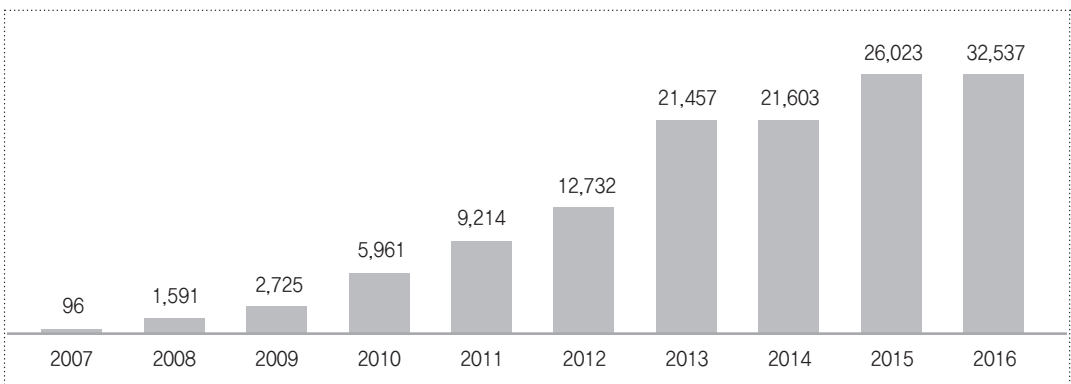


☞ 방문간호 건수는 2007년 107건에서 2016년 14,410건으로 증가

2) - 다.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족모임	96	1,591	2,725	5,961	9,214	12,732	21,457	21,603	26,023	32,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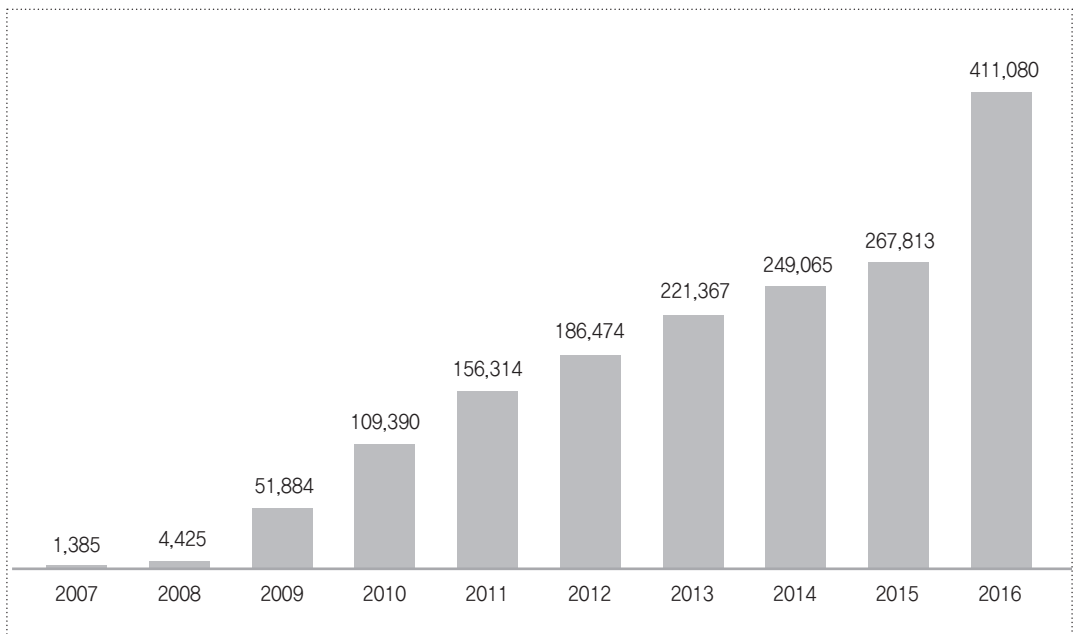
☞ 가족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07년 96명에서 2016년 32,537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2) - 라. 인지건강 프로그램 실적

(단위 : 건)

구분	인지건강 프로그램
2007	1,385
2008	4,425
2009	51,884
2010	109,390
2011	156,314
2012	186,474
2013	221,367
2014	249,065
2015	267,813
2016	411,080



☞ 인지건강프로그램은 2007년 1,385건에서 2016년 411,0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성과는 전년대비 약 1.5배 증가

3)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연도별 교육/홍보/자원연계 사업 실적

가) 교육

(단위 : 건 / 명)

자치구명	2014				2015				2016					
	주민 대상		시설종사자 대상		주민 대상		시설종사자 대상		주민 대상		시설종사자 대상		환자가족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합계	2,614	92,633	307	8,289	2,936	98,779	312	7,504	3,919	121,138	365	8,835	418	6,384
종로구	76	2,647	7	91	96	2,577	3	40	136	3,602	10	143	57	406
중 구	110	4,089	18	350	221	5,076	14	245	128	5,841	7	481	9	164
용산구	144	5,933	21	330	152	4,387	14	546	114	3,325	15	665	7	121
성동구	232	4,501	7	213	117	3,583	0	0	222	5,935	18	184	14	223
광진구	83	2,884	20	769	100	3,809	3	116	141	5,073	26	315	18	353
동대문구	130	4,644	75	1,205	217	4,006	55	632	266	6,085	47	668	24	258
종랑구	78	2,379	13	170	78	1,826	30	448	105	4,506	6	173	13	147
성북구	135	2,608	10	130	97	2,635	48	283	218	3,744	5	157	5	107
강북구	66	5,185	7	129	82	2,683	9	225	113	3,977	12	192	8	110
도봉구	124	5,052	5	228	108	2,816	14	691	209	5,879	12	436	35	664
노원구	109	2,289	6	162	75	1,850	3	282	224	4,412	26	320	20	206
은평구	21	1,878	3	220	43	1,727	7	353	177	5,103	7	176	16	281
서대문구	94	2,797	5	114	104	2,964	5	465	198	5,981	9	440	4	76
마포구	217	7,218	12	330	247	10,831	11	313	87	4,278	11	667	12	223
양천구	114	6,005	11	535	84	5,345	6	215	121	4,888	7	280	22	735
강서구	79	4,300	12	505	91	4,031	2	130	113	4,744	12	351	43	318
구로구	99	3,232	9	330	201	6,675	10	382	116	4,148	8	331	26	685
금천구	35	1,590	9	434	84	1,865	8	414	146	4,180	10	300	15	331
영등포구	29	1,458	13	407	35	2,650	5	119	97	5,725	8	589	9	105
동작구	101	3,165	10	247	119	3,622	12	110	99	4,592	12	177	7	103
관악구	73	2,208	6	92	141	7,050	7	130	200	8,135	46	743	17	156
서초구	57	3,583	14	827	127	5,147	17	187	175	3,911	16	408	12	117
강남구	126	3,411	2	23	109	4,534	0	0	136	4,790	6	216	8	119
송파구	11	1,190	7	241	51	2,930	16	101	109	3,225	21	178	4	47
강동구	271	8,387	5	207	157	4,160	13	1,077	269	5,059	8	245	13	329

※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별 교육 시간 50분 이상인 교육

- 성동구 : 2015년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 ⇒ 기록 누락

(2015년 7월 데이케어센터, 정신건강센터 직원 대상 작업치료 프로그램 교육 실시/ 1회 10회)

.....

나) 홍보

(단위: 건 / 명)

구 분	2014			2015			2016		
	홍보프로그램		기억친구	홍보프로그램		기억친구	홍보프로그램		기억친구
자치구명	건	인원	인원	건	인원	인원	건	인원	인원
합계	2,151	273,263	2,839	3,346	392,007	22,341	3,204	349,168	29,384
종로구	35	10,471	85	86	22,478	884	56	10,971	1,735
중구	17	5,034	102	21	3,697	653	42	6,112	1,565
용산구	115	8,625	166	106	10,780	1,033	144	10,033	1,167
성동구	12	4,450	113	7	1,301	645	16	3,831	981
광진구	85	18,854	103	159	31,295	745	233	35,461	986
동대문구	43	5,688	87	43	6,427	728	200	11,424	1,285
종랑구	245	19,976	102	259	16,693	676	125	13,689	1,056
성북구	62	7,096	102	144	6,110	651	171	5,850	1,570
강북구	32	2,440	91	185	6,122	652	37	7,820	939
도봉구	242	30,090	61	213	15,220	828	178	21,540	955
노원구	12	3,430	95	147	22,544	650	27	7,378	1,260
은평구	233	8,879	137	194	10,135	894	137	13,212	1,047
서대문구	99	15,260	132	147	14,884	1,003	91	5,689	1,162
마포구	38	7,398	286	111	15,103	725	80	15,459	990
양천구	198	38,814	100	338	86,055	2,001	339	31,040	1,105
강서구	52	5,127	40	82	9,767	975	104	12,425	1,894
구로구	29	10,102	16	39	13,691	655	20	5,630	1,071
금천구	116	13,041	106	210	13,074	1,010	194	16,503	930
영등포구	81	13,129	41	152	18,137	714	133	15,972	1,102
동작구	43	4,131	211	22	1,834	767	94	6,400	1,068
관악구	109	16,235	101	301	41,852	656	326	28,366	1,070
서초구	7	985	39	37	4,497	893	53	8,851	965
강남구	28	2,755	64	23	2,132	658	37	4,495	1,006
송파구	78	9,304	49	73	5,778	661	168	37,506	932
강동구	140	11,949	410	247	12,401	2,584	199	13,511	918

※ 분석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홍보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 방문홍보 등의 외부 행사에서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과 치매지원센터를 알리기 위한 치매인식개선 활동으로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함
- 기억친구 실적은 2014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 진행한 내용임

.....

다) 자원연계

(단위 : 건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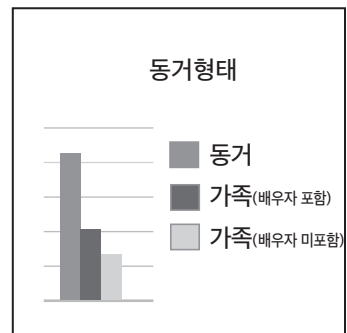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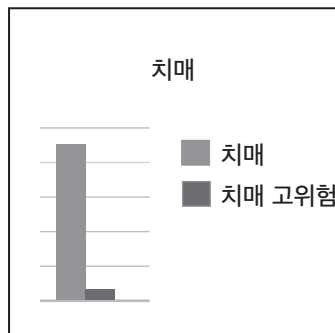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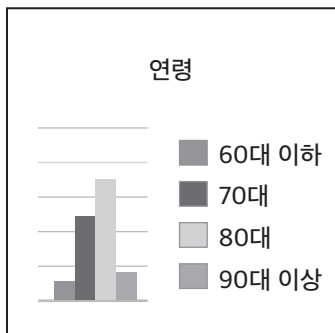
자치구명	2014						2015						2016									
	사례 관리	유관 기관 협약	협업체 구성 및 회의	자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자원 봉사자	사례 관리	유관 기관 협약	협업체 구성 및 회의	자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자원 봉사자	시니어	가가 호호	사례 관리	유관 기관 협약	협업체 구성 및 회의	자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자원 봉사자	시니어	가가 호호
합계	683	393	723	47	110	9,481	737	341	870	48	120	12,236	98	128	671	309	780	68	130	7,358	84	124
종로구	25	14	10	2	4	265	29	15	17	2	4	940	0	2	26	18	40	2	4	223	0	2
중 구	25	21	26	2	4	1,153	57	20	33	1	4	611	4	2	26	21	24	2	3	1,159	4	2
용산구	27	6	5	2	4	83	28	7	9	2	4	216	8	6	27	3	17	2	4	170	6	4
성동구	25	6	24	2	8	380	26	3	18	1	9	220	4	2	26	2	30	2	8	96	2	0
광진구	27	40	61	2	4	442	27	26	68	2	4	852	10	6	26	22	81	2	4	358	2	5
동대문구	36	21	26	2	4	266	35	8	36	2	9	399	4	10	35	34	36	2	5	133	3	9
종랑구	25	29	52	1	6	89	26	11	48	2	4	84	4	18	27	12	41	2	4	148	4	9
성북구	45	9	19	1	5	204	35	12	19	2	6	100	10	7	30	5	47	2	5	287	4	6
강북구	25	0	43	2	5	277	26	0	60	2	7	163	0	6	26	10	44	2	5	136	3	6
도봉구	25	0	31	2	4	284	26	9	54	3	4	296	4	6	26	6	59	2	4	236	3	6
노원구	25	20	27	2	6	210	27	1	22	1	3	362	4	2	27	8	31	2	4	255	7	2
은평구	25	0	52	2	4	121	26	3	34	2	4	301	4	1	26	4	2	2	5	54	4	5
서대문구	25	33	7	1	5	41	27	33	7	3	3	46	4	2	26	40	26	2	5	237	0	0
마포구	25	25	25	2	4	99	26	25	22	2	4	150	3	3	26	12	17	2	4	250	3	13
양천구	25	0	55	2	4	127	32	0	93	2	4	266	0	4	26	6	33	2	4	56	6	4
강서구	25	0	41	2	4	200	29	0	47	2	4	1,239	8	4	27	7	2	2	4	178	6	4
구로구	35	10	11	2	4	235	29	18	24	2	7	597	4	8	28	13	3	2	4	164	3	4
금천구	25	6	34	2	4	159	26	18	89	2	6	328	4	10	26	5	2	2	4	638	2	12
영등포구	30	0	58	2	3	727	29	3	40	2	4	656	4	6	26	7	71	2	4	408	3	8
동작구	30	24	13	2	4	332	35	11	16	2	4	28	3	5	27	10	32	3	5	119	2	4
관악구	25	15	26	2	4	189	26	10	30	2	5	132	0	1	26	19	32	2	5	417	3	4
서초구	30	14	15	2	4	265	29	6	20	2	4	152	4	0	27	8	32	2	4	310	3	0
강남구	23	2	42	1	4	2,753	29	3	32	1	4	3,173	4	0	26	12	30	2	4	980	4	0
송파구	25	25	17	2	4	82	26	17	24	2	4	521	0	2	26	20	22	18	24	122	4	2
강동구	25	73	3	3	4	498	26	82	8	2	5	404	4	15	26	5	26	3	4	224	3	13

.....

다) - 1.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①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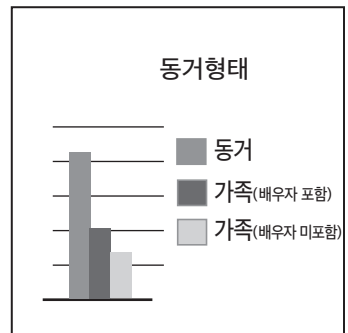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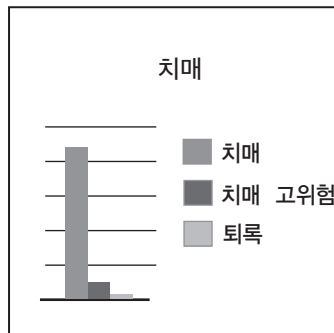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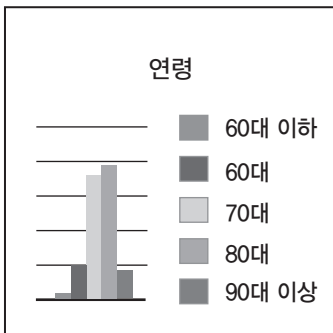
연령 분포		치매 분포		동거 형태	
구 분	건(명)	구 분	건(명)	구 분	건(명)
60대 이하	65	치매	678	독거	433
70대	242			가족 (배우자 포함)	189
80대	351	치매 고위험	59		
90대 이상	79				
합 계	737	합 계	737	합 계	737



- ☞ 2015년 사례관리는 총 737건이 진행되었고,
10회기 완료자 726건, 7회기 이상~10회기 미만 퇴록자는 11건임
- ☞ 연령은 80대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고위험 59건과 치매 678건임
- ☞ 동거형태는 독거가 433건으로 가장 많았음

② 2016년

연령 분포		치매 분포		동거 형태	
구분	건(명)	구분	건(명)	구분	건(명)
60대 이하	9	치매	623	독거	386
60대	49			가족 (배우자 포함)	174
70대	277	치매 고위험	42		
80대	292			퇴록	6
90대 이상	44	합계	671		
합계	671	합계	671	합계	671



- ☞ 2016년 사례관리는 총 671건이 진행되었고, 10회기 완료자 665건, 7회기 이상~10회기 미만 퇴록자는 6건임
- ☞ 연령은 80대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고위험 42건과 치매 623건임
- ☞ 동거형태는 독거가 386건으로 가장 많았음

다) - 2.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연도별 현황

구 분	자치구	운영 일자	실 이용 인원 (명)	연도별 실적 (연인원/명)	총 프로그램 운영 수 (건)	
					오전	오후
2013년	서대문구	2013. 11. 04.	13	361	70	114
	성동구	2013. 10. 14.	18	195	-	33
	중구	2013. 01. 07. (2011. 06. 개소)	10	691	352	528
	합 계		41	1,247	422	675
2014년	강동구	2014. 08. 04.	23	1,813	291	291
	서대문구	2014. 01. 02.	30	2,592	749	710
	성동구	2014. 01. 01.	46	4,014	-	236
	성북구	2014. 07. 01.	27	1,905	163	227
	중구	2014. 01. 02.	19	2,333	326	489
	합 계		145	12,657	1,529	1,953
2015년	강동구	2015. 01. 01.	32	4,353	659	659
	금천구	2015. 09. 21.	21	930	133	139
	동대문구	2015. 09. 01	20	1,270	273	273
	서대문구	2015. 01. 12.	36	3,115	665	650
	성동구	2015. 01. 01.	31	4,487	-	387
	성북구	2015. 01. 13.	39	7,163	421	416
	영등포구	2015. 12. 01.	16	284	26	26
	용산구	2015. 09. 14.	16	948	219	219
	중구	2015. 01. 02.	17	1,354	472	708
	합 계		228	23,904	2,868	3,477
2016년	강동구	2016. 01. 02.	44	4,548	701	669
	금천구	2016. 01. 02.	28	3,528	711	748
	동대문구	2016. 01. 02.	33	3,814	720	720
	서대문구	2016. 01. 02.	32	4,322	329	330
	성동구	2016. 01. 02.	34	4,675	-	779
	성북구	2016. 01. 02.	30	7,889	455	443
	영등포구	2016. 01. 02.	32	2,753	457	461
	용산구	2016. 01. 02.	34	3,131	566	578
	중구	2016. 01. 02.	18	2,990	492	609
	중랑구	2016. 11. 01.	24	1,542	87	88
	도봉구	2016. 11. 09.	33	598	130	130
	서초구	2016. 12. 21.	11	75	-	23
	합 계		353	39,865	4,648	5,578

☞ 2013년 서대문구와 성동구, 2014년 강동구와 성북구 개소(재원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 중구 실버누리센터 : 운영 및 내용은 기억키움과 동일(재원 : 중구 예산)

☞ 2015년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개소(재원 : 서울시)

☞ 2016년 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개소(재원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 2016년 평균 실 이용인원 29명, 평균 누적인원 3,322명,

평균 프로그램 건수 오전 387개, 오후 464개

.....

2.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현황

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협의체

구분	연번	성명	소속/직책	부문	비고
공동 위원장	1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 / 국장	광역지방자치단체	
	2	이동영	서울광역치매센터 센터장 /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센터장	
필수 기관	3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과장	광역지방자치단체	
	4	박찬병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원장	공립요양병원	
	5	이인영	강북구 보건소 / 소장	시군구보건소	
	6	이영신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 부장	건강보험공단	
	7	유승호	성북구치매지원센터 / 센터장	치매상담센터	
	8	배숙경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관장	노인보호전문기관	
	9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사무처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10	박효영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 센터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장려 기관	11	이상엽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 관장	노인복지관	
	12	김승현	대한치매학회 / 이사	대한치매학회	
	13	이동우	한국치매협회 / 이사	한국치매협회	
	14	강은미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센터장	대한노인회	
	15	이상지	서울시생활체육회 / 사무처장	시도생활체육회	
가능 기관	16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 교수	학교	
	17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학교	
	18	양영애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부교수	학교	
기타 기관 (기존)	19	박준기	시립 동부 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시립요양원	
	20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 / 회장	치매가족협회	
	21	한기숙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가족	

.....

나.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1) 종로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윤수	종로구 보건소장
2	당연직	박지은	종로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현순희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4	당연직	이종주	종로구청 복지지원과장
5	당연직(간사)	이경원	종로구치매지원센터 팀장
6	위촉직	이동영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7	위촉직	이용주	세란병원 신경과장
8	위촉직	박만섭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행정팀장
9	위촉직	원두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노인요양센터장
10	위촉직	남상해	대한노인회 종로지회장 지역주민대표

2) 중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홍혜정	중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이효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3	위촉직	김한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4	위촉직	이금영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장
5	당연직	조현우	중구청 노인복지팀장
6	위촉직	양우진	서울중앙클리닉 원장
7	위촉직	장은진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장
8	당연직	김영인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3) 용산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안무영	용산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박기덕	용산구보건소 의약과장
4	당연직	서은희	용산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
5	당연직	강설희	용산구보건소 치매관리사업담당
6	위촉직	이성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7	위촉직	배석한	건강보험공단(용산지사) 장기요양센터장
8	위촉직	홍기옥	지역주민 대표

4) 성동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
2	당연직	허재혁	성동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고향숙	성동구보건소 과장
4	위촉직	정덕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5	위촉직	박을중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장
6	위촉직	정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7	위촉직	최성자	성동종합사회복지관장
8	위촉직	미정	이용자(가족)대표
9	위촉직	최성자	성동종합사회복지관장
10	위촉직	박을중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장
11	위촉직	이성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12	위촉직	정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13	위촉직	공현상	시립게스트하우스소장

.....

5) 광진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이희영	광진구 보건소장
2	당연직	한설희	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김명미	광진구 건강관리과장
4	위촉직	남영애	치매한자 보호자 대표
5	위촉직	전병주	광진구의회 의원
6	위촉직	공영목	광진구의회 의원
7	위촉직	김경희	서울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위촉직	신재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장
9	위촉직	전진용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6) 동대문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전준희	동대문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송지영	동대문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장승희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4	위원	김강석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장
5	위원	김순호	동대문구재가복지연합회회장
6	위원	윤오순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위원	윤용용	맑은수병원장
8	위원	이윤진	보호자 대표

7) 중랑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이봉신	중랑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김정화	중랑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시연숙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4	위촉직	임미영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위촉직	조희선	중랑구의회 구의원
6	당연직	양운화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7	위촉직	김형기	중화 경로복지관장
8	위촉직	노수열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장
9	위촉직	오동호	중랑구 의사회장
10	위촉직	이해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11	위촉직	김영준	혜전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8) 성북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유승호	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이응철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4	위원	김태수	성북구의회 구의원
5	위원	김정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북운영센터장
6	위원	민진홍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7	위원	송준아	고려대 간호대학 노인간호학과 교수
8	위원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9) 강북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이인영	강북구 보건소장
2	당연직	박건우	강북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정은경	강북구보건소지역보건과장
4	당연직	홍성인	강북구보건소어르신건강팀장
5	위촉직	임경춘	성신여대 간호학과 교수
6	위촉직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
7	위촉직	임경춘	경북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8	위촉직	윤해영	효성요양병원장
9	위촉직	한정훈	대한병원 뇌졸중센터장
10	위촉직	김문석	서울현대병원신경외과장
11	위촉직	유정아	이용자(가족) 대표

10) 도봉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
2	위원	강신만	도봉구 구의원
3	위원	고두중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장
4	위원	유덕기	도봉구의회 고문
5	위원	양경희	경북대학 교수
6	위원	이은주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7	위원	남윤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8	위원	이선민	도봉구치매지원센터장
9	위원	박미서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

11) 노원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정민	노원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김정일	노원구보건소 생활건강과장
3	당연직	강미나	노원구보건소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장
4	당연직	이민희	노원구보건소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주무관
5	당연직	이동우	노원구치매지원센터장
6	치매관련전문가	임근복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
7	치매관련전문가	이순옥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
8	치매관련전문가	장숙량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9	치매관련전문가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	이용자가족대표	나봉자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이용 어르신 보호자
11	지역주민대표	정도열	노원구의회 의장

12) 은평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
2	당연직	마은주	은평구치매지원센터장
3	위촉직	조수학	은평구의회 의원
4	위촉직	명완석	대한노인회 은평지회장
5	위촉직	김승자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6	위촉직	김현훈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관장
7	위촉직	이철수	은평·서대문 적십자 봉사관장
8	위촉직	박영숙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호과장
9	위촉직	오정근	청구성심병원 신경과장
10	당연직	김병옥	은평구보건소 보건지소장

.....

13) 서대문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이준영	서대문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장숙이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
3	당연직	박진영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장
4	위원	전희남	서대문구노인회 회장
5	위원	김찬형	세브란스병원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6	위원	김광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간호학과 교수
7	위원	권재성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8	위원	고명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	위원	남옥현	치매환자가족 대표
10	당연직(위원)	정연훈	서대문구보건소의약과장

14) 마포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양동원	마포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김윤경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
4	위원	성세영	마포노인복지관장
5	위원	이희근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6	위원	오동재	미소의원 원장
7	위원	조성택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마포운영센터장

15) 양천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정유진	양천구 보건소장
2	위원	윤지영	양천구치매지원센터장
3	위원	김동호	신월종합사회복지관장
4	위원	김종범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장
5	위원	나상희	양천구의회 구의원
6	위원	송진성	양천구청 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
7	위원	오광환	양천구보건소 과장
8	위원	정지향	강서구치매지원센터장
9	위원	조유영	홍익병원 명예원장
10	위원	권준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
11	위원	정재필	구청 어르신장애인 복지과장

16) 강서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오영옥	강서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정지향	강서구치매지원센터장
3	위원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교수
4	위원	임무영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5	위원	이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6	위원	구분상	장기요양기관 “해늘” 센터장
7	위원	정정희	강서구의원
8	당연직(위원)	노말선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

17) 구로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황택근	구로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김승현	구로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양병규	구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4	위촉직	문창수	대한노인회 구로부지회장
5	위촉직	이광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구로운영센터장
6	위촉직	한창수	고려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
7	위촉직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노인간호학과 교수
8	위촉직	길재경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9	위촉직	김혜숙	경북대학교 의료보건학부 의료복지학과 교수
10	위촉직	정경숙	이용자(보호자) 대표

18) 금천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수경	금천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고성범	금천구치매지원센터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
3	당연직	김준용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장
4	당연직	소정우	금천구보건소 보건관리팀장
5	당연직	김지원	금천구보건소 주무관
6	위촉직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7	위촉직	조영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장
8	위촉직	송유근	독산1동주민센터 동장
9	위촉직	이인식	성신고려요양병원 행정원장
10	위촉직	김문경	고려수병원 암통합치료센터 병원장

19) 영등포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엄혜숙	영등포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김영진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김태금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4	위원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5	위원	김춘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교수
6	위원	박영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7	위원	정원미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8	위원	최징자	한국치매협회 이사

20) 동작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모현희	동작구 보건소장
2	위원	이준영	동작구치매지원센터장
3	위원	김형숙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4	위원	이부자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장
5	위원	김익환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6	위원	박경숙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위원	박소연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8	위원	송욱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9	위원	이진용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10	위원	전미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관악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최연남	관악구 보건소장
2	당연직	김준례	관악구 지역보건과장
3	당연직	조윤자	정신보건팀장
4	위촉직	신승란	주부, 가족대표
5	위촉직	허준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위촉직	장재구	중앙사회복지관장
7	위촉직	김동욱	가람신경정신과 원장
8	위촉직	이한주	상명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9	위촉직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0	위촉직	박소영	보라매병원 신경과 전문의

22) 서초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권영현	서초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주수현	서초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간사	함형희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4	위촉직	정찬승	방배동 마음드림의원원장
5	위촉직	이후자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6	위촉직	윤호중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관장
7	위촉직	권요안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장
8	위촉직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의료행정학과교수 학부장
9	위촉직	신동명	치매부인 부양자

23) 강남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서명옥	강남구 보건소장
2	당연직	나덕렬	강남구치매지원센터장
3	위촉직	최덕주	강남구의사회장 (소망이비인후과의원)
4	위촉직	이선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남운영센터장
5	위촉직	이화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6	위촉직	양재석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장
7	위촉직	전희진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장
8	위촉직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24) 송파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김인국	송파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최진희	송파구치매지원센터장
3	당연직	김경선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장
4	당연직	용선주	인애가 요양병원 행정부원장
5	위촉직	이경수	송파노인종합복지관장
6	위촉직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7	위촉직	홍승연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8	위촉직	이정훈	지역주민 대표
9	위촉직	한경복	이용자(가족) 대표

25) 강동구

순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1	당연직(위원장)	이향숙	강동구 보건소장
2	당연직	송홍기	강동구치매지원 센터장
3	위촉직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
4	위촉직	김연후	강동구의회 구의원
5	위촉직	김혜숙	경북대학교 의료복지학과 교수
6	위촉직	양영애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7	위촉직	정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장
8	당연직	최정수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과장
9	당연직	장자양	강동구보건소 어르신건강팀 팀장
10	당연직	한경혜	강동구치매지원센터 팀장

V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업무관련 자료

- 가. 등록번호 부여 체계
- 나. 치매선별 검진결과 판정 기준표
- 다. 관련 법령
- 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 마.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질병
- 바. 치매 치료약 목록
- 사.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

2. 기타 관련 자료

- 가. 치매관리사업 슬로건
- 나. 천만시민 기억친구 캐릭터 소개
- 다. 치매관련 공공기관
- 라. 치매관련 의료기관
- 마. 기타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업무 관련 자료

가. 등록번호 부여 체계

1) 앞 두 자리 : 자치구 이름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자치구 부여번호

[표 11 - ㉔]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강남구	01	금천구	08	서초구	15	은평구	22
강동구	02	노원구	09	성동구	16	종로구	23
강북구	03	도봉구	10	성북구	17	중구	24
강서구	04	동대문구	11	송파구	18	중랑구	25
관악구	05	동작구	12	양천구	19		
광진구	06	마포구	13	영등포구	20		
구로구	07	서대문구	14	용산구	21		

2) 뒤 다섯 자리 번호 : 환자의 등록 순서로 번호를 부여한다.

※ 등록번호 부여 예 : 강동구에서 최초로 등록되는 노인 ☞

0	2
---	---

 -

0	0	0	0	0	1
---	---	---	---	---	---

나. 치매선별 검진결과 판정 기준표

[표 11 - ㉕]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연령	성별	교육 연수			
		0-3년	4-6년	7-12년	≥13년
60 - 69세	남	20	24	25	26
	여	19	23	25	26
70 - 74세	남	20	23	25	26
	여	18	21	25	26
75 - 79세	남	20	22	25	25
	여	17	21	24	26
≥ 80세	남	18	22	24	25
	여	16	20	24	26

※ 위 표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진단검사로 의뢰함

.....

다. 관련 법령

1) 치매관리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2호, 2015.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매극복의 날)

-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삭제 <2015.1.28.>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 5. 치매조기검진
 -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8.]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13112호, 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0호, 2012.2.1., 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4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위임과 위탁)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부칙 <대통령령 제23580호, 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15.] [보건복지부령 제373호, 2015.12.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5.12.15.]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5.>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목개정 2015.12.15.]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치매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치매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 2. 운영계획서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법인·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3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조사 및 실시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기간·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 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 2. 이용 방법
-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 ③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신청·철회 및 고지·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다.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파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비용의 보조)

-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 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
 - 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

.....

2.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2호나목에 따른 신용정보·보험정보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9호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발췌>

[시행 2014.2.14] [법률 제12067호, 2013.8.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제15조(등급판정 등)

-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 ①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①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요양비)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례요양비)

- ①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 ①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6)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98호, 2015.5.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강증진과), 02-2133-75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 ② 치매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4.5.14.>

.....

제3조(업무)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지원
7.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전문개정 2014.5.14.]

제4조(운영의 위탁)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

-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8조(위탁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225호, 2012.1.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 제5695호, 2014.5.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98호, 2015.5.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59호, 2016.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930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64호, 2010.4.22.)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제9항 및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6)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7)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9)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같은 조 제4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 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및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를 “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 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를 “ 각각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 29)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0)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1)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4)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5)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6)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7)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8)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39)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40)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41)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42)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칙 < 제605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서울특별시 ○○○○조례」제○○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_ _ _ _ _의 목적을 위해 _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2. _ _ _ _ _
3. _ _ _ _ _

-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 ④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① “△△”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월 ○주, ○월 ○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시”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⑥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00월 00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시”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00년 0월 0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

2000년0월 0일

“시(또는 자치구 명)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000 (또는 구 청 장 000)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대표자 000

주) 이 표준안은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마.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질병

[표 11-㉞]

상병기호	한글명칭	영문명칭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G3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형	Alzheimer's disease, type 2
F000	초로성치매, 알츠하이머병	Pre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0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presenile onset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형	Alzheimer's disease, type 1
F001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senile onset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G30.8+)
F002	비정형 치매 알츠하이머병	Atypical dementia, Alzheimer's type(G30.8+)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G30.9+)
F01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F01	동맥경화성 치매	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F011	다발-경색 치매	Multi-infarct dementia
F011	현저한 피질성 치매	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3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Other vascular dementia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ick's disease (G31.0+)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Creutzfeldt-Jakob disease (A81.0+)
F022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disease (G10+)
F022	헌팅톤무도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chorea

.....

상병기호	한글명칭	영문명칭
F023	떨림마비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aralysis agitans
F023	파킨슨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arkinsonism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B22.0+)
F028	뇌지질축적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cerebral lipidosis (E75.-+)
F028	간질에서의 치매	Dementia in epilepsy (G40.-+)
F028	간렌즈핵변성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 (E83.0+)
F028	고칼슘혈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ypercalcemia (E83.5+)
F028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ypothyroidism, acquired (E01.-+, E03.-+)
F028	중독에서의 치매	Dementia in intoxications (T36-T65+)
F028	다발성 경화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multiple sclerosis (G35+)
F028	신경매독에서의 치매	Dementia in neurosyphilis (A52.1+)
F028	나이아신결핍[펠라그라]에서의 치매	Dementia in niacin deficiency [Pellagra] (E52+)
F028	결절성 다발동맥염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olyarteritis nodosa (M30.0+)
F028	전신성 홍반루푸스에서의 치매	Dementia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32.-+)
F028	파동편모충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trypanosomiasis(B56.-+, B57.-+)
F028	비타민 B12결핍에서의 치매	Dementia in vitamin B12 deficiency (E53.8+)
F028	요독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uraemia(N18.5+)
F03	상세불명의 치매	Unspecified dementia
F03	초로성 치매 NOS	Presenile dementia NOS
F03	일차성 퇴행성 치매 NOS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F03	노년성 치매 NOS	Senile dementia NOS
F03	우울형 또는 편집형 노년치매	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F03	노년정신병 NOS	Senile dementia psychosis NOS
G30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G30	노년 및 초로성 형태	Senile and presenile forms Alzheimer's disease
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

G30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8	기타 알츠하이머병	Other Alzheimer's disease
G3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

바. 치매 치료약 목록

(13.1.1 적용분, 품명 가나다순)

코드	품명	제약회사명	단위	상한가 (원)	적용일자
Donepezil HCL 10mg (주성분 코드 148601ATB)					
643700080	국제도네페질정	국제약품공업(주)	정	2344	07-08-01
642800220	뉴로셉트정10mg	고려제약(주)	정	1800	12-09-01
643300230	뉴로페질정10mg	(주)종근당	정	2460	12-04-01
647800230	뉴토인정	삼진제약(주)	정	2460	12-04-01
671804130	대원염산도네페질정10mg	대원제약(주)	정	2344	09-06-30
650300260	도나셉트정	진양제약(주)	정	2344	07-08-01
643500330	도네페질정10mg	한미약품(주)	정	2460	12-04-01
657804470	도네트정10mg	하나제약(주)	정	1537	10-09-01
658600090	도네페트정10mg	이연제약(주)	정	2344	07-08-01
670300150	도네프정10mg	코오롱제약(주)	정	2460	12-04-01
645402660	도네펠정10mg	제일약품(주)	정	2460	12-04-01
642700210	돈페질정10mg	동화약품(주)	정	2460	12-04-01
642902840	디멘셉트정10mg	일동제약(주)	정	2460	12-04-01
648501020	바로페질정10mg	신풍제약(주)	정	2344	07-08-01
653004350	바스티아정10mg	(주)한국파마	정	2256	11-10-17
646001340	브렌셉트정	(주)메디카코리아	정	2460	12-04-01

.....

649804280	셉트페질정10mg	명문제약(주)	정	2344	09-01-01
651901550	실버셉트정10mg	명인제약(주)	정	1241	11-10-01
642500860	아리도네정10mg	동아에스티(주)	정	2460	12-04-01
641601800	아리셉트정10mg	(주)대웅제약	정	2460	12-04-01
664900330	아리페정	성원애드콕제약(주)	정	2109	07-09-01
642100910	아리페질정10mg	(주)유한양행	정	2460	12-04-01
641802210	알도셉트정	광동제약(주)	정	2460	12-04-01
648300550	알리셉트정	(주)그린제약	정	1383	08-03-01
656001230	알셉트정	알리코제약(주)	정	2460	12-04-01
649501580	알츠머정10mg	유니메드제약(주)	정	2109	08-02-01
655601350	알츠셉트정10mg	한올바이오파마(주)	정	2109	10-07-01
Donepezil HCL 10mg (주성분 코드 148601ATB)					
693900290	알츠필정	(주)셀트리온제약	정	2460	12-04-01
640002940	에이페질정10mg	씨제이제일제당(주)	정	2077	08-12-01
660702410	위더페질정10mg	위더스제약(주)	정	2109	10-12-01
644902420	중외도네페질정1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정	2109	11-07-01
671701150	케이셉트정10mg	한국콜마(주)	정	2109	07-09-01
698500440	하이도네정10mg	(주)테라젠이텍스	정	2259	12-04-01
642401720	하이셉트정10mg	영진약품공업(주)	정	2460	22-04-01
642002750	하이페질정10mg	현대약품(주)	정	1119	11-01-01
645302290	한림도네페질정10mg	한림제약(주)	정	2109	07-09-01
657201230	환인도네페질정10mg	환인제약(주)	정	1489	11-06-01
661904160	알리세질정10mg	영풍제약(주)	정	2,460	
625200560	뉴로케어정10mg	(주)화이트제약	정	2,460	
Donepezil HCL 10mg (주성분코드 148601ATD)					
643304970	뉴로페질오디정10mg	(주)종근당	정	1545	12-04-01

.....

643505540	도네질오디정10mg	한미약품(주)	정	1545	12-04-01
641904600	도멘탁속붕정10mg	보령제약(주)	정	1545	12-04-01
648506400	바로페질오디정10mg	신풍제약(주)	정	1545	12-04-01
651903480	실버셉트오디정10mg	명인제약(주)	정	1545	12-04-01
671804860	아네페질속붕정	대원제약(주)	정	1545	12-04-01
641602910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주)대웅제약	정	1545	12-04-01
640005900	에이페질에프디정10mg	씨제이제일제당(주)	정	1545	12-04-01
644701510	엘다임오디정10mg	에스케이케미칼(주)	정	1545	12-04-01
644913040	중의도네페질속붕정1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정	1545	12-04-01
Donepezil HCL 5mg (주성분코드 148602ATB)					
642800230	뉴로셉트정5mg	고려제약(주)	정	1405	08-01-01
643304830	뉴로페질정5mg	(주)종근당	정	2060	12-04-01
647800240	뉴토인정5mg	삼진제약(주)	정	1405	08-01-01
671800660	대원염산도네페질정5mg	대원제약(주)	정	2060	12-04-01
643500340	도네질정5mg	한미약품(주)	정	2060	12-04-01
657804460	도네트정5mg	하나제약(주)	정	1264	10-08-01
658600100	도네페트정5mg	이연제약(주)	정	1562	07-10-01
670300140	도네프정5mg	코오롱제약(주)	정	1562	08-01-30
645403430	도네필정5mg	제일약품(주)	정	1976	10-10-01
644000170	도페린정5mg	삼익제약(주)	정	1405	08-01-01
Donepezil HCL 5mg (주성분코드 148602ATB)					
621801580	도페질정	(주)한국파비스제약	정	1562	11-09-01
696600610	도피닐정5mg	일양바이오팜(주)	정	746	10-02-01
642704270	돈페질정5mg	동화약품(주)	정	1562	09-09-01
642903080	디멘셉트정5mg	일동제약(주)	정	2060	12-04-01
649601040	미라세트정5mg	대우제약(주)	정	1405	09-04-01

.....

648504600	바로페질정5mg	신풍제약(주)	정	1562	08-12-01
653000830	바스티아정	(주)한국파마	정	1527	11-10-01
646001350	브렌셉트정5mg	(주)메디카코리아	정	1405	08-01-01
649804270	셉트페질정5mg	명문제약(주)	정	1405	09-04-16
651902490	실버셉트정5mg	명인제약(주)	정	820	11-10-01
642505280	아리도네정5mg	동아에스티(주)	정	2060	12-04-01
641601790	아리셉트정	(주)대웅제약	정	2060	12-04-01
642100900	아리페질정5mg	(주)유한양행	정	1736	07-10-01
641802220	알도셉트정5mg	광동제약(주)	정	1405	08-01-01
656001240	알셉트정5mg	알리코제약(주)	정	1562	10-02-01
649501570	알츠머정5mg	유니메드제약(주)	정	2060	12-07-01
655601360	알츠셉트정5mg	한올바이오파마(주)	정	746	10-07-01
693900160	알츠필정5mg	(주)셀트리온제약	정	1405	09-12-01
640004320	에이페질정5mg	씨제이제일제당(주)	정	1661	08-12-01
660701430	위더페질정	위더스제약(주)	정	1405	08-08-01
671701160	케이셉트정5mg	한국콜마(주)	정	746	09-04-01
642401950	하이셉트정5mg	영진약품공업(주)	정	2060	12-04-01
642002760	하이페질정5mg	현대약품(주)	정	746	11-01-01
645303400	한림도네페질정5mg	한림제약(주)	정	1132	11-10-01
657201240	한인도네페질정5mg	한인제약(주)	정	991	11-10-17
625200550	뉴로케어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주)화이트제약	정	2,060	
644913790	중외도네페질정5밀리그램 (도네페질염산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정	2,060	
657502340	도네푸질정(도네페질염산염)	미래제약(주)	정	2,060	
661904170	알리세질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영풍제약(주)	정	2,060	
Donepezil HCL 5mg (주성분코드 148602ATD)					
643304980	뉴로페질오디정5mg	(주)종근당	정	1235	12-04-01

.....

643505550	도네질오디정5mg	한미약품(주)	정	1235	12-04-01
641901550	도멘탁속붕정5mg	보령제약(주)	정	1235	12-04-01
648506320	바로페질오디정5mg	신풍제약(주)	정	1235	12-04-01
651903540	실버셉트오디정5mg	명인제약(주)	정	950	12-04-01
641602900	아리셉트에비스정	(주)대웅제약	정	1161	12-04-01
640005410	에이페질에프디정5mg	씨제이제일제당(주)	정	991	12-04-01
644702830	엘다임오디정5mg	에스케이케미칼(주)	정	1235	12-04-01
644913390	중외도네페질속붕정5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정	1142	11-12-01
652903460	아트페질구강붕해필름5밀리그램	(주)서울제약	매	1235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24mg (주성분코드 385203ACR)					
643505470	갈라닐피알서방캡슐24mg	한미약품(주)	캡슐	2437	10-05-01
642802340	뉴멘타민서방캡슐24mg	고려제약(주)	캡슐	2437	11-01-01
646901420	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	(주)한국안센	캡슐	3336	10-03-01
651903340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24mg	명인제약(주)	캡슐	2437	11-02-01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24mg (주성분코드 385203ATR)					
642001120	타미린서방정24mg	현대약품(주)	정	2437	09-09-01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8mg (주성분코드 385204ACR)					
643500050	갈라닐피알서방캡슐	한미약품(주)	캡슐	1300	09-10-30
642802140	뉴멘타민서방캡슐8mg	고려제약(주)	캡슐	1300	09-12-01
646901400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	(주)한국안센	캡슐	1393	12-04-01
651903230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8mg	명인제약(주)	캡슐	1300	10-02-01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8mg (주성분코드 385204ATR)					
642001920	타미린서방정8mg	현대약품(주)	정	1300	09-09-01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16mg (주성분코드 385205ACR)					
643505460	갈라닐피알서방캡슐16mg	한미약품(주)	캡슐	1950	10-05-01
642802350	뉴멘타민서방캡슐16mg	고려제약(주)	캡슐	1950	11-01-01

.....

646901410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주)한국안센	캡슐	2460	12-04-01
651903350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16mg	명인제약(주)	캡슐	1950	11-02-01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16mg (주성분코드 385205ATR)					
642001930	타미린서방정16mg	현대약품(주)	정	1950	09-09-01
Memantine(as memantine 8.31mg) 10mg (주성분코드 190001ALQ)					
668000030	에빅사액	한국룬드벡(주)	g	1107	13-01-01
Memantine HCL 10mg (주성분코드 190001ATB)					
642400130	뉴로케이정	영진약품공업(주)	정	593	06-01-01
642700420	동화메만틴정	동화약품(주)	정	664	11-10-01
642801020	에이디메드정	고려제약(주)	정	845	12-04-01
642900500	메만토정10mg	일동제약(주)	정	826	05-10-01
644301130	메비탄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486	06-06-01
Memantine HCL 10mg (주성분코드 190001ATB)					
649805440	에만틴정	명문제약(주)	정	845	12-04-01
668000040	에빅사정	한국룬드벡(주)	정	825	13-01-01
650300340	디멘사정	진양제약(주)	정	845	12-04-01
651902310	펠로정10mg	명인제약(주)	정	834	12-04-01
653001550	알빅스정	한국파마	정	834	12-04-01
654300860	마빅스정	한국웨일즈제약(주)	정	540	06-04-01
657500710	아멘틴정	미래제약(주)	정	540	06-04-01
661900170	디멘틴정	영풍제약(주)	정	834	12-04-01
Memantine HCL 6.67mg (주성분코드190002ASY)					
650300330	디멘사건조시럽	진양제약(주)	g	414	07-03-01
Rivastigmine 1.5mg (주성분코드 224501ACH)					
653600770	엑셀론캡슐1.5mg	한국노바티스(주)	캡슐	1881	12-03-19
Rivastigmine 3mg (주성분코드 224503ACH)					

.....

653600780	엑셀론캡슐3.0mg	한국노바티스(주)	캡슐	1865	12-03-19
Rivastigmine 4.5mg (주성분코드 224504ACH)					
653600790	엑셀론캡슐4.5mg	한국노바티스(주)	캡슐	1922	12-03-19
Rivastigmine 6mg (주성분코드 224505ACH)					
653600800	엑셀론캡슐6.0mg	한국노바티스(주)	캡슐	1922	12-03-19
Rivastigmine 9mg (주성분코드 224506CPC)					
653601330	엑셀론패취5	한국노바티스(주)	매	1973	10-10-01
653005210	몬스티패취5(리바스티그민)	(주)한국파마	매	1,265	
657202580	리바메론패취5(리바스티그민)	환인제약(주)	매	1,425	
642507010	하라쇼패취5(리바스티그민)	동아에스티(주)	매	1,509	
642003270	스타그민패취5(리바스티그민)	현대약품(주)	매	1,509	
653804850	디누보패취5(리바스티그민)	신일제약(주)	매	1,677	
645404110	리바그민패취5(리바스티그민)	제일약품(주)	매	1,677	
674400300	리바덤패취5(리바스티그민)	아이큐어(주)	매	1,677	
649806350	리바론패취5(리바스티그민)	명문제약(주)	매	1,677	
655403090	리바스민패취5(리바스티그민)	일성신약(주)	매	1,677	
645905490	스텔론패취5(리바스티그민)	동광제약(주)	매	1,677	
657306060	스티그마패취5(리바스티그민)	(주)동구바이오제약	매	1,677	
670606600	휴온스리바스티그민패취5	(주)휴온스	매	1,677	
622700650	디멘큐어패취5(리바스티그민)	(주)삼양바이오팜	매	1,916	
648507050	리그민패취5(리바스티그민)	신풍제약(주)	매	1,916	
645604300	리바멘사패취5(리바스티그민)	대화제약(주)	매	1,916	
642203270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5	부광약품(주)	매	1,916	
642904880	브렉셀패취5(리바스티그민)	일동제약(주)	매	1,916	
644704140	윈드론패취5(리바스티그민)	에스케이케미칼(주)	매	1,916	
653601330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	한국노바티스(주)	매	1,973	

.....

Rivastigmine 18mg (주성분코드 224507CPC)					
653601340	엑셀론패취10	한국노바티스(주)	매	2073	12-08-28
653005220	몬스티패취10(리바스티그민)	(주)한국파마	매	1,320	
657202570	리바메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환인제약(주)	매	1,568	
642507020	하라쇼패취10(리바스티그민)	동아에스티(주)	매	1,586	
642003280	스타그민패취10(리바스티그민)	현대약품(주)	매	1,586	
653804860	디누보패취10(리바스티그민)	신일제약(주)	매	1,762	
645404120	리바그민패취10(리바스티그민)	제일약품(주)	매	1,762	
674400310	리바덤패취10(리바스티그민)	아이큐어(주)	매	1,762	
649806360	리바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명문제약(주)	매	1,762	
655403080	리바스민패취10(리바스티그민)	일성신약(주)	매	1,762	
645905500	스텔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동광제약(주)	매	1,762	
657306050	스티그마패취10(리바스티그민)	(주)동구바이오제약	매	1,762	
670606610	휴온스리바스티그민패취10	(주)휴온스	매	1,762	
622700640	디멘큐어패취10(리바스티그민)	(주)삼양바이오팜	매	2,014	
648507060	리그민패취10(리바스티그민)	신풍제약(주)	매	2,014	
645604310	리바멘사패취10(리바스티그민)	대화제약(주)	매	2,014	
642203260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10	부광약품(주)	매	2,014	
642904890	브렉셀패취10(리바스티그민)	일동제약(주)	매	2,014	
644704150	윈드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에스케이케미칼(주)	매	2,014	
rivastigmine 27mg (주성분코드 224508CPC)					
653602450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	한국노바티스(주)	매	2,592	2013-10-01
644704160	윈드론패취15(리바스티그민)	에스케이케미칼(주)	매	2,518	

.....

사. 혈관성 치매 치료약 목록

(13.1.1 적용분, 품명 가나다순)

코드	품명	제약회사명	단위	상한가 (원)	적용일자
Aspirin					
665001650	경보아스피린장용정	(주)경보제약	정	77	12-12-01
652600640	로날정	근화제약(주)	정	74	12-02-01
652601210	로날정100mg	근화제약(주)	정	28	12-02-01
669501040	린피스정	(주)씨티씨바이오	정	25	09-10-01
641100060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	바이엘코리아(주)	정	21	04-01-16
641100070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	바이엘코리아(주)	정	48	06-06-01
641901440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보령제약(주)	캡슐	43	11-01-01
641904800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	보령제약(주)	캡슐	30	09-09-01
696600880	서클베인장용정75mg	일양바이오팜(주)	정	24	11-09-01
648502200	신풍아스피린리신주	신풍제약(주)	병	300	08-06-01
648502210	신풍아스피린정500mg	신풍제약(주)	정	15	04-01-16
648502240	신풍어린이용아스피린정 100mg	신풍제약(주)	정	16	04-01-16
647302590	씨트리아스피린정 81mg	(주)씨트리	정	30	12-06-01
654004220	아나피린장용정100mg	아주약품(주)	정	77	13-01-01
661902150	아사톱장용정81mg	영풍제약(주)	정	25	09-09-01
641100270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바이엘코리아(주)	정	77	08-01-01
669803340	아스피어캡슐	구주제약(주)	캡슐	34	11-01-01
669905200	아스핀장용정	대한뉴팜(주)	정	25	10-12-01
641701170	알타질주	일양약품(주)	병	436	10-12-01
642400970	영진아스피린장용정	영진약품공업(주)	정	33	11-10-17
649700530	이엔타스정	크라운제약(주)	정	39	07-04-01
698502300	이텍스아스피린장용정100mg	(주)테라젠이텍스	정	77	12-11-01

.....

641701860	일양아스피린장용정100mg	일양약품(주)	정	77	12-06-01
670700650	초당아스피린장용정100mg	초당약품공업(주)	정	41	10-09-01
643503630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mg	한미약품(주)	정	61	11-10-01
621802380	에이스린장용정(아스피린)	(주)한국파비스제약	정	77	
640902600	아스피드정(아스피린)	(주)일화	정	77	
642104440	유한아스피린장용정(아스피린)	(주)유한양행	정	61	
643103610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	(주)바이넥스	정	77	
644003280	삼익아스피린장용정	삼익제약(주)	정	77	
644308680	아센정(아스피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77	
644602860	바소피린장용정(아스피린)	조아제약(주)	정	77	
647803970	삼진아스피린장용정	삼진제약(주)	정	77	
648103320	경동아스피린장용정	경동제약(주)	정	77	
648203710	유영아스피린장용정100mg	(주)유영제약	정	77	
648507210	신평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	신평제약(주)	정	77	
648602640	씨엠지아스피린장용정100mg	(주)씨엠지제약	정	77	
649404590	영일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	영일제약(주)	정	77	
649806380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	명문제약(주)	정	77	
650204120	아르테빈캡슐(아스피린장용펠렛)	안국약품(주)	캡슐	77	
651503460	하원아스피린장용정100mg	(주)하원제약	정	77	
652104830	트롬피린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	(주)한독	정	30	
652301090	에이에스피장용정100mg(아스피린)	(주)파마킹	정	77	
654304840	아스쿨장용정(아스피린)	오스틴제약(주)	정	77	
654304950	오스틴아스피린캡슐	오스틴제약(주)	캡슐	77	
656003390	린아스장용정(아스피린)	알리코제약(주)	정	77	
657305860	아스텍트정(아스피린)	(주)동구바이오제약	정	77	
658501600	아스필장용정(아스피린100밀리그램)	익수제약(주)	정	77	

.....

662502850	넥스핀장용정100mg(아스피린)	(주)넥스팜코리아	정	77	
663605610	프라임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	한국프라임제약(주)	정	77	
664900940	아스테린정(아스피린)	성원애드콕제약(주)	정	77	
665506350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한국유니온제약(주)	정	77	
669501400	린피스에프정(아스피린)	(주)씨티씨바이오	정	77	
670500540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밀리그램(아스피린장용과립)	(주)보령바이오파마	캡슐	77	
671805730	대원아스피린하트정100mg(아스피린)	대원제약(주)	정	77	
693200960	글로벌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	(주)한국글로벌제약	정	77	
Cilostazol					
651805830	기네스타정	청계제약(주)	정	402	11-05-01
644702860	노크레스정	에스케이케미칼(주)	정	250	12-04-01
654300270	뉴타정	오스틴제약(주)	정	250	12-04-01
694000170	대웅실로스타졸정50mg	대웅바이오(주)	정	250	12-07-01
Cilostazol					
648100500	로사졸정	경동제약(주)	정	250	12-07-01
648500490	로스탈정100mg	신풍제약(주)	정	488	12-04-01
643300500	로젠스정	(주)종근당	정	250	12-07-01
671700280	로타졸정	한국콜마(주)	정	250	12-04-01
644702910	리넥신정	에스케이케미칼(주)	정	565	12-08-01
653402280	니네틸정	동국제약(주)	정	483	11-04-01
642301660	삼성실로스타졸정	삼성제약공업(주)	정	250	12-08-01
663604270	새넥신정	한국프라임제약(주)	정	483	11-01-01
644901250	스미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정	250	12-04-01
671801980	스타졸정	대원제약(주)	정	250	12-07-01
642702100	시렌탈정	동화약품(주)	정	250	12-04-01
640900510	실라드정	(주)일화	정	250	12-12-01

.....

668900670	실로브이정	(주)엘지생명과학	정	488	12-07-01
644301850	실로스탄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488	12-04-01
698400110	실로스탈정	한국바이오켄제약(주)	정	488	12-09-01
669801790	실로스탄정	구주제약(주)	정	250	12-04-01
649401270	실로타정	영일제약(주)	정	250	12-04-01
669902380	실로탈정	대한뉴팜(주)	정	250	12-07-01
663601010	실베스타정	한국프라임제약(주)	정	250	12-04-01
651500840	실스타정	(주)하원제약	정	250	12-04-01
643501440	실타졸정	한미약품(주)	정	243	11-10-01
650201290	안국실로스타졸정	안국약품(주)	정	250	12-04-01
656001380	유니타졸정	알리코제약(주)	정	250	12-04-01
665000610	케이비스타졸정	(주)경보제약	정	250	12-04-01
649900280	프레탈서방캡슐	한국오츠카제약(주)	캡슐	702	12-04-01
656203030	한실로정	한불제약(주)	정	250	12-10-01
655602730	한울실로스타졸정	한울바이오파마(주)	정	250	12-04-01
644308510	실로스탄씨알정(실로스타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1,074	
646201100	실로젠정(실로스타졸)	(주)뉴젠팜	정	250	
648100510	로사졸정100밀리그램(실로스타졸)	경동제약(주)	정	488	
649102200	실로스토정(실로스타졸)	한국휴텍스제약(주)	정	250	
649900190	프레탈정50밀리그램(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주)	정	248	
649900200	프레탈정100밀리그램(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주)	정	483	
654004440	씨타졸정100밀리그램(실로스타졸)	아주약품(주)	정	488	
657805060	실로탄정100밀리그램(실로스타졸)	하나제약(주)	정	488	
665501650	실로타졸정(실로스타졸)	한국유니온제약(주)	정	250	
667100130	실로졸정(실로스타졸)	한국약품(주)	정	250	
668902280	실로브이정50밀리그램(실로스타졸)	(주)엘지생명과학	정	250	

.....

642203390	써큐민정	부광약품(주)	정	402	
657202300	써큐스타정	환인제약(주)	정	402	
Clopidogrel					
646800430	건일클로피도그렐정	건일제약(주)	정	1164	12-04-01
671800940	대원클로피도그렐정	대원제약(주)	정	1164	12-04-01
652600700	맥스그렐정	근화제약(주)	정	1164	12-04-01
641904660	비알빅스정	보령제약(주)	정	1252	11-12-22
657400690	빅토그렐정	성광제약(주)	정	1164	13-01-01
645700780	삼아클로피도그렐정	삼아제약(주)	정	1164	12-04-01
649501080	세레나데정	유니메드제약(주)	정	1164	12-04-01
Clopidogrel					
645201660	슈넬클로피도그렐정	슈넬생명과학(주)	정	1164	12-08-01
644003250	에라빅스정	삼익제약(주)	정	1164	13-01-01
649402010	영일클로피도그렐정	영일제약(주)	정	1164	12-06-18
648102580	인히플라트정	경동제약(주)	정	1474	09-02-01
648101690	인히플라트정	경동제약(주)	정	1164	12-04-01
641701940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	일양약품(주)	정	1164	12-04-01
670301430	코빅스정75mg	코오롱제약(주)	정	1164	12-04-01
655604140	코아그렐정	한올바이오파마(주)	정	461	11-02-01
643306250	코프리그렐캡슐	(주)종근당	캡슐	1209	12-06-01
646002240	큐로빅스정	(주)메디카코리아	정	830	06-11-22
655402080	큐오렐정	일성신약(주)	정	1164	12-04-01
661901650	크라빅스정	영풍제약(주)	정	1164	12-04-01
650301460	크리빅스정	진양제약(주)	정	1164	12-04-01
679800690	크로피도정	(주)티디에스팜	정	1140	06-09-01
644307080	클라빅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1164	12-04-01

.....

642102390	클로그렐정75mg	(주)유한양행	정	1164	12-04-01
653402630	클로렐정	동국제약(주)	정	1164	12-12-01
670606340	클로린정75mg	(주)휴온스	정	1164	13-01-01
657803150	클로베인정	하나제약(주)	정	1164	12-04-01
694000090	클로본스정	대웅바이오(주)	정	1026	10-04-01
668901840	클로브이정	(주)엘지생명과학	정	1048	12-04-01
655602070	클로비드정	한올바이오파마(주)	정	700	11-09-23
641602350	클로아트정	(주)대웅제약	정	1164	12-04-01
650202070	클로팩트정	안국약품(주)	정	1164	12-04-01
657305790	클로피나정	(주)동구바이오제약	정	1164	13-01-01
645603940	클로피도정	대화제약(주)	정	1164	12-04-01
642703010	클로피정	동화약품(주)	정	1164	12-04-01
646201930	클로피젠정	(주)뉴젠팜	정	1164	12-05-01
671701490	클로핀정	한국콜마(주)	정	700	09-01-01
668901840	클로프리정	(주)엘지생명과학	정	1558	10-10-01
640902390	클리델정	(주)일화	정	1164	13-01-01
670000670	태평양제약클로피도그렐정	(주)태평양제약	정	1025	11-06-01
698001600	트로빅스정	콜마파마(주)	정	513	12-08-01
642902310	트롬빅스정	일동제약(주)	정	917	11-10-01
621802300	파비클렌정	(주)한국파비스제약	정	1164	12-12-01
Clopidogrel					
698502340	프라빅센정	(주)테라젠이텍스	정	1164	12-12-01
653802750	프라빅정	신일제약(주)	정	632	11-06-01
653003970	프레토정	(주)한국 파마	정	1164	12-06-18
697100330	프로빅스정	(주)한국피엠지제약	정	1164	13-01-01
641803320	프로빅정	광동제약(주)	정	700	09-01-01

.....

643304110	프리그렐정	(주)종근당	정	919	11-12-22
642801570	플라메드정	고려제약(주)	정	633	11-06-01
652900890	플라벨정	(주)서울제약	정	1164	12-08-01
642503760	플라비톨정	동아에스티(주)	정	1164	12-12-01
647802630	플래리스정	삼진제약(주)	정	1154	12-04-01
663300770	플빅스정	에스에스팜(주)	정	1164	12-04-13
663605510	플빅스정	한국프라임제약(주)	정	1164	13-01-01
643504050	피도글정	한미약품(주)	정	877	11-09-30
645302760	피도빅스정	한림제약(주)	정	1164	12-09-10
645403420	필그렐정	제일약품(주)	정	1164	12-04-01
648504210	하이빅스정	신풍제약(주)	정	1164	12-04-01
649101260	휴로픽스정	한국휴텍스제약(주)	정	1164	12-04-13
622801740	클피도엠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마더스제약	정	1,164	
625200240	아트크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화이트제약	정	1,164	
625800170	클피도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메디스제약(주)	정	1,164	
640006170	클로스원캡슐	씨제이헬스케어(주)	캡슐	1,209	
642003170	현대클로피도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현대약품(주)	정	1,164	
642203410	클로피드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부광약품(주)	정	513	
642306540	클로젝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삼성제약(주)	정	1,164	
643703630	플라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국제약품공업(주)	정	1,164	
644308290	클라빅신듀오캡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캡슐	1,209	
645403640	클로피린캡슐	제일약품(주)	캡슐	1,209	
647203680	케이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주)한국코러스제약	정	1,164	
647302700	클로피렌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씨트리	정	1,164	
648203620	크로피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주)유영제약	정	1,164	
648602500	로피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주)씨엠지제약	정	1,164	

.....

649604230	클로필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대우제약(주)	정	1,164	
649806200	명문클로피도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명문제약(주)	정	1,164	
650302890	피도글에이캡슐	진양제약(주)	캡슐	1,209	
651204080	크린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삼천당제약(주)	정	1,164	
651903680	슈퍼피린캡슐	명인제약(주)	캡슐	1,209	
652101570	플라빅스정75밀리그램(클로피도그렐)	(주)한독	정	1,164	
652301130	림피젠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주)파마킹	정	1,164	
654004280	아나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아주약품(주)	정	1,164	
656701900	글로그렐정75밀리그램(클로피도그렐황산염)	한국넬슨제약(주)	정	1,164	
657502360	아라한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미래제약(주)	정	1,164	
658602830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	이연제약(주)	정	1,164	
660702620	피도그린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위더스제약(주)	정	1,164	
661604090	알피클로피아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알피코프	정	1,164	
664900930	플라넥신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성원애드록제약(주)	정	1,164	
665001700	경보클로피도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주)경보제약	정	1,164	
665504160	크로피겔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한국유니온제약(주)	정	1,164	
669700090	뉴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에스피씨(주)	정	1,164	
669804280	바소빅스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구주제약(주)	정	1,164	
670606040	아리그렐캡슐	(주)휴온스	캡슐	1,209	
684500770	클로제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화일약품(주)	정	1,164	
689102990	클빅스정75밀리그램(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비티오제약	정	1,164	
693200940	글로피도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주)한국글로벌제약	정	1,164	
696601030	일양바이오클로피도그렐황산염정75밀리그램	일양바이오팜(주)	정	1,164	
698400250	클라스핀캡슐	한국바이오켄제약(주)	캡슐	1,209	
Ticlopidine					
652600350	근화염산티클로피딘250mg	근화제약(주)	정	456	10-04-01

.....

648502390	신풍티클로피딘정	신풍제약(주)	정	432	11-10-17
644501280	유크리드정250/80mg	(주)유유제약	정	845	11-10-01
698000350	크로딘정	비알엔사이언스(주)	정	665	10-07-01
644304270	타크론정2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	405	11-10-17
663603120	티크민정250/80mg	한국프라임제약(주)	정	578	09-04-01
652101480	티클로돈정250mg	(주)한독약품	정	487	12-07-01
651502350	하원티클로피딘정250mg	(주)하원제약	정	463	09-02-01
644500930	유유크리드정(염산티클로피딘)	(주)유유제약	정	487	
644500940	유유크리드정100mg(염산티클로피딘)	(주)유유제약	정	203	
652101470	티클로돈정100밀리그램(염산티클로피딘)	(주)한독	정	203	
Triflusal					
654300440	도리스캡슐	오스틴제약(주)	캡슐	419	06-03-01
651900210	디스그렌장용과립캡슐	명인제약(주)	캡슐	514	11-09-23
655901010	리살캡슐	(주)드림파마	캡슐	419	06-03-01
651900500	명인디스그렌캡셀	명인제약(주)	캡슐	476	12-07-01
648502380	신풍트리플루살캡슐	신풍제약(주)	캡슐	409	11-10-01
657501160	트루살캡슐	미래제약(주)	캡슐	418	11-02-01
657200840	트리살캡셀	환인제약(주)	캡슐	356	11-10-01
648201850	트리스캡셀	(주)유영제약	캡슐	476	11-07-01
Triflusal					
657802030	티그린캡슐	하나제약(주)	캡슐	416	11-02-01
643503380	프라스피린캡슐	한미약품(주)	캡슐	418	11-10-01
647802640	플루런트캡슐	삼진제약(주)	캡슐	476	11-07-01
669803320	휴리살캡슐	구주제약(주)	캡슐	419	10-03-18
Wafarin					
645600390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대화제약(주)	정	30	06-06-01

.....

645600400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5mg	대화제약(주)	정	63	03-10-01
645401440	제일쿠마딘정	제일약품(주)	정	72	06-06-01
657801910	쿠파린정	하나제약(주)	정	72	06-02-01
657801900	쿠파린정2mg	하나제약(주)	정	30	06-05-01

2. 기타 관련 자료

가. 치매관리사업 슬로건

* 2008년

슬로건
- 치매 없는 건강한 서울
- 우울한 노년에서 우아한 노년으로
- 치매 예방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희망찬 노년의 필수조건
- 당신의 기억력은 건강하십니까? 지금 바로 치매지원센터에서 체크하세요.
- 우리는 날마다 청춘
- 15분 조기검진, 15년 치매예방 - 치매검진 미리 미~리, 노년 행복 오래 오~래 - 생활 속의 치매예방, 가족행복 지켜준다.
- 깜박하는 기억력! 우선 치매센터와 상담하세요. - 치매조기검진!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 치매 없는 세상,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 치매!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 치매조기검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 유쾌한 노후! 명쾌한 000치매지원센터와 함께 하십시오!!

※ 위의 슬로건은 2008 치매관리사업 워크숍에서 제안한 슬로건임

.....

* 2009년 굿바이 치매, 건강한 노년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 2010년



나. 천만시민 기억친구 캐릭터 소개

기억친구 다섯 가지 캐릭터는 치매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억친구들의 손을 상징합니다. 기억친구 캐릭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친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오케이 친구

"필요한 도움 OK!"



옴뚱 친구

"칭찬은 충추게 해요!"



하이파이브 친구

"힘을 모아 도움을!"



사랑 친구

"모든 가정에 평화롭!"



악속 친구

"다함께 악속해요!"

.....

다. 치매관련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현황				
명칭	위탁기관	주소	대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 3431-7200	
□ 치매지원센터 현황(개소년도 기준)				
	자치구	위탁기관	주소	연락처
1	성북구	건국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화랑로 63(5층)	918-2223
2	성동구	서울의료원(신경과)	서울숲길 54(2층)	499-8071~4
3	마포구	여의도성모병원(신경과)	대흥로 122	3272-1578~9
4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정신건강의학과)	성내로 45	489-1130~2
5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	홍릉로 81(1층)	957-3062~4
6	도봉구	도봉병원(신경과)	마들로 650(4층)	955-3591~3
7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신경과)	연서로34길 11,1(1층)	388-8233~4
8	양천구	이화여대목동병원(신경과)	가로공원로 146(3층)	2698-8680~1
9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관악로 145(3,4층)	879-4910
10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	염곡말길9 내국동종합시설 4층	591-1833
11	송파구	보훈병원(정신건강의학과)	총민로 184(1층)	425-1694~6
12	광진구	건국대병원(신경과)	긴고랑로 110(3층)	450-1381
13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정신건강의학과)	경인로 397(4층)	2612-7041~4
14	금천구	고려대구로병원(신경과)	시흥대로123길 11(6,7층)	3281-9082~6
15	종로구	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평창문화로 50	3675-9001~2
16	중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 병원(신경과)	퇴계로 12길 17	2238-3400
17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신경과)	당산로 29길 9	831-0855~8
18	동작구	시립보라매병원(정신건강의학과)	남부순환로 2025	598-6088
19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신경과)	일원로 81	568-4203~5
20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신경과)	녹사평대로 150	790-1541~3
21	종랑구	서울특별시북부병원(신경과)	동일로 608(2,3층)	435-7540
22	강북구	고려대안암병원(신경과)	4.19로 18	991-9830~2
23	노원구	상계백병원(정신건강의학과)	노해로 437	911-7778
24	서대문구	연세대신촌세브란스병원(정신건강의학과)	연희로 290	379-0183
25	강서구	이대목동병원(신경과)	화곡로 371경향교회회관(3층)	3663-0943~6

.....

□ 서울특별시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부서 현황

보건소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시청	종구 세종대로 110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02-2133-7586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삼성로 628	보건과 방문보건팀	02-3423-7124
강동구 보건소	강동구 성내로 45	보건의료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5-6803
강북구 보건소	강북구 한천로 897	지역보건과 노인건강관리팀	02-901-7772
강서구 보건소	강서구 공항대로 561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	02-2600-5892
관악구 보건소	관악구 관악로 145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881-5585
광진구 보건소	광진구 자양로 117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02-450-1962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60-2423
금천구 보건소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2-2627-2681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 노해로 437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02-2116-4357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지역보건과 재활간호팀	02-2289-8488
동대문구 보건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2127-5393
동작구 보건소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20-1428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3153-9062
서대문구 보건소	서대문구 연희로 242	의약과 가족보건팀	02-330-1738
서초구 보건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건강관리과 건강지원팀	02-2155-8069
성동구 보건소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질병예방과 건강지원팀	02-2286-7093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화랑로 63	의약과 가족보건팀	02-920-1917
송파구 보건소	송파구 올림픽로 326	의약과 방문보건팀	02-2147-3416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목동서로 339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2620-4332
영등포구 보건소	영등포구 당산로 123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2-2670-4752
용산구 보건소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의약과 방문보건팀	02-2199-8145
은평구 보건소	은평구 은평로 195	의약과 방문보건팀	02-351-8276~9
종로구 보건소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2-2148-3601
중구 보건소	중구 다산로 39길 16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3396-6373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 봉화산로 179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02-2094-0820

.....

□ 광역치매센터

명 칭	위탁기관	주 소
국립중앙치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308호
강원도광역치매센터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보건의료센터 7508호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1층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동대로 87번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5층
대구광역치매센터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칠곡 경북대학교병원2층
대전광역치매센터	충남대병원 신경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2층
부산광역치매센터	동아대병원 신경과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10층
인천광역치매센터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길병원 내) 가천뇌과학연구원 4층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3 혜성빌딩 2층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번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충북대병원 신경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제주도광역치매센터	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 병원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순천 성가톨릭병원 신경과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암센터 1층

.....

라. 치매관련 의료기관

1) 치매클리닉 현황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02-2019-2380
	삼성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02-3410-3599
	서울의료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000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445	02-2224-2266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02-2626-1250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12	02-2030-5114
	을지병원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길 14	02-970-8303
	인제대 상계백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02-950-1082
	가톨릭버병원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665-6	02-955-1772
	경희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54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02-870-211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228-5570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02-2258-5443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2-2290-8419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02-920-5505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02-3010-4630
	이대 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02-2650-5114
	성애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길 22	02-8407-259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02-3779-1323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00	02-2639-5460
	대림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78-13	02-8299-000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02-709-923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2451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02-2260-7311	
인제대 서울백병원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	02-2270-0063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02-6299-1505	

.....

경기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031-900-0480
	한양대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031-560-2114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031-787-2720
	분당 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5874
	오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오산시 궏동 543	031-370-2300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052
	고려대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140
	메트로요양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031-467-9000
	효자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3	031-288-0500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032-460-2696
	은혜병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14-7	031-562-5101
	인하대병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206	032-890-3880

2) 유관단체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1666-0921	http://www.nid.or.kr/
실종노인상담센터	02-777-0182	http://www.elder119.or.kr
120 다산콜센터	120	http://120.seoul.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c.or.kr
장기요양보험제도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치매협회	02-762-0710	http://www.silverweb.or.kr
한국치매가족협회	02-431-9963	http://www.alzza.or.kr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www.koreanurse.or.kr
대한치매학회	02-587-7482	http://www.thementia.co.kr
대한노인정신의학회	02-6203-2595	http://www.kagp.or.kr
한국간호과학회	02-567-7236	http://www.kan.or.kr
노인간호학회	02-3700-3681	http://new.gnursing.or.kr

.....

3) 서울시 25개자치구치매지원센터 협약 병원 및 의원 현황

자치구명	병원 및 의원 명칭	주 소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세란병원(신경과)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256
중구	국제성모병원	인천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서울백병원	서울시 중구마른내로9
	서울중앙의료의원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송도병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 78
용산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성동구	서울의료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
	해민병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 (자양동)
	한마음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구의동)
	연세 조흥근 내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147(중곡3동)
	현대 정형외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67(중곡2동)
	김신응 내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5길 18(자양동)
	서울가정의원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57-55
	노태영 내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5(중곡동)
동대문구	문경서 정신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90(중곡동)
	자양한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3길 10(자양동)
	경희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회기동)
	삼육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82(회경동)
	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시 무학로124(용두동)
중랑구	맑은 수 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44
	마음과 마음 의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40-11 동양플라자 3층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의료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녹색병원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
	삼육서울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로하스동서울요양병원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4
성북구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서울시 중랑구 목동 239-53
	한걸음요양병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16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성북성심의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81
	성북중앙병원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72
	성북참노인전문병원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1길 71
	온누리병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71
강북구	삼육서울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척병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7길8
	고대안암병원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서울현대병원	서울시 강북구 번동 463-44

도봉구	도봉병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20
	경희 늘푸른 노인전문병원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37
	다나병원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29
	성모휴정신과의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5
	가화실버병원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51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서울의원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0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시 갈현로7길 49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시 백련산로 90
	스마일영상의학과의원	서울시 서대문구 흥제동330-66
	청구성심병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73
	하나효요양병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49 4,5,6,7,8,9층
	연세노블병원	서울시 서오릉로 37
	서부병원	서울시 은평로 133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정신건강의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스마일영상의학과의원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51 흥제빌딩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동신병원(신경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강북삼성병원(신경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마포구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노정균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66-1
	주문희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44
	김유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50 3층
	미소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II 207호
	DMC연세의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3층 307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신경과)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서남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홍익병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27
강서구	이대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097
	예인내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05-3 미라클빌딩 5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고려MS방사선과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68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65
	아름다운미래정신과의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34.501호 나인스에비뉴2층
	미소들 요양병원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0나길 88-41
금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신경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구로동)
	의료법인희명종합병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시흥동)

.....

영등포구	(의료법인)성애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길 22(신길동)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대림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대림동)
	강남성심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
	한강성심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
동작구	명지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관악구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서초구	가람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554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강남구	휴먼영상의학센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21- K_TOWER 3층
	삼성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71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청담참튼튼병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13
	강남베드로병원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송파구	강남을지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2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 61길 53
강동구	서울병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90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50(길동)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61길 53(둔촌동)
	달려라병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65(길동)
	강남신경정신과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천호동)
	강원릉신경과정신과의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27 일동통상천호빌딩(천호동)
	김종하정신과의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23 건영빌딩(길동)
	김형철신경과의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7(길동)
	명일M정신과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645(명일동)
	이수철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37(천호동)
	현정신과의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강동성모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51(길동)
	동부센트럴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98길 8(암사동)
	연세영동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02 2층일부, 3,4,5,6층(천호동)
	예담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61(길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진향도로61길 53(둔촌동)	
힐링요양병원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84 5,6층(천호동)	

마. 기타 참고 자료(각종 서식류)

- 1) 조기검진 서식(별도 첨부)
- 2) 등록관리 서식(별도 첨부)
- 3)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조사 서식(별도 첨부)
- 4) 정보업무 요청 공문 서식(별도 첨부)

.....

조기검진 서식

1-① 치매 무료검진 안내	263
1-② 치매 선별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	264
1-③ 치매 선별 검사지(MMSE-DS)	265~269
1-④ 치매 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270
1-⑤ 치매검진 결과 보고(정상).....	271
1-⑥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인지저하).....	272
1-⑦ 치매 정밀검진 1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	273
1-⑧ 치매 정밀검진 2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	274
1-⑨ 임상치매평가(Clinical Dementia Rating : CDR)척도.....	275~276
1-⑩ 치매검진 · 등록 관리 기록부 표지.....	277
1-⑪ 치매 원인확진 검진 동의서.....	278
1-⑫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비용 청구서.....	279~280
1-⑬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	281
1-⑭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여부 통지.....	282~283
1-⑮ 조기검진 사업목표.....	284

.....

치매 무료검진 안내

치매Bye 행복Hi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의 모든 건강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 본 무관장은 노인복지법 제 29조 치매관리사업에 의거하여 치매무료검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치매Bye 행복Hi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Bye 행복Hi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예방등록 관리 지역자원 연계

* 본 무관장은 노인복지법 제 29조 치매관리사업에 의거하여 치매무료검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치매 선별검진 예약 및 시행대장

날짜: 년 월 일

예약시간	등록번호	성명	성별	연령	전화번호	시행결과	결과통보	정밀검진 1단계 예약	비고

.....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

(Korea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 MMSE-DS)

검사자는 “지금부터 000님의 기억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로 검사를 시작한다.

	틀림	맞음
01.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02.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03. 오늘은 며칠입니까? 0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5. 지금은 몇 월입니까? 0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 특별시/ 광역시입니까? 07.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08. 여기는 무슨 구/동/읍/면입니까? 0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10.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1.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000 님께서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0 0 0	1 1 1
12.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0 0 0 0	1 1 1 1 1

	틀림	맞음
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 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4. [실제 시계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실제 연필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16.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오른손으로 받는다	0	1
반으로 접는다	0	1
무릎 위에 놓는다.	0	1
17.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그대로 그려 보세요.		
	0	1
18.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9. “티끌 모아 태산”은 무슨 뜻입니까?	0	1

총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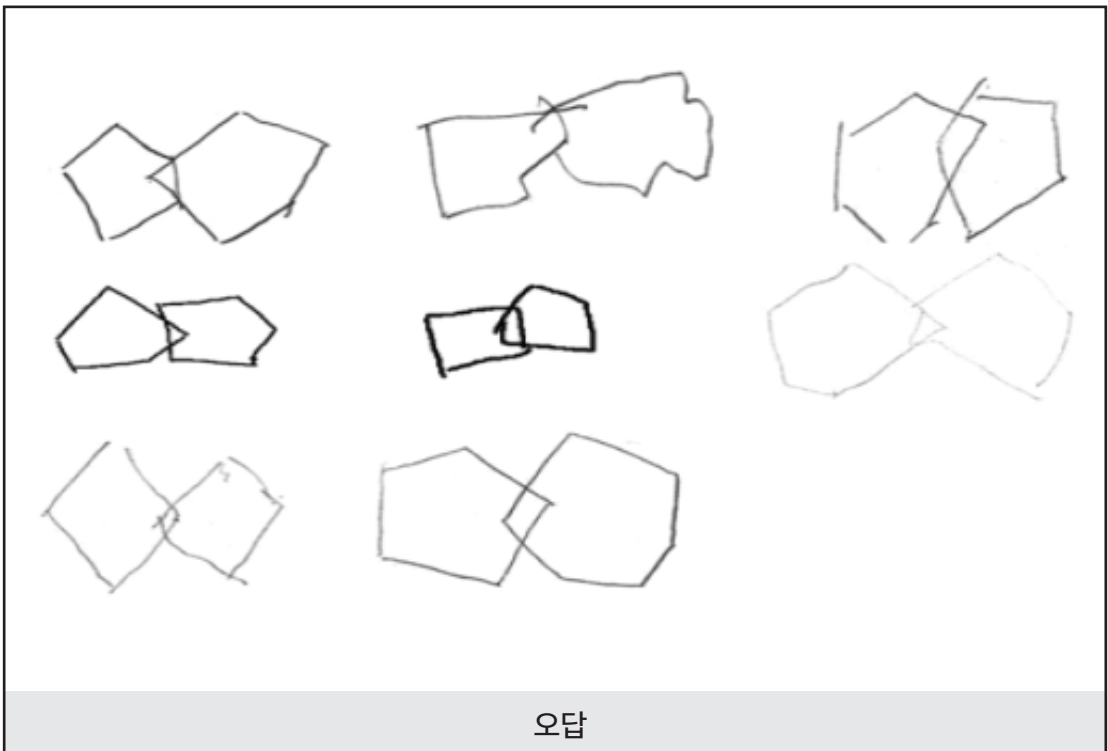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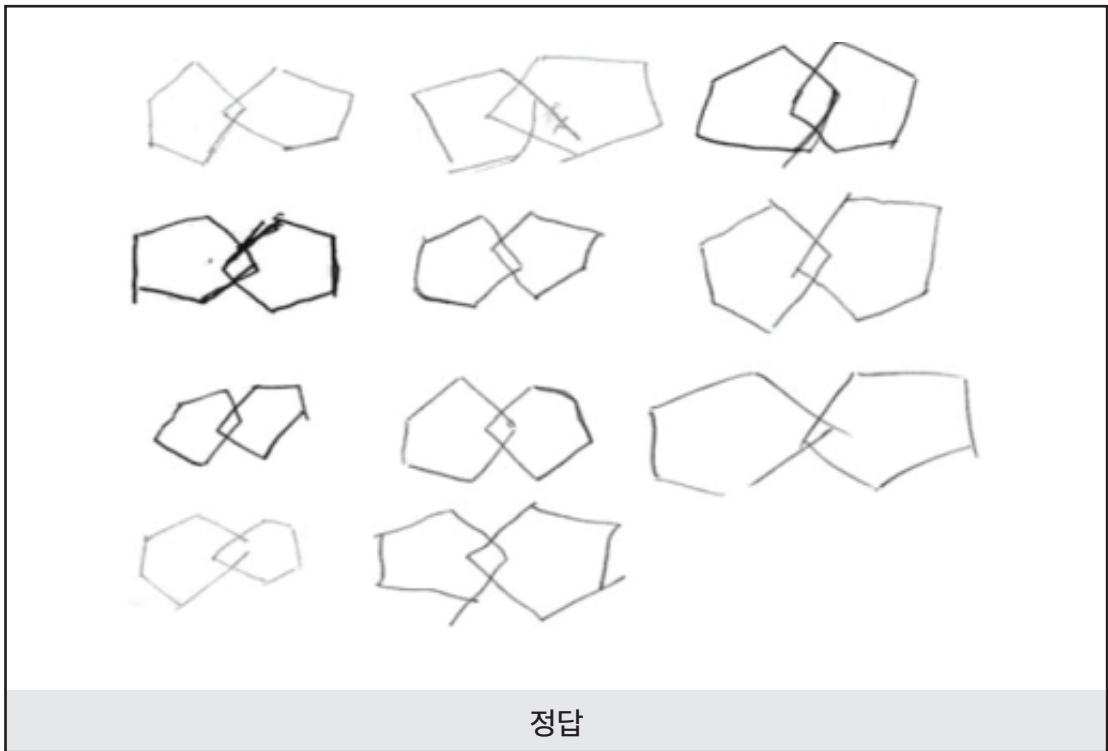
.....

채점 기준

문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게 4자리 숫자로 대답하여야 정답으로 한다(1점) ■ 4가지를 모두 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재질문한다. 가령, 2009년을 “9년”과 같이 대답하는 경우 정확한 4자리 숫자로 대답하도록 한다. ■ 해당 연도를 정답으로 하며 ‘기축년’등은 오답으로 한다. 만약 피검자가 ‘기축년’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 맞더라도 “숫자로 대답해 보세요”라고 재 질문하여 숫자로 연도를 대답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한다.
문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 5월을 봄, 6, 7, 8월을 여름, 9, 10, 11월을 가을, 12, 1, 2월을 겨울로 한다(1점) ■ 간절기에는 최대 2주의 간격 범위에서 앞으로 올 계절 또는 지나간 계절을 대답하여도 정답으로 한다. “3월 9일”인 경우 “겨울”이라고 응답하여도 정답으로 한다. “8월 24일”인 경우 “가을”이라고 응답하여도 정답으로 한다.
문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문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일 : 토요일 ■ 요일에 대한 개념을 도와 줄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보기로 들어주고 특정 요일만 언급하지 않는다
문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력으로 월과 일이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 몇 월을 숫자 대신 정월 혹은 동짓달로 답하여도 정답으로 한다. ■ 참고 : 동짓달: 11월, 선달 : 12월, 그믐 : 그 달의 마지막 날
문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으면 한 문항 당 1점씩 채점한다. ■ 검사장소의 행정구역에 따라 상위 3단위를 차례로 한 문항 당 하나씩 질문한다. ■ “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를 들어 줄 경우에는 해당 도가 아닌 다른 2개의 도를 설명한다. 가령,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인 경우, “충청도, 전라도와 같은 도의 이름을 말씀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도입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
문항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가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입니까?”라고 한 번에 질문하면 안 된다.
문항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 지역에 맞게 도/특별시/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중 한 가지씩만 선택하여 질문한다.
문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게 답한 경우 정답으로 하며 두 개를 답한 경우 하나를 고르도록 지시한다.
문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이름 : “병원”, “보건소”와 같이 광범위한 대답은 오답으로 한다. ■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적인 이름은 정답으로 한다. ■ 해당 검사 장소의 검사자들이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도록 한다.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게 따라 말한 단어의 수를 점수로 채점한다.(3점 만점) ■ 반드시 첫 번째 시도에 성공적으로 따라 말한 단어의 수로 채점해야 한다. 반복시도에서 첫 반응보다 더 많은 단어를 등록하더라도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반드시 ‘나무, ‘자동차, ‘모자’ 세 단어를 한꺼번에 불러주고 따라 하도록 해야 한다. 피검자가 ‘나무’하면, ‘나무’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지식할 때 ‘끝까지 듣고’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 피검자가 세 단어를 모두 말하지 못하면,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따라 말하게 한다. 세 번째에도 실패하면 그냥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p>문항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이 틀렸더라도 틀렸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계속한다. ■ 피검자가 “83”이라고 말했다고 할 때 “83”에서 7을 빼면 이라고 하지 않는다. ■ 맞는 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가령 100-7=92, 85...라고 대답하는 경우 85는 정답으로 한다. ■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10에서 3을 뺀다. 이 때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첫 시행과 기억 회상 사이에 지연시간(약 1분 정도)을 유지한다. ■ 만약 첫 시행에서(100에서 7을 빼면)7을 뺄 수 없는 숫자를 답한 경우(예를 들어 3이라고 했다 면) 다시 한번 지시를 준다. ■ 문항이 끝나기 전에 7을 뺄 수 없는 숫자로 대답하면 중단하고 그 시점까지 수행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며, 간단한 과제로 기억회상과의 지연시간(약 1분)을 유지한다.
<p>문항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등록 단계에서 불러준 세 단어를 회상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회상한 단어 수로 채점한다. ■ 힌트는 제공하지 않는다.
<p>문항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나 사투리로 대답하여도 확인하여 맞으면 정답으로 한다. ■ 사투리가 맞는 지의 여부는 보호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 실제 연필과 시계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검사 전에 필히 도구들을 준비한다.
<p>문항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만 불러 준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집중하여 듣도록 함 ■ 듣지 못했다고 해도 반복하여 불러주면 안됨 ■ 평소 말하는 속도로 또박또박 ■ 모두 정확하게 따라 해야 1점, 한 글자라도 틀리면 0점
<p>문항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만 불러 준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집중하여 듣도록 한다. ■ 종이를 건네줄 때에는 책상 위에 놓지 말고 한 손으로 건네준다. ■ 지시할 때 ‘오른손’, ‘반’, ‘무릎 위’를 강조하여 말한다. ■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피검자에게는 ‘왼손’으로 바꿔 지시한다. ■ 듣지 못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시를 반복해 주면 안 된다. ■ 피검자의 오른손을 보지 않고 지시하며 지시가 다 끝난 다음에 종이를 건네준다.
<p>문항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개의 각이 잘 유지되어 있는 오각형 두 개가 겹쳐져, 가운데에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그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정답이다. ■ 정확한 cm 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이 5개가 있으면 정답으로 하며, 각 변 사이 간격은 최대 0.3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오답으로 한다. <참조1>
<p>문항 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입으려고” 등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하면 정답으로 채점한다. ■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웃을 어째서 빨아 입나요?”라거나 “웃을 빨아서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으로 부연 설명할 수 있다.
<p>문항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조그만 것을 모아 크게 된다. 아껴야 한다. 등의 내용이면 정답으로 채점한다.

<참조 1> 도형모사 정답 / 오답 예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성명		등록번호	□□-□□□□□□	검진차수	차
----	--	------	-----------	------	---

선별검진

검진일		검진 시행자	
검진 장소	① 치매지원센터 ② 대상자 집 ③ 수탁병원 ④ 기타 ()		
검진 도구	① MMSE-KC ② K-MMSE ③MMSE-DS	MMSE 점수	_____ 점
분류	① 인지저하(MMSE <mean-1.5SD) ② 정상(MMSE ≥mean-1.5SD) ③정상 M-1.5SD이상, 인지저하 M-1.5SD미만		

정밀검진 1단계 (신경심리검사) 시행 미시행 해당 없음

검진일		검진 시행자	
검진 장소	① 치매지원센터 ② 대상자 집 ③ 수탁병원 ④ 기타 ()		
검진 도구	① CERAD-K ② SNSB		

정밀검진 2단계 (치매임상평가) 시행 미시행 해당 없음

검진일		검진 의사	
검진 장소	① 치매지원센터 ② 대상자 집 ③ 수탁병원 ④ 기타 ()		
진단 분류	① 치매 (DSM-IV) ② 치매 고위험 ③ 정상		
치매 고위험 분류 (복수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퇴행성 치매 위험 <input type="checkbox"/> 혈관성 치매 위험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관련 인지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내과 질환 관련 인지저하 (병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뇌 질환/손상 관련 인지저하 (병명:) <input type="checkbox"/> 물질·약물 관련 인지저하 (물질·약물명:)		
치매 중증도 (CDR)	Global	Memory	Orientation
	Judgment	Social	Home
			Persona

치매원인확인 시행 미시행 해당 없음

확진일		확진 의사	
확진 검사 장소	<input type="checkbox"/> 수탁병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확진 검사	<input type="checkbox"/> MRI <input type="checkbox"/> CT <input type="checkbox"/> 진단의학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확진 분류	(주원인 질환을 1가지만 선택) ① 알츠하이머병 ② 혈관성 치매 ③ 루이체 치매 ④ 전측두엽 치매 ⑤ 정상압 뇌수두증 ⑥ 감상선기능저하 ⑦ 경막하 혈종 ⑧ 물질·약물 ⑨ 주요 우울증 ⑩ 파킨슨병 ⑪기타 원인 ()		
기여 원인	(주원인 질환 외 치매 상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원인 선택. 복수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알츠하이머병 <input type="checkbox"/> 혈관성 치매 <input type="checkbox"/> 루이체 치매 <input type="checkbox"/> 전측두엽 치매 <input type="checkbox"/> 정상압 뇌수두증 <input type="checkbox"/> 감상선기능저하 <input type="checkbox"/> 경막하 혈종 <input type="checkbox"/> 물질·약물 <input type="checkbox"/> 주요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파킨슨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인 ()		

결과 통보 확인 및 참고 사항

결과 통보 여부	<input type="checkbox"/> 선별 검진 <input type="checkbox"/> 정밀 검진 <input type="checkbox"/> 원인 확인
기타 참고사항	

.....

서식 1-⑤

- 우편 서신 양식 -

어르신 귀하

주민번호 : -

치매검진 결과 보고 (정상)

현재 인지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1회 무료 치매검진을 시행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0가지 내용을 잘 지키도록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을 치료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조절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만을 줄여야 합니다.
심장병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적당한 일이나 취미활동을 계속 하십시오.

2017년 월 일

구 치매지원센터장 (인)

치매선별검진 결과 보고 (인지 저하)

인지기능이 다른 어르신에 비해 다소 저하되어 있습니다.

무료 정밀검진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 정밀검진은 신경심리검사(자세한 기억력 검사)와 전문의 진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진을 받으시고 전문의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일은 2017년 월 일 요일 시 분이 가능하며, 예약된 날짜에 치매지원 센터 □층 □□□로 오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정밀검진 1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

날짜: 년 월 일							
예약 시간	등록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전화 번호	정밀검진 2단계 예약	비고

치매 정밀검진 2단계 예약 및 시행대장

날짜: 년 월 일								
예약 시간	등록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전화 번호	시행 결과	조치	비고

임상치매평가(Clinical Dementia Rating: CDR)척도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일상 생활동작
정상 (0)	기억력 감퇴가 없거나 혹은 경미한 비지속적 건망증	완전함	재정 및 사업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함. 과거 수행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판단력은 좋음	직장 생활, 장보기, 자원 봉사, 사회적 모임 등에서 평상시 수준의 독립적 기능 수행	가정 생활, 취미, 지적 관심 등이 잘 유지됨	스스로 완전하게 수행함
불확실 (0.5)	경미한 지속적인 건망증: 사건의 일부만 기억; "양성" 건망증	시간 지남력의 경미한 장애가 있으나, 그 외의 지남력은 완전함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경미한 어려움	상기 활동에 경미한 장애	상기 활동의 경미한 장애	스스로 완전하게 수행함
경도 (1)	중등도 기억력 감퇴; 최근사건에 대한 감퇴가 현저; 이로 인해 일상 활동에 지장 있음	시간 지남력의 중등도 장애; 검사 시 장소 지남력은 유지되고 있음; 다른 곳에서는 장소 지남력의 장애가 있을 수 있음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중등도 어려움; 대개 사회적 판단은 유지됨	비록 상기 활동에 대해 현재 부분적으로 관여 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상처럼 보임	가정에서의 기능 수행에 경도 장애가 뚜렷함; 어려운 집안일은 하지 못함; 복잡한 취미와 관심이 없어짐	독려가 필요함
중등도 (2)	중증 기억력 감퇴; 고도로 숙련된 기억만 유지; 새로운 지식은 곧 소실	시간 지남력의 중증 장애; 대개 시간에 대한 지남력의 장애가 있고, 장소 지남력의 장애도 종종 있음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중증 장애; 대개 사회적 판단에 손상 있음	집밖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려 하지 않음; 그러나 집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이 관찰아 보임	단순한 집안일만 수행; 매우 제한된 관심만 겨우 유지됨	착의, 위생 및 의모 유지에 도움 필요
중증 (3)	중증 기억력 감퇴; 단편적 기억만 보유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보유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	집밖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려 하지 않음; 집밖에서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해 보임	가정에서의 의미 있는 기능이 사라짐	개인 관리에 많은 도움 필요; 빈번한 실금
심각함 (4)	단편적 기억마저 대체로 소실됨; 이해할 수 없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기억 검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음	자신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함	간단한 지시나 명령도 따르지 못함	어떤 사회적 모임에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음	어떤 취미 활동이나 가정 내 활동에도 의미 있게 관여할 수 없음	스스로 착의나 식사를 시도할 수는 있음; 도움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
말기 (5)	의미 있는 기억력은 없음; 종종 이해할 수 없거나 둔화됨	자신을 인지하지 못함	문제에 대한 자각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못함	어떤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음	어떤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음	먹여 주어야 함; 외상 상태

항목 점수

현재 치매의 단계 :

0 = 치매 아님
2 = 중등도 치매

0.5 = 치매 진단이 불확실 또는 진단보류
3 = 중증 치매
4 = 심각한 치매

1 = 경도 치매
5 = 말기 치매

임상치매평가(CDR)척도 평가 참고사항

1. 이 부분은 이전의 임상평가를 근거로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양식이다. 임상평가는 CDR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영역(즉 환자의 기억, 지남력, 판단력 등)의 손상 정도를 잘 판단한 다음, 각 영역에 대해 개별 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한 영역에 대한 평가가 다른 영역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기능 감퇴의 정도는 대상자의 병전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체적 장애, 우울증, 혹은 성격 변화 등 치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손상은 평가 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인접한 두 단계의 점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 즉 손상이 더 심한 쪽으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경도인 1과 중등도인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로 평가해야 한다.)

2. 실어증이 있는 경우, 각 인지 영역의 평가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실어증이 전반적인 치매보다 심하다면, 전반적인 치매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때 비언어성 인지기능 변화의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3.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은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점수(Global CDR score)를 도출하는 방법과 실제 채점 예(표)이다.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점수는 CDR 척도 평가지 아래 부분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현재 치매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섯 가지 영역 별 점수를 이용해 도출한다. 기억력 상실은 치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므로, 기억 영역 점수가 주 영역 점수가 된다. (* 이하 전반적 임상치매평가는 'CDR', 기억 영역 점수는 'M', 기억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 점수는 'S'로 표기한다.)

4.1) 세 개 이상의 S가 M과 같을 경우, CDR = M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1	1	1	1	2	0	1

2) 세 개 이상의 S가 M보다 높을 경우, CDR = M보다 높은 S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점수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1	2	2	2	1	1	2

3) 세 개 이상의 S가 M보다 낮을 경우, CDR = M보다 낮은 S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점수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2	1	1	1	0.5	0	1

4) 세 개의 S는 M의 어느 한 쪽(높은쪽 또는 낮은쪽)에 있고, 나머지 두 개의 S는 그 반대 쪽(낮은쪽 또는 높은쪽)에 있을 경우, CDR = M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0.5	1	1	1	0	0	0.5
	2	3	3	1	1	1	2

5) S 중 동점 항목이 모두 M의 어느 한 쪽에만 있을 경우, CDR = M에 가장 가까운 동점 S 점수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3	3	2	2	1	1	2

6) 두 개 이하의 S가 M과 같고, M의 어느 한쪽에 있는 S가 두 개 이하인 경우, CDR = M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2	2	2	3	1	1	2

7) M이 0.5이면, CDR = 0.5 (0이 될 수는 없다).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0.5	0	0	0	0	0	0.5

8) M이 0이고, 0.5 이상인 S가 한 개 이하이면, CDR = 0 / M이 0이고, 0.5 이상인 S가 두 개 이상이면, CDR = 0.5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0	0.5	0	0	0	0	0
	0	0.5	0	0.5	0	0	0.5

9) M이 1 이상인데, S가 모두 0이면, CDR = 0.5

영역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 해결	사회 활동	가정 생활 및 취미	개인 관리	전반적 임상치매평가
예	1	0	0	0	0	0	0.5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

성 명 _____
등록번호 _____
연 도 _____

○○구 치매지원센터

치매 원인확진 검진 동의서

지원대상자	성명		등록 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전화 번호		관계	
원인확진진료기관					전화번호	
진료예약 날짜						

**본인은 치매 원인확진검사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록을 위한
검진 진행을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치매지원센터장 귀하

원인확진검사비 비용 청구서(의료기관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
주소			
청구비용	()원		
<p>< 제출 증빙서류 ></p> <p style="margin-left: 40px;">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확진검진 의뢰서 <input type="checkbox"/> 검사 내역 및 결과 보고서 </p> <p>청구자 : _____ 서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택	
대상자와의 관계			직장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 주소			
	이전주소(재 신청 시에만 기재)			
연락처	(휴대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력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적 있음 (보건소명:)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적 없음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비용관리자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p>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2017. . . .</p> <p>신청자명 : (인)</p> <p>보건소장 귀하</p>				

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사업 대상 선정 여부 통지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의 양식에 의하여 (내용 수정 가능),
대상자로 미 선정된 경우에는 (나)의 양식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대상자 성명	
주소	
<p>홍길동은 2017년도 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의 치매치료제가 1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납부하신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연간 36만원)을 지원받게 되실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혈관성치매(F01로 시작되는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의 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치매치료제로 인정, 연간 36만원 한도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금년 한 해동안 위의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2017년 첫 지급일은 3월 말이며, 확정 되는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p> <p>※ 기타 문의 사항은 000보건소(담당자: 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연락처 : 000)000 - 0000</p>	

(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미선정 통지

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소	
<p data-bbox="454 747 968 856">홍길동은 2017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p> <p data-bbox="251 1327 1186 1363">※ 기타 문의 사항은 000보건소(담당자: 000)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data-bbox="282 1427 736 1463">연락처 : 000)000 - 0000</p>	

조기검진 사업목표

1. 치매조기선별검진 목표 :
2. 정밀검진 1차 목표 : 각 자치구별 조기검진 사업목표 인원의 10%이상
3. 정밀검진 2차 목표 : 각 자치구별 조기검진 사업목표 인원의 10%이상

자치구명	개소년도	사업목표
강동구	2007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2008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강남구		
강북구	2009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종랑구		

.....

등록관리 서식

2-① 기초 상담 기록	286~287
2-②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288
2-③ 치매상태 평가지	289~299
2-④ 치매 등록관리 계획지	300~301
2-⑤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계획지	302
2-⑥ 정상 등록관리 계획지	303
2-⑦ 방문간호 계획표	304
2-⑧ 방문간호 기록지	305
2-⑨ 위생소모품 공급대장	306
2-⑩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307
2-⑪ 조호기구 대여 대장	308
2-⑫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309
2-⑬ 가족모임일지	310
2-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11
2-⑮ 대상자 방문기록	312
2-⑯ 대상자 희망서비스	313
2-⑰ 사회적 지원망 사정	313
2-⑱ 사례관리 계획표	314
2-⑲ 서비스 과정 기록	315
2-⑳ 사례관리 종결	316
2-㉑ 정보등록관리 기본 정보지	317
2-㉒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신청서	318

기초 상담 기록

대상자 성명		등록 번호*	□□-□□□□□□
성 별	① 남 ② 여	실제 나이	만 세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 차수	차
상담자		상담 형태	① 내소 ② 전화 ③ 방문 ④ 인터넷
상담 시간	~ (분)	최초 상담일자	년 월 일
방문간호 등록여부	① 방문간호 ② 방문간호 아님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해 기입

상담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세	교육 연수	년
주소			
전화번호	[전화] [이메일]	[휴대폰]	
대상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① 배우자 ② 딸 ③ 아들 ④ 며느리 ⑤ 사위 ⑥ 기타 친척 ⑦ 친구 ⑧ 이웃 ⑨ 간병인 ⑩ 가정 봉사원 ⑪ 가정부/파출부 ⑫ 기타 ()		
동거여부	① 본인 ② 동거 ③ 동거 아님: 평균 ____ 회/주(월,년) 접촉		

상담 내용

상담 목적 (복수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치매 여부 확인 위해 <input type="checkbox"/> 가족의 치매여부 확인 위해 <input type="checkbox"/> 가족의 치매 심각도 확인 위해 <input type="checkbox"/> 의료 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복지 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의학 정보를 얻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조호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체적인 상담 목적 및 상담 내용 기술:

상담 후 조치

상담 후 조치 (3가지 중 택일) ① 치매 조기검진 안내 및 연계 ② 등록관리 안내 및 연계 (기 '치매' 진단된 경우에 한함) ③ 치매관련 정보제공 후 종결 (복수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의료 서비스 정보 <input type="checkbox"/> 복지 서비스 정보 <input type="checkbox"/> 의학 정보 <input type="checkbox"/> 조호 기술 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보 ()
구체적인 내용 기술:

의료 서비스: 외래진료, 입원치료, 방문간호, 인지재활,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복지 서비스: 간병보조, 가사보조, 주간보호, 야간보호, 장기보호, 간병용품, 목욕서비스, 환자이송 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가족모임, 가족교육,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

의학 정보: 질병(치매)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유전,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

조호기술 정보: 일상생활동작(식사, 의복착용, 이동, 배설 등) 조호, 문제행동(난폭행동, 수면장애, 배회, 의심, 환각, 수면장애, 기이한 행동 등) 관리, 신체증상(육창, 전도, 경직, 발열) 관리, 작업요법 등에 관한 정보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성명				등록번호	□□ - □□□□		
성별	① 남 ② 여			주민등록번호	-		
호적나이	만 세			실제 나이	만 세		
교육년수	총 년 (한글해독 ① 가 ② 불가)						
거주지	① 집 ② 양로원 ③ 단기보호시설 ④ 장기요양시설 ⑤ 병원 ⑥ 기타 ()						
	[주소]						
	[도로명 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		
결혼상태	① 결혼 ② 사별 ③ 별거 ④ 이혼 ⑤ 미혼 ⑥ 동거 ⑦ 기타 ()						
동거	① 독거 ② 배우자 ③ 배우자와 다른 가족 ④ 배우자 없이 가족만 ⑤ 친인척 ⑥ 기타 ()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1종 ③ 의료보호2종 ④ 기타 ()						
장기요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 판정등급 (판정등급선택) 서비스시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직업	현재 직업: ① 없음 ② 있음 (기술:)						
	과거 직업: ① 없음 ② 있음 (기술:)						
종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						
이용경로	① 신문 ② 방송 ③ 잡지 ④ 강연회 ⑤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⑥ 인터넷 ⑦ 가족이나 친지 ⑧ DM발송(우편엽서, 안내장 등) ⑨ 기타 ()						
신체계측	키(cm)		체중(kg)		BMI		혈압(mmHg)
	혈당		영양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신체표식	문신						
	흉터						
	기형						
	점						
	기타						
질병력	1.심장질환	<input type="checkbox"/> 뇌졸중 <input type="checkbox"/> 울혈성심부전 <input type="checkbox"/> 관상동맥질환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부정맥 <input type="checkbox"/> 말초혈관질환 <input type="checkbox"/>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2(기준에 입력된 인원)					
	2.신경계	<input type="checkbox"/> 두부손상 <input type="checkbox"/> Parkinsonism					
	3.근골격계	<input type="checkbox"/> 관절염 <input type="checkbox"/> 고관절골절 <input type="checkbox"/> 기타골절 <input type="checkbox"/> 골다공증					
	4.감각	<input type="checkbox"/> 백내장 <input type="checkbox"/> 녹내장					
	5.정신/정서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6.감염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결핵 <input type="checkbox"/> 요로감염(지난30일간)					
	7.기타질병	<input type="checkbox"/> 암(5년간)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위염 <input type="checkbox"/> 폐기종 / COPD / 천식 <input type="checkbox"/> 신부전 <input type="checkbox"/> 갑상선 질환 <input type="checkbox"/> 비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치매 진단	① 받은 적 없음 ② 받았음: ____년 ____월, _____병원 ____과						
	* 진단명: a.알츠하이머병 b.혈관성치매 c.혼합성 치매 d.기타 진단코드 :						
	치매정도 (CDR: / GDS:)						
	<input type="checkbox"/> 선별검진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리대상자						
배회정보	배회경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가끔(주1~4회) <input type="checkbox"/> 습관적(주5회 이상)					
	보조기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input type="checkbox"/> 청력보조기 <input type="checkbox"/> 의치 <input type="checkbox"/> 안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능한 배회주소 (예:전주소,친인척집)	1.	2.	3.			
	인식표 고유번호						
음 주	음주력	① 평생 마신 적 없음 ② 현재 마심 ③ 과거 마셨으나 현재 중단					
	기간	평생 동안 술을 마신 기간				세 ~ 세 (년)	
	횟수	1주일 평균 음주 횟수				회/ 주	
	음주량	1회 음주량(SU)				SU/ 회	
	1SU (Standard Unit : 알코올 10~12g) 맥주2잔, 소주 1잔, 양주 1잔, 와인 1잔, 막걸리 2잔 병당 SU : 맥주(500ml) 2, 소주(360ml) 8, 양주(750ml) 25, 와인(750ml) 8, 막걸리(750ml: 반되) 5						
흡 연	흡연력	① 평생 피운 적 없음 ② 현재 피움 ③ 과거 피웠으나 현재 중단					
	기간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운 기간				세 ~ 세 (년)	
	흡연량	하루 흡연량(갑)				갑/ 일	
운 동	운동력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나 활동?					
		① 없음 ② 있음					
	운동량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시간/하루
		가벼운 운동 (천천히 걷기, 산보)				일	시간
중간 운동 (빨리 걷기, 맨손체조, 농사일, 집안일 등)				일	시간		
	심한 운동 (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자전거타기 등)				일	시간	
가족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뇌졸중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참고사항							
예약관리	<input type="checkbox"/> 선별검진(K-MMSE) <input type="checkbox"/> 선별검진(MMSE-KC) <input type="checkbox"/> 선별검진(MMSE-DS)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등록진행사항	① 등록 ② 퇴록 [① 사망 ② 전출 ③ 시설입소 ④ 기타 ()]						
개인정보활용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등록 관리용

치매상태 평가지

1. 등록 번호	□□-□□□□□□		
2. 성명		3. 평가 차수	차
4. 현 평가일	년 월 일	5. 현 평가자	
6. 최초평가일	년 월 일	7. 최초평가자	

Part I : 치매환자 기능상태 평가

A. 인지 기능 장애	오른쪽 네모칸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록한다.	
--------------------	----------------------------------	--

		0	1	2	3	
1.	기억력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노화성 변화 또는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즉, 실수가 드물고, 귀중품의 분실, 중요한 약속의 망각 등 심각한 실수는 하지 않는다)	상당히 저하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다. 실수가 빈번하고, 때로는 심각한 실수도 한다)	거의 기억 못함 (자녀, 부모, 배우자의 이름, 자신의 나이, 고향 등 매우 기본적인 사실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30px;" type="text"/>
2.	지남력 (시간이나 장소를 파악하거나,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년, 월, 일, 계절 등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대개 정확히 파악한다.)	상당히 저하됨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헷갈려 하거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은 대개 잘 알아본다.)	매우 심한 저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30px;" type="text"/>
3.	문제해결능력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간혹 어려움이 있으나, 늘 해오던 간단한 일은 문제없이 처리한다)	상당히 저하됨 (간단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인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은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심한 저하 (대부분의 경우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반응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30px;" type="text"/>
4.	의사소통능력 (말이나 글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평가 시 실어증, 구음장애, 난청 등 저하의 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다.)	상당히 저하됨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매우 심한 저하 (정상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30px;" type="text"/>

추가 정보	
--------------	--

B. 행동 문제

오른쪽 네모칸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록한다.

(행동문제는 지난 2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0	1	2	3	
1.	난폭 행동 (꼬집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기 등)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2.	배회 행동 (실내에서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3.	거부적 태도 (투약 등의 치료나 수발에 대해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행동)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4.	기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반복질문, 옷 벗기, 종이 찢기, 물건 뒤집거나 숨기기, 자기학대행동, 똥을 바르거나 던지는 행동, 이상한 소리내기, 고함지르기, 성적인 동작 등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5.	수면 장애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6.	섬망/환각의 징후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비교적 갑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어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헛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행동 등을 보임.)	나타나지 않음	드물게 나타남 (1주일에 2번 이하)	상당히 자주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주일에 6-7번 이상)	<input type="checkbox"/>

추가 정보

C.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

오른쪽 네모칸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록한다.

		0	1	2	3	
1.	식사하기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2.	목욕하기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3.	개인위생 (세면, 머리 빗기, 양치질, 면도 등)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4.	옷 입기 (단추 채우기, 지퍼 올리기 등 포함)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5.	대변 가리기	정상적으로 가능	가끔씩 실금	자주 실금	매번 실금	<input type="text"/>
6.	소변 가리기	정상적으로 가능	가끔씩 실금	자주 실금	매번 실금 (또는 카테터 삽입 상태)	<input type="text"/>
7.	화장실 사용 (옷 내리고 올리기, 뒤처리 등 포함)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8.	자리 옮기기 (바닥이나 침대에서 의자로, 혹은 그 반대로 자리를 옮겨가기)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부축이나 언어적 지시 필요)	많은 도움 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함. 균형을 잡고 앉아 있을 수는 있음)	전적으로 의존 (균형을 잡고 앉아 있을 수도 없음)	<input type="text"/>
9.	수평 이동 (보행, 이동)	혼자서 보행 가능	약간의 도움을 주면 보행 가능 (부축이나 언어적 지시 필요)	보행은 불가능하나 혼자 기거나 혹은 휠체어 이동 가능	전적으로 의존	<input type="text"/>

추가 정보	
-------	--

.....

D.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오른쪽 네모칸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록한다.

		0	1	2	3
1.	식사 준비 (식사 계획, 요리, 상차리기 등의 과정)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2.	일상적인 집안일 또는 기구 사용 (청소, 세탁, 설거지, 이불 개기, 화초에 물 주기, 다림질, 못박기, 전구 갈아 끼우기, TV 등 가전제품의 조작 등등)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3.	돈 관리 (생활비나 용돈관리, 공과금 납부, 은행예금관리 등)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4.	투약 관리 (시간과 용량을 지켜서 약을 먹는 것)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5.	전화 사용 (번호를 기억하거나 찾아서 전화를 걸고, 전화가 왔을 때 적절하게 받는 것)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6.	물건 사기 (상점에 가서 계획한 물건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돈을 치르고 사오는 것)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7.	교통수단 이용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을 해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기)	혼자서 가능	약간의 도움 필요	많은 도움 필요	전적으로 의존

추가 정보

.....

E. 신체 및 질병 상태

이 절에서는 항목 점수를 더한 총점은 계산하지 않는다.

		0	1	2	3
1.	시력 (평소에 안경을 사용한다면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소 안경 사용 여부를 아래에 0로 표시하십시오.) *안경: 사용 / 미사용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미세한 물건이나 작은 글씨를 보는데 지장이 있으나, 큰 물건이나 글씨는 잘 본다.)	상당히 저하됨 (큰 글씨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 큰 물체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거의 보지 못함 (빛, 색깔, 희미한 윤곽 등만을 겨우 볼 수 있거나 시력이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2.	청력 (평소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소 보청기 사용 여부를 아래에 0로 표시하십시오.) *보청기: 사용 / 미사용	문제없음	약간 저하됨 (보통의 대화를 듣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다)	상당히 저하됨 (큰 소리로 말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거의 듣지 못함 (큰 소리로 말해도 거의 듣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3.	음식섭취 상태 및 섭취 경로	모든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음	죽, 미음 등의 (반)유동식만을 먹을 수 있음	위관을 통해 영양 공급	정맥 주사를 통해 영양 공급
4.	육창 (압력성 궤양)	육창이 없음	부분적으로 피부가 손상됨 (표피 또는 진피의 일부가 벗겨짐)	피부가 상실되고 피하조직이 노출됨	근육이나 뼈가 드러남
5.	현재 유병 중인 질병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면 해당번호에 0 표한다. 열거된 질환 이외의 병인 경우에는 각 신체계통의 빈칸에 기록하거나, 신체계통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기타의 빈칸에 기록한다.)	a. 순환기계	1. 고혈압 4. 기타 심장병	2. 심부전 5. 말초혈관질환	3. 관상동맥질환
	b. 호흡기계	1. 폐렴 4. 만성기관지염	2. 천식 5. 폐결핵	3. 만성폐쇄성폐질환	
	c. 소화기계	1. 위염 4. 간염	2. 위/십이지장궤양 5. 간 경화증	3. 장염	
	d. 내분비계	1. 당뇨병	2. 갑상선 기능항진	3. 갑상선 기능저하	
	e. 근골격계	1. 관절염 4. 골다공증	2. 대퇴골 골절	3. 기타 골절	
	f. 비뇨기계	1. 요로 감염 4. 성병	2. 전립선비대	3. 신부전	
	g. 신경계	1. 뇌졸중	2. 파킨슨병	3. 두부손상	
	h. 신경정신계	1. 치매 4. 정신분열병	2. 우울증 5. 조울증	3. 알코올남용/의존	
	i. 기타				

.....

6.	현재 치료 상황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빈칸에 내용을 기록한다.)	a. 약물 치료	1. 치매 약물치료 :	
			약 이름	처방병원
			2. 신체질환 약물치료	
		약 이름	처방병원	
b. 기타 치료	(지난 4주간에 받았던 치료 내용을 아는 대로 기술한다. 예: 재활치료, 수술, 투석,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수혈, 정맥주사 등등)			
	치료 내용	치료 병원		
7.	신체 특이 표식	<input type="checkbox"/> 점 설명: _____ <input type="checkbox"/> 문신 설명: _____ <input type="checkbox"/> 흉터 설명: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형 설명: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설명: _____		
8.	신체 및 질병상태 관련 추가정보 (병력, 신체적 특이사항 등 환자상태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메모해둔다.)			

Part II : 치매환자 주조호자 상태평가

A. 주조호자의 일반적인 특성 (상담신청인과 주조호자가 동일하다면 1-6까지는 다시 질문하지 않고 기초 상담 기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한다.)					
1.	이름		2.	성별	1. 남 2. 여
3.	연령	_____ 세	4.	교육 연수	_____ 년
5.	주소				
6.	전화번호	Tel: E-mail:	HP:		
7.	관계	1. 배우자 2. 딸 3. 아들 4. 며느리 5. 사위 6. 기타 친척 7. 친구 8. 이웃 9. 간병인 10. 가정 봉사원 11. 가정부/파출부 12. 기타 _____			
8.	동거여부 및 접촉빈도	1. 동거 2. 동거 아님: 주당 _____ 일 접촉			
9.	결혼 상태	1. 사별 2. 결혼 3. 별거 4. 이혼 5. 미혼 6. 기타			
10.	종교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유교 5. 기타 _____ 6. 무교			
11.	최근 건강상태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12.	지난 1개월 동안 앓은 질병	병명:			
13.	경제활동(돈벌이) 유무	1. 하지 않는다 2. 하고 있다 (내용: _____)			
14.	환자조호기간 (치매이환 이후)	약 _____ 년 _____ 개월			
15.	하루 시간 배분	1. 환자조호시간 _____ 시간/일 2. 가사노동시간 _____ 시간/일 3. 경제활동시간 _____ 시간/일 4. 휴식/자유시간 _____ 시간/일			
16.	교대로 조호해 줄 사람 유무	1. 없다 2. 있다 (관계: 환자의 _____)			

B. 조호와 관련된 구체적 어려움 및 희망사항 (어려움 및 그와 관련된 희망사항을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조호관련 어려움	희망사항

C. 부양 부담감 평가척도

주조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점수에 0표한다.
 오른쪽 네모칸에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록한다.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문항들은 환자를 간병하면서 경험하는 느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0. 전혀 아니다, 1. 드물게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중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 되시는 번호에다 0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신이 느끼시는 대로 표시하시면 되며,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드물게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항상 그렇다

1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2	환자 간호 때문에 나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3	다른 가족이나 일에 대한 의무와 환자 간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십니까?	0	1	2	3	4
4	환자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게 되십니까?	0	1	2	3	4
5	환자 가까이 있으면 화가 나십니까?	0	1	2	3	4
6	환자 때문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7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0	1	2	3	4
8	환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9	환자 가까이 있으면 긴장되십니까?	0	1	2	3	4
10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11	환자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12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13	환자가 있어서 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14	환자가 당신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기대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0	1	2	3	4
15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내 능력에 비해 과하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16	향후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17	환자의 병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18	환자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0	1	2	3	4
19	환자에 대해 뭘 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럽게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20	환자를 위해 뭔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21	환자를 지금보다 좀 더 잘 돌볼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22	전반적으로 볼 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0. 전혀 아니다 1. 조금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

Part III: 기능상태 및 부양부담감 평가 결과 요약지

	인지기능	행동문제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부양부담감척도
문항 점수 합	/ 12	/ 18	/ 27	/ 21	/ 88
문항 수	4	6	9	7	22
평균 점수 (=문항점수의 합 ÷ 문항 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3]					
[2]					
[1]					
[0]					

각 기능장애영역의 평균 점수는 먼저 박스에 기록한 다음, 아래 점선 위의 해당 점수 위치에 X로 표시하고, 인접영역의 X 표와 실선으로 잇는다. 부양부담감척도 평균점수는 박스에 기록한 후, 아래 점선 위의 해당 위치에 O로 표시한다.

.....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부착)

치매 등록관리 계획지

대상자 평가 요약

진단 분류		CDR		MMSE	
치매 확진 분류					
치매 상태 평가	인지기능	행동문제	ADL	IADL	부양부담
	신체 및 질병 상태 요약				
	가족 상태				

성 명		등록 번호	□□-□□□□□□
성 별	① 남 ② 여	실제 나이	만 세
교육 연수	총 년 (한글해독 ① 가 ② 불가)	의료 보장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1종 ③ 의료보호2종 ④ 기타
작성 일	년 월 일	작성 자	

주요 문제 및 관리 목표

주요 관리대상 문제	관리 목표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input type="checkbox"/>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치매노인 배회구조 팔찌 제공	<input type="checkbox"/> 치매관련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가족 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관련 자원 연계	<input type="checkbox"/> 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태 평가 주기	개월	다음 상태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	-------------	-------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계획지

성명		등록 번호	□□-□□□□□□		
성별		실제 나이			
교육 연수		의료 보장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1종 ③ 의료보호2종 ④ 기타		
작성일	년 월 일	차수	차	작성자	
직전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차수	차	직전 계획 작성자	
최초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차수	1 차	최초 계획 작성자	

대상자 평가 요약

진단 분류	치매 고위험	CDR		MMSE	
치매 고위험 분류					

주요 문제 및 관리 목표

주요 관리대상 문제	관리 목표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input type="checkbox"/> 정기정밀검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치매예방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input type="checkbox"/>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평가 주기	개월	다음 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	-----------	-----------

.....

정상 등록관리 계획지

성 명		등록 번호	□□-□□□□□□		
성 별		실제 나이			
교육 년수		의료 보장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1종 ③ 의료보호 2종 ④ 기타		
작성 일	년 월 일	차수	차	작성 자	
직전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차수	차	직전 계획 작성자	
최초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차수	1 차	최초 계획 작성자	

대상자 평가 요약

진단 분류	정 상	CDR		MMSE	
정밀검진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input type="checkbox"/> 시 행				

주요 문제 및 관리 목표

주요 관리대상 문제	관리 목표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input type="checkbox"/> 정기선별 검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치매예방 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태 평가 주기	개월	다음 상태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	-------------	-----------

방문간호 계획표

문제영역	문제내용	간호목표	방문주기	다음계획 수립일	비고
신체 건강					
정신 행동 증상					
기본적 일상 생활					
도구적 일상 생활					

.....

방문간호 기록지

이름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방문일시	환자상태기록	간호문제 (실제적 문제, 잠재적 문제)	간호계획 및 수행

위생소모품 공급대장

등록번호 :

환자 서명 :

월별	날짜	보호자서명	위생소모품			
			기저귀	식사 에이프런	방수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단위 (개)	단위 (개)	단위 (개)	단위 (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환자성명		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주택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신청 내용

신청 목적	
대여 기간	20 - 20
신청 위생품목	

본 신청인은 대여한 조호기구를 신청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중 고장이나 분실이 있을 시에는 그 위생용품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 및 수리등 대여 기간(3개월 대여, 연장 가능)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으로 서약합니다.

신청자 : (인)

OO구 치매지원센터

조호기구 대여 대장

등록번호 :

환자 서명 :

월별	대여일	반납일	보호자 서명	조호기구 (재활보조기구)						
				에어매트 리스	목욕의자	욕창방지 쿠션	이동식 변기	휠체어	워커	네발 자팡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입력 신청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사 진</p> <p style="margin: 10px 0;">※ 어르신 실종 시 사진홍보에 사용됩니다.</p>

*** 필수입력사항**

어르신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 주소	우) -				
보호자 정보	* 성명			* 어르신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이동전화		
	긴급연락처	1.		(사용자명 :)		
		2.		(사용자명 :)		
		3.		(사용자명 :)		
* 주소	우) -		이메일			
관할기관 정보	신청기관 정보	우편번호			기관명(센터명)	
		*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정보	신청일			* 신청인(보호자)		
	신청타입	○신규신청 ○ 재신청				

가족모임일지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장소	
참석자	- 가족 : - 직원 :
강사	
주제	
모임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p>*** 치매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p>	
<p>□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관련, 인적사항 내용은 추가·수정하여 사용)</p> <p>○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p> <p>○ 관련사항 : 치료비 지원신청서,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신청서, 치매원인확진 검진 동의서</p>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p> <p>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p> <p>○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p>	
<p>□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p> <p>○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p> <p>○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p>	
<p>□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p> <p>○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치매지원센터</p> <p>○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p>	
<p>※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p>	
<p>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p>	
<p>2017년 월 일</p>	
<p>동의인 : (서명)</p> <p>*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p>	<p>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p>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방문기록			
기본 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방문장소	
방문목적	<input type="checkbox"/> 실태조사 및 초기사정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록자 (직 군)	
방문 기록 내용			
내용	1) 대상자 일반사항(성명/나이 등)		
	2) 대상자 상황 및 환경(가정방문 시 관찰내용)		
	3) 상담내용		
	4) 특이사항 및 비고		

서식 2-⑯

대상자 희망서비스	
치매 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치매지원센터 이용(조호물품 지원, 인지건강프로그램 이용, 배회 구조 팔찌 제공 등) <input type="checkbox"/> 조호방법 안내 <input type="checkbox"/> 전문자원봉사단 가정방문 이용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안내 또는 의뢰 <input type="checkbox"/> 지역복지관(센터) 안내 또는 의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안내 및 의뢰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시설 안내 또는 의뢰 <input type="checkbox"/> 관련 제도(정보) 안내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공단 정보안내 및 의뢰 <input type="checkbox"/> 밀반찬배달 연계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경로 식당 연계 <input type="checkbox"/>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병원 동행 <input type="checkbox"/> 병원 안내 및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서식 2-⑰

사회적 지원망 사정 (생태도)			
사회적 지지체제	비공식적 지원	사전	사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	
사회적 지지체제	공식적 지원		
		(치매지원센터,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기관 등)	

서식 2-⑱

사례관리 계획표			
대상자명		기록자 (직 군)	
대상자 욕구 (문제 사정)	서비스 목표	서비스 개입계획 (개입 방향 및 방법)	

.....

서비스 과정 기록(개입 내용)		
일 자 (회차)	사례관리 내용	사진
	□ 방 문 (대상 :)) □ 전 화 (대상 :))	
	대상자 상태 및 현황	
	제공한 서비스 및 조치	
	다음 방문 내용	
	□ 방 문 (대상 :)) □ 전 화 (대상 :))	
	대상자 상태 및 현황	
	제공한 서비스 및 조치	
	다음 방문 내용	
	□ 방 문 (대상 :)) □ 전 화 (대상 :))	
	대상자 상태 및 현황	
	제공한 서비스 및 조치	
	다음 방문 내용	

사례관리 종결			
대상자명		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집전화) (이동전화)
사례관리 초기 개입일	년 월 일	사례관리 종결일	년 월 일
종결유형 및 사유	유형	사유	
	□대상자에 의한 종결 □담당자에 의한 종결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input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상황호전 <input type="checkbox"/> 목표달성 <input type="checkbox"/> 거절이나 포기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약속불이행 <input type="checkbox"/> 담당자가 종결 결정 <input type="checkbox"/> 담당자와 대상자의 종결 합의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으로 의뢰 (타기관 명 :) (의뢰일 :)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입내용			
대상자 변화사항	초기 상황	종결 상황	
평가 및 향후 계획 (사후관리)			

.....

정보등록관리 기본 정보지

성명			등록번호	••••••••	
성별	① 남 ② 여		주민등록번호	-	
호적나이/실제나이	만 세 / 만 세		교육년수	총 년 (한글해독 ① 가 ② 불가)	
교육년수	총 년 (한글해독 ① 가 ② 불가)				
거주지/연락처	① 집 ② 양로원 ③ 단기보호시설 ④ 장기요양시설 ⑤ 병원 ⑥ 기타 ()				
	[주소]				
	[도로명 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
결혼상태	① 결혼 ② 사별 ③ 별거 ④ 이혼 ⑤ 미혼 ⑥ 기타 ()				
동거	① 독자 ② 배우자 ③ 배우자와 다른 가족 ④ 배우자 없이 가족만 ⑤ 기타()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 ② 의료보호1종 ③ 의료보호2종 ④ 기타 ()				
장기요양 서비스	판정등급 [판정등급선택] 서비스시행여부 (□ 시행 □ 미시행)				
직업	현재 직업: ① 없음 ② 있음 (기술:)				
	과거 직업: ① 없음 ② 있음 (기술:)				
종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				
이용경로	① 신문 ② 방송 ③ 잡지 ④ 강연회 ⑤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⑥ 인터넷 ⑦ 가족이나 친지 ⑧ DM발송(우편엽서, 안내장 등) ⑨ 기타()				
신체계측	키(cm)	체중(kg)	BMI	혈압 (mmHg)	/
	혈당	영양상태	□ 양호 □ 불량		
질병력	1. 심장질환	□ 뇌졸중 □ 울혈성심부전 □ 관상동맥질환 □ 고혈압 □ 부정맥 □ 말초혈관질환 □ 고지혈증 □ 기타 □ 기타2(기초에 입력된 인원)			
	2. 신경계	□ 두부손상 □ Parkinsonism			
	3. 근골격계	□ 관절염 □ 고관절골절 □ 기타골절 □ 골다공증			
	4. 감각	□ 백내장 □ 녹내장			
	5. 정신/정서	□ 우울증 □ 기타 ()			
	6. 감염	□ 폐렴 □ 결핵 □ 요로감염(지난30일가)			
	7. 기타질병	□ 암(5년간) □ 당뇨 □ 위염 □ 폐기종/COPD/천식 □ 신부전 □ 감작성 질환 □ 비만 □ 기타()			
치매 진단	① 받은 적 없음 ② 받았음: ____년 ____월 ____ 병원 ____과 * 진단명: □ 알츠하이머병 □ 혈관성치매 □ 혼합성 치매 □ 기타 진단코드: _____				
	치매정도 (CDR / GDS:)				
	□ 선별검진대상자 □ 치매고위험대상자 □ 치매관리대상자				
배회정보	배회경험	□ 없음 □ 있음 □ 가끔(주1~4회) □ 습관적(주5회 이상)			
	보조기	□ 지팡이 □ 청력보조기 □ 의치 □ 안경 □ 기타()			
	가능한 배회주소 (예: 전주소/취업처)	1.	2.	3.	
	인식표 고유번호				
음 주	음주력	① 평생 마신 적 없음 ② 현재 마심 ③ 과거 마셨으나 현재 중단			
	기간	평생 동안 술을 마신 기간	세 ~ 세 (년)		
	횟수	1주일 평균 음주 횟수	회/ 주		
	음주량	1회 음주량(SU)	SU/ 회		
	1SU (Standard Unit: 알코올 10~12g): 맥주2잔, 소주 1잔, 양주 1잔, 와인 1잔, 막걸리 2잔 병당 SU: 맥주(500ml) 2, 소주(360ml) 8, 양주(750ml) 25, 와인(750ml) 8, 막걸리(750ml: 반되) 5				
흡 연	흡연력	① 평생 피운 적 없음 ② 현재 피움 ③ 과거 피웠으나 현재 중단			
	기간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운 기간	세 ~ 세 (년)		
	흡연량	하루 흡연량(갑)	갑/ 일		
운 동	운동력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나 활동?			① 없음 ② 있음
	운동량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일/1주일	시간/하루
		가벼운 운동 (천천히 걷기, 산보)		일	시간
		중간 운동 (빨리 걷기, 맨체체조, 농사일, 집안일 등)		일	시간
심한 운동 (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자전거타기 등)		일	시간		
가족력	□ 없음 □ 치매 □ 뇌졸중 □ 고혈압 □ 당뇨병 □ 기타 ()				
기타참고사항					
예약관리	□ 선별검진(K-MMSE) □ 선별검진(MMSE-KC) □ 선별검진(MMSE-DS) □ 해당사항 없음				
등록진행상황	① 등록 ② 퇴록 (① 사망 ② 전출 ③ 시설입소 ④ 기타 ()				
개인정보활용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동의서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신청서

신청인	성명		직위	
	소속			
내용	아이디			
	요청사항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삭제		
	요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입사 <input type="checkbox"/> 퇴사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인증		
비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00 . 00

팀 장 : (인)

센터장 : (인)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조사서식

3-① 치매 인식도 조사 동의서	320
3-② 치매 인식도 조사지	321~322
3-③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동의서	323
3-④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조사지	324~327

치매 인식도 조사 동의서

동 의 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치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설문에 응답 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연구팀(070-4633-6838)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1. 나는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인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 받았습니다.
2. 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연구인이 참여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설문 참여 도중 동의를 취소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나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인식도 조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해하였기에 본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인 서명 : (인)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연구팀(070-4633-6838)

치매 인식도 조사지

I.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

- (1) 6년 이하 (2) 7년 ~ 9년 (3) 10년 ~ 12년 (4) 13년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1) 회사원 (2) 자영업 (3) 주부 (4) 학생 (5) 무직 (6) 기타_____

5. 치매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1) 매우 관심이 많다 (2) 조금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6. 치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잘 모른다

7.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8.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디를 통해서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4) 잡지 (5) 가족이나 친지
(6)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7) 기타()

II. 치매 인식도

다음은 치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부담 없이 아시는 대로 해당 칸에 정확하게 √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x)		
②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0)		
③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0)		
④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x)		
⑤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x)		
⑥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0)		
⑦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x)		
⑧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0)		
⑨ 치매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0)		
⑩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0)		
⑪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x)		
⑫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x)		

.....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동의서

동 의 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치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설문에 응답 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연구팀(070-4633-6838)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1. 나는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인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 받았습니다.
2. 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연구인이 참여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설문 참여 도중 동의를 취소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나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해하였기에 본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인 서명 : (인)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연구팀(070-4633-6838)

치매지원센터 이용만족도 조사지

※ 다음 문항의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시거나 ()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구주소: _____ 구 _____ 동 _____

신주소: _____

2. 연령은 ?

만 _____ 세

3.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4. 교육정도는?

_____ 년

5. 귀하의 직업분류는 어디에 속합니까?

(1) 관리자/전문가/사무 관련 종사자 등 (2)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등

(3) 학생 (4) 주부 (5) 무직 (6) 기타

6.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7. 의료보장형태는?

(1) 의료보험 (2) 의료급여 1종 (3) 의료급여 2종

8. 어느 분에 대한 문제로 센터를 이용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 (4) 시부모 (5) 조부모

(6) 친척 (7) 친구 (8) 이웃 (9) 기타()

.....

9. 귀하께서는 치매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르고 있다 (2) 잘 모르고 있다 (3) 보통이다

10. 치매지원센터 서비스를 받으신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11. 치매지원센터 서비스는 월 몇 회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__회

12. 치매지원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내용 중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 (1)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2) 홍보물(책자, 엽서, 포스터, 리플렛)
(3) 캠페인 등 외부검진 (4) 보건소(소개, 우연히) (5) 친구 및 이웃소개
(6) 가족권유 (7) 복지관, 병원소개 (8) 이전에 검사 받은적 있음
(9) 기타_____

13. 치매지원센터에 오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 (1) 걸어서 (2) 치매지원센터 차량 (3) 대중교통 (4) 자가용
(5) 기타_____

14. 다음은 귀하께서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있으면 “이용함”에, 없으면 “이용 안함”에
 √표시 하여 주시고,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유무		서비스 만족도				
		이용함	이용 안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치매 조기검진(선별검진, 정밀검진 등)							
2	치매예방 및 인식전환 자료 제공 (리플렛 등)							
3	치매예방 및 인식전환 교육 및 행사 (강연 등)							
4	치매관련 상담 서비스							
5	인지건강프로그램							
6	방문간호 서비스							
7	조호물품제공 서비스 (위생재료 무상공급, 조호기구 무상대여 등)							
8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명찰) 제공							
9	치매관련 정보 제공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의학 정보, 조호기술 등)							
10	가족모임 및 가족교실							
11	치매관련 지역 자원연계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12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							
13	기타 ()							

.....

15.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정도입니다. 해당되는 공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치매지원센터의 위치					
치매지원센터 이용 편리성					
직원의 친절도					
직원의 전문성					
서비스 시간의 적절성					
공간의 청결도					

- 감사합니다 -

.....

정보업무 요청 공문서식

4-① 전출대상자 자료이관 협조요청 공문	329
4-②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DB자료 요청 공문.....	330
4-③ 자치구치매지원센터 DB자료 수정 요청 공문.....	331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경 유)

제 목 전출대상자 자료 이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출 대상자의 자료 이관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등록번호	성 명	이관 사유	이관요청 날짜	전출 자치구	전입 자치구
1		○○○	거주지 변경	2017.00.00	○○구	○○구
2						
3						

끝.

○○○구 치매지원센터장 (직인)

담 당	팀 장	센 터 장
협조자		
시행 ○○○○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경 유)

제 목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DB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치매지원센터의 DB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 가. 요청사유 : (예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근거 자료 활용
 - 나. 요청내용 : 2017년 ○○○구 선별검진 실적(건/명)
 - 다. 요청기한 : 2017년 00월 00일 까지

붙 임 : 자료 양식 1부. 끝.

○○○구 치매지원센터장 (직인)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〇〇〇 구 치매지원센터

수 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경 유)

제 목 〇〇〇 치매지원센터 DB자료 수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치매지원센터의 DB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 가. 수정사유 : (예시) 치료비 지급 금액 오기 수정
 - 나. 세부내용

대상자	등록번호	00-00000
	성 명	〇〇〇 (생년월일)
	오류 메뉴	치료비지원사업
	수정 사항	치료비지원 금액 00000원으로 수정
담당자	성 명	〇〇〇
	연 락 처	직통번호 0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붙 임 : 1. 수정요청 사항(요청사항이 많은 경우) 1부.
2. 요청 사유 관련 서류(있는 경우) 1부. 끝.

〇〇〇구 치매지원센터장 (직인)

담 당 팀 장 센 터 장

협조자

시행 〇〇〇〇 00-0000 (2017.00.00.) 접수

주소

전화 전 송 / 이메일 주소 / 공개

2017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발행일 2017년 4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제작지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주소 110-738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 전화 02-3431-7200 / 02-711-3809 / 02-3431-7347

- 전 송 02-701-0706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www.seouldementia.or.kr

.....